

발간등록번호

11-1380644-000012-01

# 일본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

2000년 10월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자 려

<b>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돼지콜레라예방약 허가관련)</b>	1
제1 개정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제2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1. 허가신청에 대하여	
2. 사용허가기간에 대하여	2
3. 사용허가 부여시 덧붙이는 조건에 대하여	
4. 사용허가상황의 공표 및 보고에 대하여	3
5. 보고 및 사용허가 취소에 대하여	
제3 기타	4
<b>가축방역요령 일부개정에 대하여 (가축방역대책요강 신규대조표)</b>	5
<b>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의 전부개정에 대하여</b>	6
1. 기본방침	
2. 돼지콜레라 박멸추진방책	7
3.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4. 만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9
5. 기타	15
<b>돼지콜레라방역대책 추진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b>	16
I. 통상시의 방역조치	
1. 청정성 유지확인조사	17
2. 위생관리지도	19
II. 발생시의 방역조치	21
1. 발생시에 대비한 방역체제정비	
2. 의사증례의 통보	22
3. 통보를 받은 경우의 대응	
4. 통보농장 도축후의 대응	25
5. 병성감정실시와 가축위생시험장과의 연대	28
6. 돼지콜레라 확정진단후의 조치	
7. 돼지콜레라 발생원인 검색	40
8. 이동제한구역의 해제	

Ⅲ.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의 돼지의 제도입	41
Ⅳ. 도축장에서 발견시의 방역조치	
Ⅲ.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의 돼지의 제도입	41
Ⅳ. 도축장에서 발견시의 방역조치	
1. 발견시의 조치	
2. 돼지의 처분	
3. 도축장 및 관련시설의 소독	42
4. 역학관련농장의 조치	
Ⅴ. 가축시장, 가축공진회 등에서 발생시의 방역조치	
Ⅵ.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시 방역조치	
[별첨1] 샘플링방법	43
[별첨2] 병성감정에 필요한 검사기구 등의 점검내용	44
[별첨3] 縣돼지콜레라방역대책본부 및 돼지콜레라 발생현지방역대책본부 개설통지	47
[별첨4] 도축장 출하허가서	48
[별첨5] 살처분명령서	
[별첨6] 도살지시서	49
[별첨7] 가축격리지시서	50
<b>[별지] 돼지콜레라 진단매뉴얼</b>	51
I. 항원검출	
1. 검사방침	
2. 임상검사	
3. 시료채취	
4. 동결절편과 유제의 제작	52
5. 바이러스 분리	54
6. 형광항체염색(바이러스항원 검출)	55
7. 기타	56
II. 항체검사	
1. 검사지침	

2. 피검혈청의 조정	57
3. 무혈청배양세포의 배양	
4. 중화항체검사용 지시바이러스 조정	58
5. 중화항체 측정방법	60
6. 기타	
□ 무혈청배양액의 제작	62
□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항체검사 Flow Chart	63
□ 96홀 배양용 플레이트 배열에	64
□ 돼지콜레라진단을 위한 검사 Flow Chart	65
<b>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중 양돈위생관리지원사업 일부개정</b>	66
<b>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 신규대조표</b>	68
<b>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전문)</b>	72
제1 취지	
제2 사업실시주체	
제3 사업내용	73
1. 가축방역호조추진사업	
2. 가축방역호조사업	
3. 縣위지협 등 운영기반강화사업	74
4. 양돈위생관리지원사업	
제4 호조기금, 縣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제5 사업실시	76
1. 사업실시계획의 작성	
2. 사업의 위탁	
3. 가축방역호조사업의 요건	
4. 사업실적보고	80
5. 사업실시기간	
제6 사업의 추진지도 등	
제7 사업단의 조성	81
제8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동물용생물학적제제의 지정에 관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정보모집 결과	83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정보모집결과	88
중돈장 등 양돈시설의 위생대책지침	91
1. 시설의 배치 및 출입제한 등	
2. 시설내의 위생관리	92
3. 예방 및 치료 등	94
4. 위생관리체제	
5. 기타	

### 일본어 원문

官報(家畜傳染病豫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同八七))	99
家畜傳染病豫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の公布について	101
家畜防疫對策要綱の一部改正について	105
豚コレラ防疫對策要領の全部改正について	108
豚コレ라防疫對策の推進に當たつての留意事項について	115
家畜防疫互助基金造成等支援事業のうち養豚衛生管理支援事業の一部改正について	155
家畜防疫互助基金造成等支援事業實施要領	160
家畜傳染病豫防法第50條の規定の基づく動物用生物學的製劑の指定に係る家畜傳染病豫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ことについて意見 情報の募集結果について	169
豚コレ라防疫對策要領の全部を改正することについて意見 情報の募集結果について	175

이 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획조정과 (☎ 031-467-1923 Fax. 031-467-1938 E-mail : kimori@nvrqs.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공포에 대하여

12축A제2689호 '00년9월28일

수신 : 도도부현지사

발신 :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00.9.28일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00.9.28. 농림수산성령 제87호)가 공포되었으므로,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아 래 -

### 제1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약에 대하여는, '96년 이후 계획적으로 실시해온 돼지콜레라 박멸대책의 성과를 감안하여, '00년10월1일 이후 원칙적으로 전국적으로 접종을 중지함과 동시에, 방역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동 예방약을,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그 사용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동물용생물학적제제로서 지정(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57조)함

### 제2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사용허가는, 동 예방약을 사용한 돼지와 동 예방약을 사용하지 않은 돼지가 식별 불가능함에 의해 생기는 방역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시기 바람

## 1. 허가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신청서 또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문서(이하 '신청서 등' 이라 한다.)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신청하게 할 것

- ① 신청자 성명 및 주소
- ② 예방약의 종류
- ③ 예방약을 사용하는 이유
- ④ 예방약의 사용기간
- ⑤ 예방약을 사용하는 농장명 및 주소
- ⑥ 예방약의 사용에 관련되는 수의사의 성명 및 주소
- ⑦ 상시 사양두수
- ⑧ 예방약의 연사용예정두수
- ⑨ 예방약의 사용방법
- ⑩ 예방약을 사용한 돼지의 표식의 종류
- ⑪ 예방약을 사용한 돼지의 출하(다른농장에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하예정선의 명칭, 주소, 돼지의 종류 및 출하예정두수

## 2. 사용허가기간에 대하여

사용허가기간의 종료일은, 각 분기 말일까지로 한다.

## 3. 사용허가 부여시 덧붙이는 조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부여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역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건을 덧붙이는 것으로 한다.



#### (1) 예방약을 사용한 돼지의 표식

예방약을 사용한 돼지에 대하여는 다음 한가지의 표식을 할 것. 단, ③의 표식은 당해농장에서 사양되는 모든 돼지에 예방약을 사용하고 또한 (2)의 기록에 의하여 예방약을 사용한 돼지가 식별 가능한 농장의 돼지(도축장에 직접 출하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① 별첨의 이표에 의한 표식

② 돼지콜레라, HC 등의 刻印이 된 이표에 의한 표식

③ Color Spray에 의한 표식(돼지의 등부위에 'C'라고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 (2) 예방약의 사용보고

예방약의 사용월일, 사용두수, 출하 등의 기록을 실시하고, 예방약을 사용한 돼지의 출하가 종료될 때까지는, 1의 신청서 등의 기재 사항에 관한 실적을 기재한 사용보고서를, 각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도도부현지사에게 보고할 것

#### (3) 출입검사에의 협력

가축방역원이 실시하는 출입검사시, 예방약의 사용상황의 청취, 이상을 나타내는 돼지의 발생상황의 청취, 혈액채취 등에 협력할 것

#### 4. 사용허가상황의 공표 및 보고에 대하여

市町村별 허가농장수, 연사용예정두수 등의 사용허가상황을 취합하여 공표하고,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및 관계 도도부현지사에게 보고할 것.

#### 5. 보고 및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하여

(1) 3의(2)의 예방약 사용보고가 되지 않는 경우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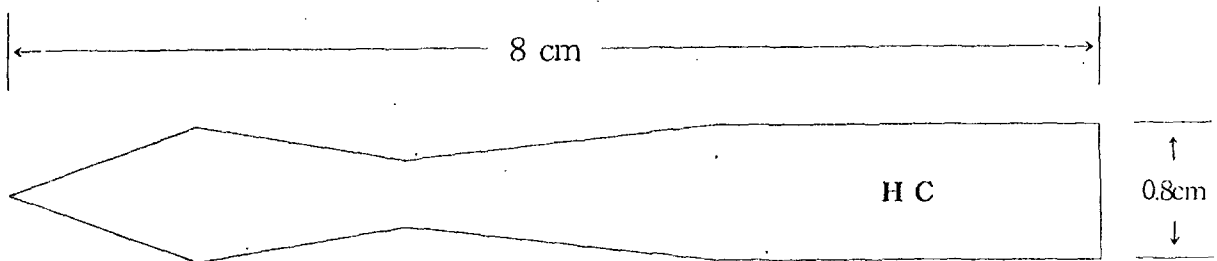
(2) 3의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는, 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수속법('93년 법률 제88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것

### 제3 기타

1. 사용허가를 부여한 농장에서 사육되는 모든 돼지에 예방약이 사용되도록 (모든돼지를 예방접종 하도록) 지도할 것
2.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 일반판매업자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약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할 것

(별첨)

#### 돼지콜레라 예방약 사용필 이표



'HC'에 대하여는 '縣名(縣名을 판별하는 번호)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 가축방역요령 일부개정에 대하여

12축A제2761호 2000년10월1일

수신 : 도도부현지사

발신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돼지콜레라 방역에 대하여는, '96년 이후 계획적으로 실시해온 돼지콜레라 박멸 대책의 성과를 감안하여, '00년10월1일 이후 원칙적으로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접종을 중지함에 따라, 가축방역대책요강('99년4월12일, 11축A제467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의 일부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또한, 구제역에 관한 방역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이번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을 감안한 관계 통지의 개선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로 개정키로 하였음을 참언함.

(별첨)

### 가축방역대책요강 신규 대조표

개정후	현행
I. (생략)	I. (생략)
II. 개별질병대책 《가축전염병》 1 ~ 8 (생략)	II. 개별질병대책 《가축전염병》 1 ~ 8 (생략)
9. 돼지콜레라 본병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예방약의 접종을 중지한 점에서, 『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2000년10월1일자 12축A제2762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에 의한 청정성의 유지, 확인을 위한 검사 및 조사와 만일의 발생에 대비한 방역체제의 더한층 정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9. 돼지콜레라 본병에 대하여는, 자위방역사업을 중심으로한 예방접종에서 예방약을 이용하지 않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96년5월10일자 8축A제1243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에 의한 청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방역대책 및 청정화유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0 ~ 56 (생략)	10 ~ 56 (생략)
III. (생략)	III. (생략)
별기 1 ~ 별기 8 (생략)	별기 1 ~ 별기 8 (생략)
별기양식 1 ~ 별기양식 5 (생략)	별기양식 1 ~ 별기양식 5 (생략)

##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의 전부개정에 대하여

12축A제2762호 2000년10월1일

수신 : 도도부현지사

발신 :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돼지콜레라 방역에 대하여는, '96년도 이후 계획적으로 실시해온 돼지콜레라박멸대책의 성과를 감안하고, '00년10월1일 이후 원칙적으로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접종을 중지함에 따라, 돼지콜레라방역 대책요령('96년5월10일자 8축A제1243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의 전부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양지하시고, 계속 돼지콜레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별첨)

###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

#### 1. 기본방침

돼지콜레라 방역에 대하여는, 최근의 발생상황, '96년도 이후 실시해온 돼지콜레라박멸대책의 성과 등을 감안하여, '00년10월1일 이후 원칙적으로 전국적인 백신접종을 중지하고, 방역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동 백신을, 가축전염병예방법('51년 법률 제16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그 사용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동물용생물학적제제로서 지정했다. 앞으로, 국가 및 도도부현은, 가축위생단체, 양돈관계단체 및 양돈경영자(이하 「양돈경영자 등」이라 한다.)의 협력하에, 조기에 전면적인 백신접종이 중지되어, 국내에서 돼지콜레라박멸이 달성되도록 다음의 대책을 실시한다.

- (1) 농장에의 출입검사, 이상돈의 적발과 당해돼지의 병성감정 및 정기적인 항체보유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촌(市町村) 및 양돈

경영자 등으로부터의 이상돈의 조기통보체제를 확립한다.

- (2) 돼지콜레라 발생시에는, 돼지(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살 또는 살처분(이하 「살처분 등」이라 한다.)에 의한 만연방지를 기본으로 하고, 긴급백신접종은, 돼지콜레라의 잠재화 방지에 충분히 배려한후, 만연방지에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속하게 실시한다.
- (3) 박멸을 향한 구체적인 추진방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양돈경영자 등에게 방역대책의 주지철저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단계에 학식경험자, 양돈관계단체, 가축위생관계단체, 도도부현, 국가관계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돼지콜레라박멸전국검토위원회(이하 「전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도도부현단계에 같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돼지콜레라박멸도도부현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원활한 방역의 추진에 대하여, 기술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전국위원회에 학식경험자, 국가관계자, 기타 전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기술검토회를 설치한다.

## 2. 돼지콜레라 박멸 추진방책

도도부현은, 본 요령에 의하여 도도부현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을 정하고, 당해요령은, 아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돼지콜레라 발생 예방조치 및 만연방지조치를 정한다.

## 3.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등

### (1) 청정성유지 확인 조사

도도부현은 다음의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

#### 가. 임상검사에 의한 이상돈의 적발과 병성감정

원칙적으로 매년도 1회, 모든 양돈농장에서 임상검사에 의한 이상돈의 적발 및 당해돼지의 병성감정을 실시한다.

나. 항체보유상황조사

(가) 일관경영농장 및 비육경영농장에 관한 조사

매월, 임의추출한 별도로 정하는 두수의 도축장 반입전후의 돼지에 대하여 항체보유상황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백신의 접종상황이 불명한 항체양성돈을 확인한 경우는, 당해돼지의 백신접종력을 확인하고, 필요시 동거돈의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병성감정을 실시한다.

(나) 번식경영농장 및 종돈종장에 관한 조사

최소한 6개월에 1회, 임의추출한 10두의 돼지에 대하여 항체보유 상황조사를 실시한다. 또, 가축개량증식법('50년 법률 제209호) 제4조 제1항에 의한 종축검사가 실시되는 돼지에 대하여는, 검사를 위해 채혈되는 혈액을 이용한 항체보유상황 조사를 실시한다.

(다) 야생멧돼지에 관한 조사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의 협력도 얻어서, 가능한한 항체보유상황 조사를 실시한다.

(2) 발생예방을 위한 지도 등

도도부현은, 다음의 지도 및 확인을 실시한다.

가. 농장에 있어 위생관리 철저 등

(가) 양돈경영자에 대하여, 가축방역대책요강('99년4월12일자 11축 A제467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의 별기 4의 종돈장 등 사양시설에 있어 위생관리대책지침에 의한 위생관리의 철저를 도모하고, 돼지의 출하 및 도입, 농장에의 사람 및 차량의 출입 등을 기록한 위생관리부를 정비하여, 보존하도록 지도 한다.

(나) 법 제51조에 의한 출입검사, 순회지도, 진료수의사로부터의 보고 등에 의하여 위생관리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나. 관계장소에서의 위생관리 철저 등

##### (가) 사료관계시설

사료공급관계자에 대하여, 사료제조시설, 사료중계기지 등 사료관계시설에서의 출입시 차량 등의 소독에 노력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정비하여, 보존하도록 지도한다.

##### (나) 도축장 및 가축시장

도축장관계자 및 가축시장관계자에 대하여, 당해시설에서의 출입시 차량 등의 소독, 출하돼지 승하차장소 및 계류장소의 소독에 노력하고, 출하 또는 상장 돼지의 기록을 정비하여 보존하도록 지도할 것

#### 다. 잔반 등의 가열처리

잔반 등을 급여하고 있는 양돈경영자에 대하여, 급여전에 가열처리 (70℃, 30분 이상 또는 80℃, 3분 이상)하도록 지도한다.

#### 4. 만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도도부현은 다음의 만연방지조치를 실시한다.

##### (1) 발생에 대비한 방역체제 정비

발생시의 만연방지조치의 실시체제 사전점검과 긴급연락망 정비 및 본연락망의 양돈경영자 등에의 주지철저를 도모한다.

##### (2) 이상돈의 통보

양돈경영자 등에 대하여, 사양돈에 발열, 식욕부진, 설사, 이상산 등의 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우선 돼지콜레라를 의심하여, 즉시 가축보건위생소(이하 「가보」라 한다.)에 통보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한다.

##### (3) 통보를 받은 경우의 조치

즉시, 통보가 있는 농장에 출입하여, 사양두수의 확인 및 병성감정

지침('98년10월22일자 축A제1937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또, 병성결정까지의 동안, 당해농장의 사양 돼지 전두수를 격리, 소독하고, 사람 및 차량의 출입 자속을 지도하고, 3의(2)'가'의(가)의 위생관리부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비한 초동방역조치의 실시에 대하여 검토한다.

#### (4) 병성결정시의 만연방지조치

발생도도부현에 돼지콜레라 중앙대책본부(縣廳) 및 돼지콜레라 발생현지대책본부 (가축보건위생소)를 설치하고, 도도부현 관계기관 및 시정촌에 연락한다. 또, 다음에 열거하는 만연방지조치의 실시에 있어서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대를 취하여 실시할 것

#### 가. 환축, 의사환축 등의 범위

##### (가) 환축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환축은 다음의 돼지로 한다.

- a. 병성감정지침에 의해 돼지콜레라에 걸려있다고 진단된 돼지
- b. a의 돼지와 동거하여,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돼지

##### (나) 의사환축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의사환축은 다음의 돼지로 한다.

- a. 환축과 동일농장(사양관리형태 등에 의해, 가축방역원이 돼지콜레라의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사양되고 있는 축사와 방역상 구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돈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양되고 있는 돼지
- b. 과거(환축이 이상을 나타낸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하 같다.) 14일간에 발생농장에서 사양되고 있었던 돼지
- c. 환축으로부터 과거 14일간에 채정된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한 돼지



(다) 환축으로 될 우려가 있는 돼지

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환축으로 될 우려가 있는 가축 (의사환축을 제외)은 다음의 돼지로 한다.

- a. 사양관리형태 등에 의해, 가축방역원이 돼지콜레라의 환축이 사양되고 있는 축사와 방역상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된 축사에서 사양되고 있는 돼지
- b. 의사환축과 동일농장에서 사양되고 있는 돼지 및 과거 14일간 의사환축과 동일농장에서 사양되고 있었던 돼지
- c. 과거 14일간에 의사환축과 동일농장에서 사양되고 있었던 돼지와 동거하고 있는 돼지
- d. 의사환축으로부터 과거 14일간에 채정된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돼지
- e. 과거 14일간에 발생농장에 돼지를 출하한 농장의 돼지 및 과거 14일간에 환축에 인공수정을 실시한 정액을 채정한 돼지
- f. 기타, 가축방역원이 돼지콜레라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돼지

나. 공시, 보고 또는 통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보고 및 통보를 실시하고, 가축위생관계단체, 양돈관계단체 등과 연대를 도모해 가면서, 돼지콜레라 발생에 관한 정보를 주지한다. 또한, 병성결정시 까지에 시간을 요하고 또한 돼지콜레라의 의심이 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공시 및 통보에 앞서 국가에의 보고를 실시하고, 그 취급에 대해 협의한다.

다. 역학관련농장 등에서의 출입검사

가축위생관계단체, 양돈관계단체, 관계도도부현 등과 연대를 도모해 가면서, 역학관련농장, 이동제한구역내의 농장, 관계장소 등의 출입검사를 실시한다.

라. 이동제한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대략 반경 3km의 구역 및 10km의 구역을 방역구역 및 감시구역(방역구역에 접하는 구역으로 방역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하여 시기를 잃지않게(맞추어)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구역의 설정에 있어서는 지리적 조건, 돼지 사양상황 등을 고려한다. 또, 이동제한 기간은 최종 발생예에 대한 조치후, 방역구역에 대하여는 40일간, 감시구역에 대하여는 15일간으로 하고, 당해기간중에 새로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또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에 의해 가축방역원이 방역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돼지는, 최종발생예에 대한 조치후, 방역구역에 대하여는 21일째 이후, 감시구역에 대하여는 7일째 이후 도축장에의 출하를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허가시에는 도축장 출하허가서를 교부한다.

마. 긴급백신접종

방역구역내의 농장(발생농장을 포함한다.) 및 역학관련농장을 대상으로 하여, 축산국 위생과(이하 「위생과」라 한다.)와 협의한 후, 원칙적으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사양돼지 전두수에 접종하고, 접종한 돼지에는 이표 등으로 표식한다. 접종돼지에 대하여는 다른 농장에의 이동자숙을 지도하고, 접종돼지에서 출산된 돼지(도축장에 직접 출하하는 돼지를 제외한다.)에는 이표 등으로 표식한다.

또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에 의해 가축방역원이 방역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돼지는, 긴급예방접종후 21일째 이후 도축장에의 출하를 허가할 수 있고, 허가시에는 도축장출하허가서를 교부한다.

#### 바. 살처분 등

환축 및 의사환축의 살처분 등은, 만연방지의 관점에서, 발생시의 병세, 역학적 고찰 등에 의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이때에는, 환축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살신고를 즉시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당해 신고가 즉시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을 실시한다.

폐사돈 및 살처분 등이 실시된 돼지에 대하여는, 돼지가 사양되고 있었던 농장부지내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51년 농림성령 제35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 기준에 따라서 매몰처분한다.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폐식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 운반하고, 동 기준에 의해 소각 또는 매몰하던가 또는 규칙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방법에 의해 화제한다.

#### 사. 격리 등

이동제한구역 이외에서 사양되고 있는 환축으로 될 우려가 있는 돼지('가'-(다)-b 및 c에 한한다.)는,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0일간 농장외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지시한다. 또한, 격리시킨 농장에서 사양되고 있는 돼지중, 가축방역원이 그 사양관리형태 등에 의해 의사환축이 사양되고 있는 돈사와 방역상 구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돈사에서 사양되고 있는 돼지 및 '가'-(다)-c의 돼지에 있어서는, 도축장에 출하를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타의 환축으로될 우려가 있는 돼지는 자주적인 격리를 지도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격리를 지시한다.

아. 사양돈의 도태 등의 지도

가축방역원 또는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원 등」이라 한다.)은, (가),(나) 및 (다)의 돼지에 있어서는 도태한후, 소각, 매몰하도록, 또, (라)의 물품에 있어서는 소각, 매몰 또는 소독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미리 위생과와 협의한다.

- (가) 방역구역에 존재하여, 가축방역원 등이 돼지콜레라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도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돼지
- (나) 방역구역 및 감시구역내에 소제하여, 가축방역원 등이 출하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돼지
- (다) (가) 및 (나) 이외의 돼지로서, 가축방역원 등이 돼지콜레라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등 돼지콜레라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도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돼지
- (라) 가축방역원 등이 돼지콜레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소각 등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물품

자. 이동제한구역내의 농장, 역학관련농장, 관계장소에 있어 방역조치

- (가) 이동제한지역내의 농장, 역학관련농장에 대하여, 농장에의 사람 및 차량의 출입제한의 철저, 출입차량의 소독 철저를 지도한다.
- (나) 이동제한구역내의 농장, 역학관련농장에 사료를 배송하는 사료공급관계자에 대하여, 배송차량의 소독철저(차체소독을 포함한다.), 돼지콜레라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배송 루트의 개선을 지도한다.
- (다) 이동제한구역내의 도축장에 있어서는, 출입차량의 소독(차체소독을 포함한다.)의 철저를 지도한다.

(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구역에서의 가축시장(돼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의 개최를 중지한다. 또한, 감시 구역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최하는 경우는 출입차량의 소독철저를 지도한다.

## 5. 기타

### (1)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있어 돼지의 재도입

도도부현은, 이동제한 해제후,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돼지가 도입되는 경우는, 당해돼지의 도입후 약 40일째에 항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청정성을 확인한다.

###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백신의 사용에 관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은 농장 등에서의 청정성의 확인

가. 도도부현은 원칙적으로 허가기간중 최소한 1회, 허가를 받아있는 농장에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의 사용상황의 청취, 이상을 나타내는 돼지의 발생상황 청취, 혈액 채취 등을 실시하여, 농장의 청정성을 확인한다.

나. 도도부현은, 양돈경영자 등에 대하여, 돼지의 도입시에 도입원 농장의 돼지콜레라 백신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백신접종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백신을 사용한 내용의 이표에 의한 표식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관할 가보에 연락하도록 지도하고, 백신접종돈을 도입하는 농장에 대하여는,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1)과 같이 농장의 청정성을 확인한다.

## 돼지콜레라방역대책 추진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12-96 2000년10월1일

수신 : 도도부현 축산주무부장

발신 : 농림수산성 축산국 위생과장

이점에 대하여, 금번 「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의 전부개정에 대하여」(‘00년10월1일자 축A제2762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가 통지되었기, 그 원활한 실시를 기하기 위해, 별첨과 같이 돼지콜레라방역대책의 추진에 있어 유의사항을 정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별첨)

###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에 있어 유의사항

이 통지는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돼지콜레라의 발생예방 및 만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의 신속하고 원활한 실시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을 정한 것이고, 도도부현은, 지역의 실태를 감안하여 아래의 사항에 의하여 효과적,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1. 통상시의 방역조치

통상의 방역조치로서 아래에 열거하는 조사 등을 실시하고, 양돈농장,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관계시설, 화제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고, 가축보건위생소(이하 「가보」라고 한다.) 관할별로 그 소재지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만일의 발생시 원활한 방역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양돈농장에 대하여는, 소재지, 연락선, 돼지사양두수, 돼지출하선(도축장, 출하농장 등), 돼지도입원, 진료(관리)수의사명, 사료구입원,약품구입원,

잔반급여(구입원, 生·가열구분) 등을 기재한 양돈농장대장을 정비하고, 또, 기타의 양돈관련시설에 대하여도 양돈농장과 같이 소재지, 연락선, 반입, 상장, 配送 또는 집하지역명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대장을 정비한다.

## 1. 청정성유지확인조사

### (1) 이상돈의 적발

#### 가. 양돈경영자, 관계단체 등과의 연대

가축전염병 발생시의 대응을 검토하기 위한 조정회의 등을 개최하고, 양돈경영자, 관계단체, 민간수의사, 화제업자, 공중위생관계자, 市町村담당자 등과의 연대를 도모해 가면서, 돼지 전염성질병의 발생상황, 방역대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노력하고, 이상돈의 조기발견에 대하여 협력을 의뢰한다.

#### 나. 출입검사

원칙적으로 매년도 1회, 가축전염병예방법('51년 법률 제16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돼지콜레라 박멸대책사업에 있어 기술지도 등에 의해 도도부현내의 모든 양돈농장에 출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때에는, 양돈농장대장의 사본, 기록부, 소독약, 체온계 등을 지참한다. 양돈농장에의 출입시에는, 의류, 구두, 검사기구, 차량(특히 타이어) 등의 소독에 유의하고, 당해농장에 입장시의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한다. 검사실시에 있어서는 아래의 점에 유의하고, 아울러 양돈농장대장의 기재내용을 확인, 갱신한다.

(가) 임상관찰에서는 돼지 개체가 아닌 돈군(돈방) 전체상황을 관찰한다.

(나) 원기, 식욕, 발육, 동복돈의 균일성, 거동, 피부색, 분노, 분만 상황 등으로 통상이상의 빈도로서 이상이 출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양자의 보고하에 관찰한다.

## 다. 적발해야하는 임상적 이상돈

통상이상의 빈도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이상을 나타내는 돼지가 발견된 경우, 돈방단위로 이상돈의 상황과 발생두수, 1개 돈방에 국한되어 있는가; 확대경향에 있는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관찰, 기록함과 동시에, 1농장당 최소한 30두 이상의 돼지에 대하여 체온측정 및 백혈구수 측정을 실시한다. 또, 최근의 다른농장으로부터의 돼지도입상황(도입원, 도입두수, 도입돈의 검사성적 등), 당해 도입돈과 동일돈방에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임상증상을 조사한다. 이들의 결과에서 돼지콜레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증상의 종류 및 그 정도에 한쪽으로 치우침이 생기지 않도록 層別추출법(월령층별, 용도층별)에 의하여 돼지를 선별하고, 병성 감정을 실시한다. 선발돈이 다수에 이르는 경우에는, 우선, 증상의 정도가 심한것부터 우선적으로 병성감정을 실시한다.

(가) 발열, 원기소실, 식욕감퇴

(나) 변비에 이은 설사

(다) 결막염(눈꼽)

(라) 보행곤란, 후구마비, 경련

(마) 이익, 하복부, 사지 등의 자색반점

(바) 여윌, 피모거침(이른바 ‘히네豚’)

(사) 이상산의 발생

(아) 이상의 어느것인가를 동반하는 폐사

## (2) 항체보유상황조사

### 가. 일관경영농장 및 비육경영농장에 관한 조사

매월, 도도부현내의 양돈농장 호수별로 정해진 연간검사두수(별첨1)를 감안하여, 도축장 출하전후의 돼지에서 시료채취하고, 돼지 콜레라 진단매뉴얼(별지)를 참고로 항체가를 측정한다.



백신접종상황이 불명한 항체양성예를 확인한 경우에는, 백신접종력을 확인한다.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당해돼지의 유래농장의 돼지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를 지시하고, 돼지콜레라 진단매뉴얼을 참고로 병성감정(역학조사, 임상검사, 항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50조 위반으로 조치한다.

#### 나. 번식경영농장 및 종돈농장에 관한 조사

최소한 6개월에 1회, 무작위 추출한 10두의 돼지(도축장 출하 전후의 돼지, 백신 미접종 번식암돼지에서 출산된 돼지 등 항체 음성으로 생각되는 돼지)에서 시료채취하여, 돼지콜레라 진단매뉴얼을 참고로 항체가를 측정한다.

백신접종상황이 불명한 항체양성예를 확인한 경우에는, '가'에 준한 조치를 강구한다.

#### 다. 야생멧돼지에 관한 조사

도도부현 鳥獸행정담당주무과, 엽우회 등과 연대를 도모하여, 수렵포획시 또는 유해조수 구제시에 얻어지는 혈청을 이용한 항체보유상황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수렵두수, 폐사사례, 추측생식두수의 증감정보 등을 수집한다.

## 2. 위생관리지도

### (1) 양돈농장의 위생관리철저 등

양돈경영자에 대하여, 농장, 돈사 출입시의 소독철저, 농장에의 출입제한(외래자용 의류, 고무장화 비치(常備) 및 멧돼지, 개, 고양이 등 타동물의 침입방지를 위한 농장주위의 위장(네트, 헨스 등)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출하원이 명확한 돼지의 구입 및 다음사항에 대하여 지도한다.

또, 진료(관리)수의사에 대하여 대략 월1회, 이상돈의 유무, 위생

관리부의 기록상황, 돼지의 사양상황 등을 가보에 보고하도록 의뢰한다.

#### 가. 소독

발판소독조 및 차량타이어 소독조의 소독액으로는 양성비누 등을, 또, 손 소독액으로는 역성비누 등을 이용하고, 2~3일 간격으로 새로이 만든 것으로 교환한다. 소독조는, 소독액에 잠기는 충분한 깊이와 길이가 있는 것을 설치한다. 또한, 소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발판소독조는 직사일광이 닿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먼지나 빗물의 침입을 방지함과 동시에, 부착되어있는 오니를 사전에 씻어내는 등 주의한다. 또, 동절기 기온저하에 의해 소독액의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판소독조 및 차량타이어 소독에는 분말석회를 이용한다.

#### 나. 의류 등의 교환

의류, 고무장화 등은 가능한한 장내 전용의 것으로 교환하고, 돈사별로 옷을 갈아 입거나 또는 소독하는 등, 돈사간의 질병 전파를 방지한다. 또, 검역돈사 및 병돈 격리돈사에의 출입시는, 소독의 철저와 동시에, 의류, 고무장화 등은 전용의 것으로 교환한다.

#### 다. 위생관리부 등의 기록 및 보존

출입검사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기록하고, 최소한 과거 40일간 보존한다.

(가) 돼지 도입연월일, 도입원, 도입두수

(나) 출하연월일, 출하선, 출하두수

(다) 차량 및 사람의 출입기록

(라) 정액의 구입연월일, 구입선, 종부연월일, 종부돈

(마) 정액 출하연월일, 출하선

(바) 이상돈, 폐사돈의 두수

(사) 사료, 깔짚의 반입상황

(아) 잔반 등의 반입상황

(2) 관계장소에서의 위생관리 철저 등

도축장, 가축시장, 가축공진회, 사료관계시설 등의 양돈관련시설에 있어서는, 차량소독 시설을 설치하여, 출입시의 소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최소한 과거 40일간의 반입, 상장, 출품 또는 배송농장명 및 차량운행기록을 보관하도록 지도한다. 또, 개장 또는 개설전후의 시설의 세척, 소독의 철저를 업무규정 등에 명기하도록 지도한다.

## II. 발생시의 방역조치

### 1. 발생에 대비한 방역체제 정비

돼지콜레라를 의심케하는 증례(이하 「의사증례」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초동방역체제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다음사항에 대하여 그 실시상황 및 정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1) 임상적 이상돈의 조기발견, 조기통보를 촉구하기 위해, 양돈경영자, 축산관계단체, 민간수의사, 사료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판매업자, 화제업자, 공중위생관계자 등에의 정보제공 및 긴급연락망의 유지
- (2) 가보, 도도부현축산주무과, 도도부현관계기관, 시정촌, 축산관계단체,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관계업자, 화제업자, 방역자재판매업자, 국가 등에의 긴급연락체제
- (3) 가축사체 처리시설의 소재지, 처리능력의 확인

환축, 의사환축 또는 도태돈을 자기 도도부현 이외로 운반할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입을 예정하고 있는 소각·매몰장소, 화제장이 소재하는 도도부현에 대하여 다음의 발생시 방역대책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고, 축산관계단체, 화제업자, 운반업자, 공중

위생관계자 등과의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가. 예상되는 발생상황(발생두수, 폐사두수, 이동제한구역의 농장호수  
이동제한구역의 사양돼지두수 등)

나. 돼지의 살처분방법(사용약제 등)

다. 살처분 돼지 운반을 위한 차량의 手當方策

라. 차량에의 탑재 및 차량에서의 하차시의 방역조치

마. 처리장에의 운반경로

바. 처리장에서 소독조치

사. 처리장에의 운반시의 관계 도도부현 및 업자와의 연락조정방법

아. 기타(화제품의 처분방법)

(4) 의사증례 통보시의 출입검사에 휴대해야할 방역자재의 확인

장화, 방역의류, 장갑, 체온계, 시료채취용구(헤부기구, 체혈기구 등), 보정구, 필기  
용구, 카메라, 휴대전화, 소독액, 분무기, 바케츠, 폴리에틸렌바케츠, 비닐봉투(대,  
소), 비닐시트, 아이스박스 등

(5) 병성감정제료가 반입된 경우에 대비한 검사기구 등의 점검·정비  
(별첨2)

## 2. 의사증례의 통보

I-1-(1)-‘다’-(가)~(아)에 열거하는 임상적인 이상을 나타내는 돼지가  
통상이상의 빈도로 출현한 경우에는, 즉시 가보에 연락하도록 양돈  
경영자, 양돈관계자 등을 지도 한다.

## 3. 통보를 받은 경우의 대응

양돈경영자, 수의사 등에 대하여, 의사증례 발생의 통보가 있는 이후  
병성감정결과가 얻어질 때까지의 동안은, 쓸데없이 정보가 유포되어

無用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관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아래의 대응을 실시한다.

(1) 가보의 대응

가. 의사증례를 사양하고 있는 농장(이하 「통보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보에 정비되어있는 양돈농장대장의 기록내용과 조회해가면서 의사증례의 증상, 발증월령, 증상의 최초발생시기, 발증두수, 사양두수, 돼지의 이동상황 등을 청취하여 기록한다.

나. 통보자에의 지도사항

(가) 양돈경영자가 통보한 경우

가축방역원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장내의 모든 돼지의 격리를 지시하고, 즉시 가축방역원이 농장에 출장할 것임을 알린다.

또, 가축방역원이 농장에 도착할때까지의 동안에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최소한 농장출입구 및 돈사출입구에 발판소독조를 설치(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독액을 교환한다.)하고, 위생관리부를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나) 진료(관리)수의사가 통보한 경우

가축방역원은, (가)의 지도사항을 양돈경영자에게 전달하도록 수의사에게 의뢰한다. 또, 수의사에 대하여는, 당해농장에 머물면서, 돈방별로 돼지의 임상증상을 관찰, 기록하고, 증상이 심한 돼지에 대하여 체온측정을 실시하도록 의뢰한다. 또, 임상적 이상돈의 병성감정이 종료될때까지의 기간은 수의사의 다른농장 출입을 자숙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다른농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의류의 교체, 손, 장화바닥 및 차량의 소독 등을 확실하게 실시하고, 진료농장, 경로 등에 대하여 확실하게 기록하도록 의뢰한다.

다. 도도부현 축산주무과 가축위생주임자(이하 「縣주임」이라 한다.)에의 연락사항

가보소장은 통보농장과 縣주임과의 사이의 연락원을 두고, 연락원은 우선, 縣주임에게 의사증례의 발생에 관한 정보(Ⅱ-3-(1)-‘가’에서 청취한 사항 등), 가축방역원이 통보농장으로 가고있는 내용 및 통보농장주변의 농장의 상황에 대하여 양돈농장대장에 의해 연락한다. 그후, 통보농장에서 정보를 입수하는대로 수시로 연락하는 것으로 하지만, 연락시각 및 그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록하여, 정확한 방역실시에 노력한다. 또한, 자기 도도부현 이외의 다른 가보, 국가, 축산관계단체 등에의 연락, 보고는, 縣주임이 스스로 실시하던가 또는 縣주임의 지시를 받아서 가보소장 또는 연락원이 실시한다.

#### 라. 초동방역의 실시를 위한 준비

##### (가) 양돈농장대장에 의한 주변농장의 확인(위치 및 사양두수)

가보에 정비되어 있는 양돈농장대장에 의하여, 통보농장 주위의 양돈농장의 위치, 사양두수 등을 정리한다.

##### (나) 돼지콜레라 발생현지방역대책본부의 설치준비

각 반의 담당책임자, 실시담당자 등을 미리 선정한다.

#### (2) 縣주임의 대응

##### 가. 가축방역원의 대기

의사증례가 환축으로 진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통보농장의 관할 가보 이외의 가보소장에 대하여 긴급시의 연락체제의 확인을 지시하고, 또, 방역대응의 실시에 지장이 생길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다른 도도부현지사에 대하여 가축방역원의 파견요청을 검토한다.

#### 나. 초동방역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

##### (가) 병성감정 실시체제의 시동, 확인

병성감정 실시에 대비하여 미리 동결절편제작기기의 전원을 넣고, 필요기구, 기자재의 준비상황을 확인하도록 병성감정시설에

연락한다.

(나) 가축위생시험장에의 병성감정재료의 반입절차 확인

가축위생시험장에의 병성감정재료의 반입에 대비하여, 운송자, 운송수단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다) 縣콜레라방역대책본부의 설치준비

각반의 담당책임자, 실시담당자 등을 미리 선정한다.

#### 4. 통보농장 도착후의 대응

(1) 가축방역원의 대응

가. 휴대방역 자재

가축방역원은, 최소한 Ⅱ-1-(4)의 방역자재를 휴대하고, 당해자재를 통보농장에서 가지고 돌아올 때에는, 소독 등에 의해 돼지콜레라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통보농장에의 출입

가축방역원은, 돼지콜레라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의 외부 또는 농장에서 퇴장시의 차량소독(특히 타이어)을 고려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농장에 출입한다.

다. 사양돈의 임상검사 및 역학정보의 수집

가축방역원은, I-1-(1)-'나' 및 '다'에 준하여 임상검사, 역학정보의 수집을 실시하고, 필요가 있으면 위생관리부의 기록을 확인한다. 임상증상이 심한 돼지 및 의사증례와 동거하고 있는 돼지에 대하여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혈액을 채취한다. 또, 돼지의 품종, 크기(월령)별로 돼지의 두수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라. 연락원과의 연락

가축방역원은, 역학정보 및 돼지의 임상검사에서 의사증례가 돼지콜레라의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연락원에게 연락하고, 병성감정재료를 채취한다. 또, 재료채취후는 병성감정시설에 운반하는 내용(도착예정시간을 포함한다.)을 연락한다.

(가) 병성감정은 임의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양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증례를 의사환축으로서 취급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을 실시한다. 법에 의한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후의 가축의 평가액을 결정할 때 자료로 하기 위해, 돼지의 사진을 여러장 촬영한다.

(나) 병성감정을 위한 부검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병성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돼지의 운송이 곤란하거나 또는 다수의 검체를 채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농장내에서 채취한다.

(다) 통보농장내에서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 a. 의사증례 사양돈사 이외의 돈사에서 충분히 분리되어 있는 등, 만일 채액 등이 비산될 경우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
- b. 병성감정전에 장소의 주위에 충분한 량의 소독액을 살포
- c. 비닐시트위에 소독액을 적신 모포 등을 깔고, 그 위에 돼지를 놓는다.
- d. 시료채취시에는 검체의 취급잘못을 방지하기 위해, 돼지별로 조사, 검사기록을 기재
- e. 시료채취후, 돼지를 비닐시트로 둘러싸서, 폴리에틸렌바케스 등 소독액을 살포 또는 침적할 수 있는 용기에 넣고, 장소의 주위에 충분한 량의 소독액을 살포

또한, 가축방역원은, 역학정보 및 돼지의 임상검사에서 의사증례가 돼지콜레라의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연락원에게 연락하고, 병원체의 확산방지에 유의하여,



당해 증례를 병성감정시설에 운반하여, 통상의 병성감정을 실시한다.

## (2) 연락원의 대응

가축방역원으로부터 의사증례에 관한 정보를 수령한 경우에는, 가보소장 및 縣주임에게 연락한다.

## (3) 縣주임의 대응

가. 의사증례가 돼지콜레라의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경우

縣주임은, 돼지콜레라 감염이 부정될때까지 의사증례가 사양되고 있었던 농장의 돼지에 대하여 법 제1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확실하게 격리되어 있음을 연락원에게 확인하게 한다.

통보농장의 관할가보 이외의 가보소장에 대하여 가축방역원의 대기, 병성감정시설에 대하여 병성감정의 실시준비(도착예정시간을 포함한다.)를 지시한다.

또, 축산국 위생과(이하 「위생과」라 한다.)에는, 의사증례가 환축 또는 의사환축 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가보로부터 보고되는 양돈농장대장에 의한 정보에서, 긴급예방접종이 돼지콜레라의 만연방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가상하여, 신고농장 및 주변농장의 사양두수, 환축·의사환축 두수, 처리방법 및 그 능력, 이동제한 구역내의 농장호수 등에 대하여 보고한다. 위생과는 도도부현의 보고내용에 의하여, 사단법인 전국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회(이하 「전국위지협」이라 한다.), 동물검역소에 연락을 취하고, 즉시 긴급예방약의 필요수량, 양도방법 등에 대하여 조정한다.

나. 의사증례가 돼지콜레라의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아니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경우

통보농장의 관할가보 이외의 가축방역원의 대기를 해제하고, 병성감정시설에 그 내용을 연락한다. 또, 위생과에는, 의사증례의

발생 및 그 대응에 대하여 연락하고, 그 개요에 대하여는 취합대는 대로 보고한다.

## 5. 병성감정 실시와 가축위생시험장과의 연대

縣주임은, 역학조사, 임상증상, 혈액검사 등에서 돼지콜레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생과에 보고하고, 위생과는, 縣주임으로부터의 보고사항을 가축위생시험장에 연락한다.

병성감정은, 필요시 가축위생시험장의 기술적조언을 받아가면서 병성감정지침에 의해 실시한다.

또한, 縣에서의 병성감정에서 돼지콜레라 감염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생과는, 즉시 가축위생시험장에서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내용을 동시험장에 연락하고, 반입해야 하는 재료, 필요한 역학정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협의결과를 縣주임에게 연락한다.

## 6. 돼지콜레라 확정진단후의 조치

縣주임은, 통보농장에서의 임상검사결과, 역학조사결과, 도도부현 및 가축위생시험장의 병성감정결과 등에서 의사증례가 돼지콜레라의 환축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위생과, 縣내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다음의 조치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1) 방역대책본부 설치

가보에 돼지콜레라 발생현지방역대책본부, 도도부현청(축산주무과)에 縣돼지콜레라방역대책본부 및 농림수산성에 돼지콜레라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중앙본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담당책임자, 작업분담, 지시계통,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각 본부의 주된 구성은 다음과 같이한다.

가. 돼지콜레라 발생현지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아래에 다음의 각반을 둔다.

- 연락조정반(축산과, 관계자와의 연락조정을 한다.)
- 추적반(관련농장, 관련장소를 조사하고, 방역상의 지시를 한다.)
- 발생지역반(일정한 방역조치 종료까지의 기간, 발생농장에 상주한다.)
- 주변지역반(이동제한구역내 농장의 출입검사, 필요시 도축장 출하허가를 한다.)
- 서무반 (경리, 방역자재의 출납사무를 한다.)

나. 縣돼지콜레라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아래에 다음의 각반을 둔다.

- 총무반(방역방침의 책정, 정세분석,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조정을 한다.)
- 정보반(정보의 수집, 홍보자료 작성, 홍보연락을 한다.)
- 방역지도반(방역지도, 방역자재의 조달, 방역요원의 동원을 한다.)
- 서무반(경리, 출납사무를 한다.)

다. 돼지콜레라 중악방역대책본부(중앙본부)

- 총무반(방역방침의 기획·결정, 정세분석,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조정을 한다.)
- 정보반(정보수집, 홍보자료 작성, 홍보연락을 한다.)
- 방역지도반(방역지도, 방역요원의 동원을 한다.)
- 현지조사반(발생현지의 조사, 지도를 한다.)
- 자재반(백신 수배, 방역자재의 확보를 한다.)
- 서무반(경리, 출납사무를 한다.)

라. 가축위생시험장

가축위생시험장은, 필요시 병성감정, 역학조사, 방역조치 등에 관하여 기술적조언을 한다.

마. 동물검역소

동물검역소는 필요시 발생원인조사, 수입검역강화, 방역조치지원 등을 한다.

바. 동물의약품검사소

동물의약품검사소는 필요시 방역자재확보, 방역조치지원 등을 한다

(2) 공표, 통보

가. 발표에 앞서 도도부현내의 도축장, 가축시장 및 관계도도부현에는 사전에 연락하고, 농림수산성과 도도부현의 양쪽에서 동시에 발표한다. 발표내용에는 병명, 발생두수,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경위, 이미 실시한 방역조치의 개요, 방역대책본부의 설치, 관계자에 대한 협력요청, 돼지콜레라는 인체에 대하여는 감염성이 없는 점 등 소문피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콜레라(환축) 발생」 내용을 공시, 통보 및 보고함과 동시에,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에 연락을 실시한다.

다. 縣내(관내)의 생산자, 관계자에게는 시정촌, 관계단체의 협력을 얻어 홍보지(치라시) 배포(별첨3), 인터넷 등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 소문피해 방지에 노력한다.

라. 계속발생의 경우도 그때마다 같은 절차를 실시한다.

(3) 관계장소에서의 출입검사 등

가. 출입검사 등에 앞서, 당해농장(양돈농장대장에 의해 확인), 관계장소에는, 방역조치의 철저, 이상발견시의 통보에 대하여 관계단체·

기관의 협력도 얻어서 전화로 확인한다.

나. 다음 장소의 임상검사, 이상돈의 혈액검사를 실시한다.((가)~(다)를 우선하여 실시하고, 그후 (라)~(자)를 실시)

(가) 과거 14일간 출하선농장(출하돼지는 의사환축으로서 살처분 등을 실시하고, 병성감정을 실시. 정액판매의 경우는 판매선농장, 가축시장 출하의 경우는 당해 출하돼지 구입농장)

(나) 과거 14일간의 도입원 농장(정액구입의 경우는 판매원농장, 시장의 경우는 당해도입돼지 출하농장)

(다) 방역구역내 농장

(라) 과거40일간의 출하선농장(정액판매의 경우는 판매선농장, 가축시장 출하의 경우는 당해출하돼지 구입농장)

(마) 과거14일간의 가축시장출하가 있는 경우의 당해시장 상장돼지 구입농장

(바) 과거40일간 도입원농장(정액구입의 경우는 판매원농장, 시장의 경우는 당해도입 돼지 출하농장)

(사) 과거14일간의 시장도입이 있었던 경우의 당해시장 상장돼지 출하농장

(아) 감시구역내 농장

(자) 차량 등을 통한 역학관련농장

#### (4) 이동제한

가. 이동제한구역의 설정방법

이동제한구역은, 내략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km이내의 지역을 방역구역으로 하고, 반경 10km 이내의 구역(방역구역에 접하는 구역으로 방역구역을 제외한 구역.)을 감시지역으로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 양돈농장의 입지, 농장간의 돼지의 이동 상황, 관계자 및 차량의 운행경로, 지리적 경계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 축소한다. 이동제한구역 설정후는 즉시 관계자, 관계도도부현, 국가에 통지하고, 그 기간의 기산일은 고시일에 관계없이 이동제한이 실질적으로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또한, 돼지콜레라의 계속발생에 의하여 동일농장이 다른 2가지 이상의 발생에 관련되어 이동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해제되는 이동제한구역의 제한기간의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속발생의 상황, 계속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등 방역상 지장이 생긴다고 예상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또,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移入의 제한을 실시하는 도도부현에 있어서는, 이동제한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유의한다.

#### 나. 도축장 출하를 인정하는 검사 실시시 유의사항

방역구역, 감시구역별로 다음의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돼지콜레라의 감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도축장에의 출하를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허가시에는 도축장출하허가서(별첨4)를 교부한다.

##### (가) 방역구역

- a. 역학적 관련의 조사를 실시 (발생농장에서 돼지의 도입이 있었던 경우는, 당해 돼지가 환축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 있을 것. 차량 등을 통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입장시의 차량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을 것)
- b.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동제한 개시후 14일째 이후, 항체검사(30두/농장)을 실시
- c.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한 경우, 이동제한 개시후 14일째 이후, 항체검사(30두/농장)을 실시함과 동시에, 체온 40℃ 이상으로 또한 백혈구수 10,000/mm<sup>3</sup> 이하에 해당하는 돼지를 대상으로 하여, 편도를 이용한 형광항체법을 실시

d. 출하시(이동제한 개시후 21일째 이후) 임상검사 실시

(나) 감시구역

a. 역학적관련의 조사를 실시(발생농장에서 돼지의 도입이 있었던 경우는, 당해돼지가 환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 있을 것. 차량 등을 통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입장시의 차량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을 것)

b. 출하시(이동제한 개시후 7일째 이후), 임상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

발생농장에서 돼지의 도입이 있었던 경우는, 당해돼지와 동거하고 있는 돼지를 중심으로 검사대상으로 하고, 차량등을 통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동선에서 가장 가까운 돈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검사두수의 최소한 반수를 번식용암돼지로 하도록 고려한다. 출하시의 검사에 있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임상적 이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만 도축장 출하를 허가한다.

다. 도축장 출하를 인정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동일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하여는 출하하는 최소 수송단위별로 도축장 출하허가서를 발행하고, 도축장을 관할하는 가보 및 출하도축장에 사전에 연락한다.

라. 이동제한구역외의 돼지 등의 원활한 유통판매의 확보

이동제한구역외의 농장에 대하여는, 필요시 당해농장은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없고, 또, 임상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내용을 기재한 증명을 발행하여, 돼지 및 돈육의 원활한 유통판매의 확보를 도모한다.

(5) 발생농장에서의 일반긴급조치

가. 농장부지 출입구에서의 발생사항 게시, 문의 폐쇄, 망을 치는

등에 의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출입구에는 발판소독조를 설치한다.

나. 돼지의 격리를 확인한다.

다. 돼지의 처분, 살처분돼지의 처리, 소독 등에 필요한 인원, 자재, 약품 등의 확보는 생산자와 연대하여 현지방역대책본부가 市町村, 관계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시한다. 가축방역원은 살처분예정두수, 살처분방법, 처분돈의 처리방법, 필요소독량 등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동 본부에 연락한다.

라. 바이러스 오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물품 및 장소에 대하여 충분한 량의 소독액을 살포한다.

#### (6) 긴급예방접종

가.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사항

발생농장 및 주변농장의 사양두수, 환축·의사환축두수, 처리방법 및 그 능력, 이동제한구역내의 농장호수, 사양두수 등에 대하여 위생과에 보고한다.

나. 긴급예방약 등의 양도

‘가’의 협의결과, 긴급예방접종의 실시가 돼지콜레라의 만연방지상 필요하다고 중앙본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돼지콜레라 발생장소와 돼지콜레라 예방약 비축장소와의 거리,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즉시 예방약 등을 돼지콜레라 발생 도도부현에 운송하도록 전국 위지협 또는 동물검역소에 연락하고, 전국위지협 또는 동물검역소는 예방약 및 접종자재의 도도부현에의 도착시각 등을 중앙본부에 연락한다.

다. 긴급예방접종의 실시방법

접종에 대하여는, 발생농장과의 역학적 관련성의 강약 및 지리적



관계를 고려하여, 접종을 우선순위를 정한다.

접종시는 최소한 1돈방별로 주사침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돈사간의 만연방지조치(의류의 교체, 소독 철거 등)에 유의한다.

실시시에는 단시간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접종하는데 마음을 쓰고, 접종돈에는 우선 스프레이 등으로 마크를 하여 접종누락이 없도록 주의하고, 그 후, 발생농장의 돼지를 제외한 접종돈(도축장 직행돼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표로서 확실하게 표식한다.

방역구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농장,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지만,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없고, 돼지콜레라의 만연방지상 지장이 없다고 가축방역원이 인정하는 농장에 대하여는, 긴급예방접종 대상농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 방역구역외의 농장에 대하여는, 역학적 관련성의 강약을 판단하여 실시한다.

(7) 도살 또는 살처분(이하 「살처분 등」이라 한다.)

환축 및 의사환축에 대하여는, 단기간에 살처분 등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살처분 등 후의 돼지의 처리를 고려하여, 필요시 긴급예방접종도 활용하고, 살처분 등 후의 처분돈의 처리에 있어서는,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수를 상회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또, 당해돼지(폐사돼지를 포함한다.)의 처분에 있어서는, 가축공제에의 가입상황을 가축의 소유자에게 확인하고,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市町村과 연대하여 원활한 처분에 노력한다.

가. 법 제18조에 의한 신고방법

의사증례가 환축으로 진단되고, 당해환축이 돼지콜레라 호조금교부계약의 대상돼지인 경우에는, 즉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도록 환축의 소유자를 지도하는 것으로 하지만, 당해

신고가 즉시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명령을 실시한다.

#### 나. 살처분 등의 방법

(가) 가축방역원은 살처분 등의 대상돈의 소유자에 대하여 살처분명령서(별첨5), 도살지시서(별첨6)을 교부한다.

(나) 살처분의 경우에는, 살처분에 앞서 돼지의 품종, 크기(월령) 별로 돼지의 두수를 확인하고, 평가에 참고하기 위해 각각의 대표적인 돼지의 사진을 여러장 촬영한다.

(다) 살처분의 경우에는, 평가인의 발생농장 도착을 기다려, 살처분예정돈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라) 살처분 등은 축사내, 혹은 그후의 사체처리에 편리한 장소(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차량부근에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지만, 될수있는한 공중의 눈에 띄지 않고, 그후의 소독조치를 실시하기 쉬운 장소 또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마) 살처분 등은 소유자의 의무로 되어 있지만, 그 실시에 있어서는 市町村, 관계단체 등의 협력도 얻어서 실시한다. 살처분 등은 약제의 접종, 도살총의 응용 등의 방법에 의해, 혈액, 체액 등의 확산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 (8) 발생농장 밖으로의 돼지의 운반방법

환축 및 의사환축은 발생농장 부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살처분 등 후에 사전에 선정한 소각·매몰장소 또는 화제장까지 컨테이너 차량 또는 불침투성의 시트로서 싸는 등의 방법에 의해, 반입 당일에 처분할 수 있는 두수만 운반하도록 지도하고, 운반은 가축방역원에 의한 감시하에서 실시한다.

돼지콜레라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 처분돈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컨테이너차량에의 탑재 및 운반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가) 컨테이너 차량내의 세척, 소독액 살포

(나) 돼지의 체표에의 소독액의 살포

(다) 돈사와 차량사이에는 불침투성의 시트를 깔아 축사주위의 오염을 방지

(라) 탑재후, 차량전체(특히 도어 부근 및 타이어) 및 운전수의 구두바닥을 소독

(마) 탑재 동선 주위에의 소독액 살포

(바) 만일을 대비하여 운반차량에 소독액 탑재

나. 불침투성 시트로 싸는 경우의 유의사항

(가) 차량내의 세척, 소독액의 살포

(나) 짐싣는 곳의 바닥에서 벽까지 1매의 시트로서 깐다.

(다) 시트에의 소독액의 살포

(라) 농장과의 거리가 짧게 되도록 차량을 배치

(마) 돼지를 싣후, 소독액을 살포

(바) '가'의 (라)~(바)를 준용

#### (9) 폐사돈의 소각·매몰 방법

환축 및 의사환축의 소각·매몰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또한 법에 의한 가축사체의 처리에 대하여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그 취지도 감안한 조치에 유의한다.

가. 매몰의 경우

깊이 4~5m로 하고, 사체의 위는 1m의 복토가 될수있도록 할 것.

\* 참고 : 돼지 100두(55kg/두)는 약 10m×2.5m×2m를 필요로 한다.

나. 소각의 경우

주위지역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게 되도록 실시할 것

#### (10) 화제장에서의 방역조치

화제장에서의 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11조의 규정 및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인 것이 확인된 시설에서 실시한다. 또, 반입전에는 화제장을 관할하는 가보, 화제장에 연락하고, 아래의 대응을 실시한다.

가. 시설반입시의 가축방역원(도도부현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반출 및 반입 도도부현의 가축방역원)의 입회

나. 처리장소에 도착시 차량전체(특히 도어 부근 및 타이어) 및 운전수의 의류 및 구두바닥의 소독

다. 돼지의 반출시의 소독액의 살포

라. 돼지의 반출후의 차량전체의 세척, 소독

마. 원료장치장, 렌드링설비 등의 세척, 소독

#### (11) 오염물품 등의 처리

발생농장의 오염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돼지에 준한 처분을 실시하고, 소독에 의해 만연방지에 노력한다.

오염물품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물품이 해당된다.

가. 돼지 정액

나. 돼지 배설물(분뇨, 퇴비, 깔짚)

다. 돼지 사양관리물품(사료, 관리·작업용구 등)

## (12) 격리 등

이동제한구역외의 환축으로될 우려가 있는 돼지는,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기간에 한해 격리를 지시하고, 격리지시서(별첨7)을 돼지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또한, 환축으로 될 우려가 있는 돼지의 병성감정, 검사 등에 의하여 또는 농장 사양돈의 임상검사 등에 의하여 돼지콜레라의 만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격리를 해제한다.

또, 역학관련농장 유래의 돼지콜레라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정액, 배설물, 사양관리물품 등)은 돼지의 격리가 지시되어 있는 기간중의 농장외부로의 이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13) 사양돈의 도태 등의 지도

환축으로 될 우려가 있는 돼지를 도태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도태돼지는 환축 또는 의사환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태 돼지의 처리에 있어서는, 화제장 등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으므로, 기존 시설의 활용을 제1로 생각하고, 당해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도태 지도를 실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14) 소독

발생돈사 및 관련시설에서는, 돼지의 처분직후 즉시 불필요한 기구·기자재의 철거,糞제거, 깔짚반출, 청소, 세척, 소독을 실시한다. 살포한 소독액은 최소한 24시간 방치후 세척하여, 다시 소독액을 살포하고, 다시 1주일후에 소독액을 살포한다.

축사주위의 습윤한 토지에는 소석회(400g/m<sup>2</sup>) 또는 표백분(200g/m<sup>2</sup>)를 분말로 전면애 살포한다. 건조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석회유(31/m<sup>2</sup>)를 살포한다.

저류되어 있는 오줌, 오수저장소는 표백분을 0.5%(w/v)농도 살포하여

섞는다.

(15) 이동제한구역내 농장, 역학관련농장, 관계장소에 있어 방역조치 지도

역학관련농장에 있어 소독의 실시를 지도한다.

이동제한구역내의 농장에 사료를 운반하는 경우는, 당해농장만의 운반차량으로 하거나 또는 당해농장에의 운반을 최후로 하는 등 돼지콜레라의 만연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또, 소독실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소독 포인트를 설치하여, 양돈관계차량의 소독을 강구한다.

7. 돼지콜레라 발생원인의 검색

발생원인의 검색을 위해서는, 국내의 돼지콜레라 발생상황과 관련하여, 임상적 이상돈이 발견된 날을 기산일로 한 과거 40일간의 돼지(정액을 포함한다.), 차량, 사람의 농장에의 출입상황, 잔반급여상황 등의 상황을 청취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분석한다.

8. 이동제한구역의 해제

이동제한 기간중에 새로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제한구역내의 농장에의 출입검사 또는 전화연락에 의하여 어느농장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후에 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시하고, 국가, 관계 도도부현, 축산관계단체 등에 보고, 연락한다.

### Ⅲ.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의 돼지의 재도입

발생농장에 돼지를 재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해제후, 돈사의 구조를 고려하여 많은 돈방에 돼지(도입시에 항체음성을 확인)를 도입후 40일간 사양하고, 그 동안은 돼지의 이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그 동안은, 당해농장을 중점감시농장으로 하고, 임상적으로 이상을 나타낸 돼지는 편도를 이용한 형광항체법에 의해 돼지콜레라바이러스의 검색을 실시한다. 도입후 40일간 경과한 후, 도입돈(30두/농장)이 항체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당해결과를 국가 및 관계 도도부현에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시 발생농장의 청정성이 확인된 내용을 널리 홍보한다.

### Ⅳ. 도축장에서 발견시의 방역조치

#### 1. 발견시의 조치

도축장에서 도축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수축의 도살 또는 해체 검사에서 의사증례로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가보에 신고하도록 관계기관에 사전에 주지한다.

신고를 받은 가보는, 의사증례 및 당해증례와 동일농장 유래의 돼지를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격리하도록 지도한다. 또, 당해돼지를 출하한 농장에 대하여 통보농장에 준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2. 돼지의 처분

병성감정 결과, 의사증례가 돼지콜레라 환축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환축 및 환축과 동일농장 유래의 돼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장소를 이동시키지 않고 살처분 등 하고, 돼지 체표면의 소독 후, 발생농장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 후 처리시설에 운반한다.

### 3. 도축장 및 관련시설의 소독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소독조치가 완료될때까지의 동안은 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해 도축장의 개장을 제한한다.

### 4. 역학관련농장의 조치

환축진단전에, 도축장에서 환축과 동거한 후 농장에 반송된 돼지에 대하여는 환축으로 될 우려가 있는 돼지로서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V. 가축시장, 가축공진회 등에서 발생시의 방역조치

상장 또는 출품돼지가 돼지콜레라의 환축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장·출품돼지는 환축으로 될 우려가 있는 돼지로서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환축으로 진단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던 농장을 발생 농장으로 취급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한 만연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발견장소(시장, 회장)에 대하여는, 소독조치만을 실시한다.

## VI.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시 방역조치

야생멧돼지에서의 돼지콜레라의 감염이 인정되어, 당해멧돼지의 생식지역 주변의 농장에의 만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양돼지에의 긴급백신접종을 포함한 방역대응을 위생과와 협의한다.



[별첨1]

샘플링 방법

1. 연간의 검사두수, 샘플링 농장호수, 농장별 샘플링두수는 다음의 표를 참고로 한다.

縣내 농장호수	검사두수(연간)	샘플링 농장호수	샘플링 두수
~ 100호	호수×10두	50호	10두
100호 ~ 250호	1,500두	50호	10두
250호 ~ 500호	2,000두	100호	10두
500호 ~	2,500두	200호	10두

2. 샘플링 농장 선발은 난수표 등에 의하여 랜덤으로 실시한다.
3. 농장에서 시료채취하는 경우, 縣내의 농장을 가보관할구역별로 구분하여, 각 가보의 양돈농장 비율에 따라서 가보별로 샘플링 농장호수를 정하고, 난수표 등을 이용하여, 10두의 돼지를 랜덤으로 선정한다. 10두 이하의 사양규모인 농장의 경우는 전두수를 대상으로 한다.

[별첨2]

병성감정에 필요한 검사기구 등의 점검내용

1. 형광항체법

(1) 동결절편 작성

- ① 드라이아이스의 구입선은 있는가?
- ② 블록 작성용 가위, 핀셋, 네스, 샤프, 여과지 등은 있는가?
- ③ 아세톤(고정용 및 n-헥산냉각용)은 있는가?
- ④ n-헥산은 있는가?
- ⑤ 크리어 스타트의 냉각장치는 정상인가?
- ⑥ 킴파운드는 있는가?
- ⑦ 크리어 스타트의 칼은 충분한 매수 있는가?
- ⑧ 핸들은 스무스 하게 가동되는가?
- ⑨ APS 코드부착 슬라이드그래스는 있는가?
- ⑩ 건조용(風乾用) 드라이어는 있는가?
- ⑪ 면역염색용 매니큐어(이무노펜, 팟푸펜 등)은 있는가?
- ⑫ 양성 컨트롤(백신주 접종 커버슬립) 및 음성 컨트롤은 있는가?

(2) 형광염색

- ① 형광표식항체는 있는가?
- ② 표식항체의 전처리에 필요한 기자제(원심용 튜브, 비흡착성 멤브레인필터 등)은 있는가?
- ③ 인산완충 식염액은 있는가?
- ④ 커버글래스 및 슬라이드글래스 세척용 락크와 세척용 도-제는 있는가?
- ⑤ 습윤상은 있는가?
- ⑥ 37℃ 인큐베이터는 있는가?
- ⑦ 완충 글리세린액은 있는가?
- ⑧ 봉입용 커버슬립(비형광) 및 양성 컨트롤용 슬라이드글래스(비형광)은 있는가?

### (3) 형광관찰

- ① 형광현미경의 응축 및 축합이 될수있는가?
- ② 대물 및 접안렌즈에 이상은 없는가?
- ③ 형광현미경의 교환 수은램프는 있는가?
- ④ 간섭 필터의 파장은 적절한가?
- ⑤ 간섭 필터의 수명은 괜찮은가?
- ⑥ 사진촬영용 기자제는 가동하는가?

## 2. 혈액검사

### (1) 희석혈액작성

- ① 멜란줄은 있는가?
- ② 혈구계산판은 있는가?
- ③ 희석액(튜르크액)은 있는가?
- ④ 알콜, 에테르 등의 세정액은 있는가?

### (2) 도말작성

- ① 슬라이드글래스, 커버글래스는 있는가?
- ② 염색액 및 염색용 기구는 있는가?

### (3) 현미경관찰

- ① 현미경의 응축 및 축합은 되는가?
- ② 대물 및 대안렌즈에 이상은 없는가?
- ③ 현미경의 교환 전구는 있는가?

## 3. 바이러스 분리검사

### (1) 乳劑작성 등

- ① 유제작성을 위한 기구(가위, 핀셋, 유발 등)은 멸균되어 있는가?
- ② 원심용시험관은 있는가?
- ③ 접종재료 전처리용 필터는 있는가?
- ④ 겐타마이신 등의 항생물질, 판기존 등의 항진균제는 있는가?
- ⑤ 탈선혈작성용 글래스비즈는 있는가?

(2) 배양용 세포

- ① 바이러스 분리용 세포는 계대되어 있는가?
- ② 세포배양용의 배지 및 혈청(BVD-MD Free)는 있는가?
- ③ 커버슬립은 있는가?
- ④ 6홀 플레이트 또는 샤레는 멸균되어 있는가?

(3) 형광재료 작성

- ① 세포고정용 냉아세톤은 있는가?
- ② PBS(+)은 있는가?
- ③ 건조용 드라이어는 있는가?

(4) 형광염색

1의(2)에 준한다.

(5) 형광관찰

1의(3)에 준한다.

4. RT-PCR법

(1) RT-PCR재료 작성

- ① 마이크로피펫, 마이클팁, 마이크로튜브, 고무장갑(모두 RNA취급용)은 있는가?
- ② RNA추출용 시약은 있는가?

(2) RT-PCR

- ① RT-PCR용 시약은 있는가?
- ② 영동용 시약 및 영동용 버퍼는 있는가?
- ③ 영동용 한천은 있는가?
- ④ 겔 염색액은 있는가?
- ⑤ 자외선 관찰장치는 점등하는가?

5. 기타

병성감정 종료후에 있어, 사용한 기구, 기자제 등 및 공시재료의 바이러스 소독, 멸균조치는 확실하게 실시될수있는가?

[별첨3]

縣돼지콜레라방역대책본부 및 돼지콜레라 발생현지방역대책본부 개설 통지

(문예)

돼지 및 멧돼지의 전염병인 돼지콜레라가 ○○○에서 발생하여, 縣에서는 하기에 縣돼지콜레라방역대책본부 및 돼지콜레라 발생현지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돈방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든지 사료를 먹지 않는 등 원기가 없고, 발열, 귀·사지·하복부에 자색반점(치아노제)가 나타나고 있는 돼지, 멧돼지는 질병에 걸렸을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하기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이 질병은 전염이 매우 심하므로, 빨리 신고하여 처치를 하지 않으면 널리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으므로, 발생지역에서의 돼지 및 멧돼지 이외에 돼지콜레라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의 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심쩍은 점이 있으면 縣돼지콜레라방역대책본부 및 돼지콜레라발생현지방역대책본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만일 감염돈의 돈육을 먹었다해도 사람에게에는 감염되는 일이 없습니다.

記

1. 縣돼지콜레라방역대책본부 (○○縣 축산주무과내)

전 화 ○○○○-○○○-○○○○

휴대전화 ○○○○-○○○-○○○○

FAX ○○○○-○○○-○○○○

2. 돼지콜레라발생현지방역대책본부(○○가축보건위생소내)

전 화 ○○○○-○○○-○○○○

휴대전화 ○○○○-○○○-○○○○

FAX ○○○○-○○○-○○○○

야간연락도 상기에서 접수합니다.

[별첨4]

도축장 출하허가서

번 호  
연월일

○○○○ 귀하

○○가축보건위생소  
가축방역원○○○○

귀하께서 소유하는(관리하는) 아래의 가축은, 검사결과,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의 대상외로서, 도축장에의 출하를 허가한다.

아래

1. 가축의 종류
2. 반입두수
3. 도축을 실시하는 장소
4. 기타

[별첨5]

살처분명령서

번 호  
연월일

○○○○ 귀하

도도부현지사 ○○○○

귀하가 소유하는(관리하는) 아래의 가축은, 돼지콜레라의 환축(의사환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가축의 살처분을 명령한다.

아래

1. 가축이 소재하는 장소
2. 가축의 종류 및 두수

비고 : 이 지시에 위반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첨6]

도살지시서

번 호

연월일

○○○○ 귀하

○○가축보건위생소

가축방역원○○○○

귀하가 소유하는(관리하는) 다음의 가축은, 돼지콜레라의 환축(의사 환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에 의해 도살할 것을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한다.

가축이 소제하는 장소

가축의 종류 및 두수

아 래

1. 도살을 실시하는 장소
2. 도살방법
3. 기타

비고

- 1) 이 지시에 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62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2) 이 지시에 위반한 경우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첨7]

(앞면)

가축격리지시서

번호  
연월일

○○○○ 귀하

○○가축보건위생소  
가축방역원○○○○

귀하가 소유하는(관리하는) 아래의 가축은, 돼지콜레라로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통지할때까지 격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한다.

아 래

가축이 소재하는 장소

가축의 종류 및 두수

비고

- 1) 격리의 방법 등은 뒷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2) 이 지시에 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62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3) 이 지시에 위반한 경우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 지시서는 정부 2부 작성하여, 각각에 피지시자의 날인을 하여, 정을 피지시자에게, 부를 소관가축보건위생소장에게 송부한다.

(뒷면)

격리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1. 가축의 반출입은 가축방역원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해서는 안된다.
2. 사료, 깔짚, 가축관리용구 등 병원체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반출해서는 안된다.
3. 가축의 관리자 및 가축방역원 이외의 자는 축사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4. 축사의 출입구는 1개소로 하고, 소독조를 설치하여 축사의 출입시에는 손발, 의류를 소독할 것.



[별지]

## 돼지콜레라 진단매뉴얼

### 1. 항원검출

#### 1. 검사방침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증례의 진단에 있어서는, 신속성 및 검체처리 가능수량을 감안하면, 동결절편의 형광항체염색에 의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항원검출이 가장 좋다. 따라서,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1마리의 돼지에서 채취한 여러장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다수의 돼지에서 각각 편도를 채취하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항원증명에 역점을 둔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형광항체법에 의한 바이러스항원의 검출과 동시에, 세포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분리를 실시한다. 바이러스가 농후감염 되어 있는 경우, 24~48시간후 판정이 가능하게 되지만, 바이러스량이 적을수도 있으므로, 최저 1주간은 관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비부족이 진단을 늦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기구·기자재의 유지 및 확인을 실시하여,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증례의 신고를 받은 시점에서, 냉각용 드라이아이스가 준비되어 있을 것, 크리어스타트의 냉각기 스위치가 넣어져 있을 것, 계대세포가 있을 것 등 신속진단에 필요한 준비가 갖추어지도록 진단체제의 정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 임상검사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증례의 통보가 있는 경우, 우선,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돼지의 임상관찰을 충분히 실시한다. 의심 돼지가 생존

하고 있는 경우는 체온측정,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일견 건강하게 보이는 기타의 돼지에 대하여도, 임상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돼지와 역학적 관련이 있는 돼지를 중심으로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여러마리(30두 이상)의 체온측정·혈액검사 결과, 발열, 또는 백혈구수가 감소(8,000개/mm<sup>3</sup>이하)되어 있는 돼지에 대하여는 임상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돼지와 같이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 3. 시료채취

시료채취에 있어서는, 감정도살 혹은 폐사직후의 돼지에서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부검재료는 생조직재료의 채취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병리조직검사를 위해 포르마린으로 고정하여 보존한다. 생조직재료는 편도(편측 모두), 신장(수질피질을 포함하도록), 비장(일부)로 하고, 바이러스 분리용 유체제작에 이용할 뿐 아니라 동결절편제작에도 이용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고려한 시료채취가 필요하다. 채취한 재료는 개체별로 멸균 6홀 플레이트 등에 넣고, 비닐테이프로 뚜껑을 고정·밀폐한다. 다시 비닐봉투에 넣어, 냉장(얼음냉장)하여 검사실로 운반한다. 생조직재료나 혈액에는 다량의 바이러스가 함유되고, 또, 해부·시료채취 기구는 고역가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취급시 충분히 주의한다.

또,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돼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응고제(헤파린 혹은 EDTA)를 이용하여 채혈하여, 혈액검사 및 바이러스 분리재료로 이용한다.

### 4. 동결절편과 유체의 제작

동결절편 작성용 재료는 동결음해하는 일 없이, 신선한 재료를 이용하도록 신경을 쓴다. 각각의 조각시에는, 소독액을 적신 헝겊을 까는 등,

바이러스의 비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1) 생조직재료의 처리

- ① 동결절편 작성용 재료는 1cm×5mm(편도) 혹은 1cm사각(신장, 비장) 정도로 각 3개 끈어낸다.
- ② 나머지조직 1g 정도를 유제제작용 샤프에 취하고 무게를 달아(稱量)둔다. 유제제작까지, 얼음냉장하에 보존한다.
- ③ 여과지에 돼지번호·표본명을 기입한다.
- ④ 동결절편제작용의 조직을 절단면을 위로하여 각각 여과지 위에 놓는다. 이때, 편도는 陰窩의 횡단면이, 신장은 뇨세관상피가 절단면에 출현하도록 주의한다.
- ⑤ 조직편이 놓인 여과지를 핀셋으로 잡고, 드라이아이스·아세톤으로 냉각한 n-헥산(-80℃정도)에 침적하여 급속동결한다. 침적을 많이하면 조직편이 갈라지므로 주의한다.
- ⑥ 동결하면 재빨리 동결절편기내로 이동하던가, 耐冷튜브에 넣어, -80℃의 Deep Freezer에 보존한다.

(2) 동결절편표본의 제작

- ① (1)-⑥에서 동결조직을 耐冷튜브에 넣은 경우는 동결절편기내에서, 耐冷튜브로부터 꺼낸다.
- ② 조직편을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검체대에 붙인다.
- ③ 6 $\mu$ m의 절편을 제작한다.
- ④ 시란코드 처리를 한 슬라이드글라스에 절편을 취한다.
- ⑤ 즉시 드라이어 냉풍으로 건조한다.
- ⑥ 냉아세톤으로 10분간, 고정한다.
- ⑦ 바람에 건조시켜 슬라이드글라스 표본으로 한다.

(3) 바이러스분리를 위한 유제의 제작

- ① (1)-②의 조직편을 유발에 넣는다.

- ② 유발내에서 조직편을 가위로 세절한다.
- ③ 멸균된 규사를 적량 가하여 유봉으로 세절편을 가볍게 문질러 으갠다.
- ④ 稱量한 조직편이 10%로 되도록 배양액을 넣고, 잘 유화시킨다.  
(예를들면 조직편이 1g인때는 9g의 배양액을 가한다.)
- ⑤ 유화한 조직편을 원심관에 옮긴다.
- ⑥ 3000r.p.m., 15분간 냉각원심을 실시한다.
- ⑦ 상청을 소시험관에 옮겨서 10% 유제로 한다.

## 5. 바이러스분리

유리커버슬라이드표본을 제작하기 위해, 유리커버슬라이드에 세포를 단층배양한 후 유제를 접종하고, 세포의 배양에 이용하는 牛胎仔혈청 (Fetal Calf Serum)은 BVD바이러스 항체음성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바이러스와 항체가 공존하는 증례에서는 유제로부터의 바이러스분리가 음성으로 될 경우도 있으므로, 유제를 희석하여 접종한다. 유제를 접종후, 세포가 배양된 커버슬라이드를 날짜별(經日的)로 취하여, 냉아세톤으로 고정하여, 형광항체법에 의해 세포질내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한다. 또한, 유제중의 바이러스량이 적을 경우도 있으므로, 최소한 1주일간은 관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에는 배양개시후 4일째에 배양상층액을 계대한다.

각각의 조작시에는, 소독액을 적신 헝겊을 까는 등, 바이러스 비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1) 배양세포의 계대

- ① 바이러스분리에는 CPK세포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면적비에서 3배로 계대한다.

- ② 6홀 플레이트의 각 홀에 유리커버슬라이드(6×18mm)를 4매씩 겹치지 않도록 넣는다.
- ③ 세포부유액 3ml를 각 홀에 넣는다. 이때, 커버슬립이 부유하여, 겹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④ 37℃에서 1일밤 배양한다.
- ⑤ 익일, 단층세포가 형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사용한다.

## (2) 유제접종과 유리커버슬라이드 표본의 제작

- ① 최소한 편도유제에 대하여는, 0.45 $\mu$ m 필터로 여과한다. 이때 미리 글래스필터로 여과하여 필터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 ② 유제나 혈액의 희석제(유제는 10배 및 100배 유제, 혈액은 원액을 그대로 사용)을 제작하여, (1)-⑤의 세포에 0.5ml 접종한다. (접종재료는 검사종료시까지 보존한다)
- ③ 바이러스를 접종한 용기를 1시간이상(2시간이 이상적임) 상하로 반복적으로 기울여 잘 흡착시킨 후, 세포면을 세척한다.
- ④ 배양액을 첨가하여, 37℃에서 배양한다.
- ⑤ 날짜별(經日的)로 유리커버슬라이드를 꺼내어, PSB로 세척한 후, 냉아세톤으로 10분간 고정한다.
- ⑥ 바람에 건조하여 유리커버슬라이드 표본으로 한다.

## 6. 형광항체염색(바이러스항원의 검출)

3-(2)-⑧의 슬라이드글라스 표본 및 4-(2)-⑥의 유리커버슬라이드표본의 형광염색에는, 시판되는 돼지콜레라 진단용형광항체를 이용한다. 편도의 동결절편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항원양성의 경우, 陰窩상피세포의 세포질내에 특이형광이 인정되고, 양성세포가 帶狀으로 나란히 관찰된다. 형광을 나타내는 단일세포가 산재성으로 관찰되는 수가 있지

만, 이들은 비특이반응이므로, 진단에 있어서는 陰窩의 상피세포를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유리커버슬라이드 표본에 있어서는 세포질내에 특이형광이 관찰되면 바이러스 양성이며, 바이러스 감염세포는 배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巢狀으로 증가하고, 포커스를 형성한다. 검사결과의 판정은 이 포커스 형성시기가 제일 용이함으로 날짜별(經日的)인 관찰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형광항체염색법의 상세에 대하여는 돼지콜레라 형광항체액에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할 것

## 7. 기타

生조직재료, 3-(2)-⑧의 슬라이드글라스 표본, 3-(3)-⑦의 10% 유제 및 4-(2)-⑥의 유리커버슬라이드표본은 밀폐용기에 넣어 -80℃에서 보존한다.

검사에 사용한 모든 기구(가위, 핀셋, 샤레, 피펫, 유발, 클리어스타트 등)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고압멸균을 실시하는 등 취급에 충분히 주의한다.

## II. 항체검사

### 1. 검사지침

백신중지후의 돼지콜레라바이러스 야외감염의 유무를 감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Live vaccine으로 접종된 돼지는, 평생 항돼지콜레라 항체를 계속 보유한다. 따라서, 야외에서는 백신접종돈이 모두 갱신될때까지, 백신 항체 보유돈이 계속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백신에 의한 항체와 야외감염에 의한 항체의 식별은 곤란하기 때문에, 항체검사결과는 백신

접종력, 도입이력, 이행항체의 존재 등을 충분히 고려한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 야외바이러스 감염의 경우, 수평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의 확산은 용이하게 일어나므로, 항체양성돈과 역학적관련이 있는 돼지의 항체검사시, 전체돈군의 항체검사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체검사 결과에서 야외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신속하게 감정도살을 실시하여, 돼지콜레라 확정진단(항원검출)을 실시한다.

## 2. 피검혈청의 조정

돼지콜레라 감염돈에 있어서는, 육안적으로 건강한 것 같은 감염초기(잠복기)부터 혈액중에 바이러스가 다량 존재하므로, 채혈에 있어서는 평소부터 1두 1침을 확실하게 지켜, 바이러스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한다. 채혈한 혈액으로부터는 신속하게 혈청을 분리하여, 비동화(56℃, 30분 가열처리)를 확실하게 실시한다. 혈청을 보존하는 경우는 -20℃ 이하에서 동결하여 실시한다. 또한, 피검혈청의 분리에 이용한 모든 기구는, 평소 적절한 멸균·소독을 실시할 것

## 3. 無혈청배양세포의 배양

돼지콜레라의 항체검사에는 무혈청배양액(별표)에서 증식가능한 돼지신장 유래 주화세포(CPK-NS세포)를 이용한다. 배양에는 사용하지 않은 플라스틱 배양플라스크를 사용한다. 본세포는 단층형성후에 작은 덩이를 형성한다. 세포 상태의 좋고 나쁜 지표로서 이 덩이의 형성을 이용할 수 있다. 세포는 7일마다 면적비로서 3배로 계대가능하다.(계대시의 生세포수 : 약 $5 \times 10^5$ 개/ml). 그러나, 덩이 형성되지 않으며, 부유된 죽은 세포가 대단히 많은 등, 세포의 상태가 좋지않을 경우에는 면적비로 2배로 계대하던가, 배지를 교환하여, 2일후(전회의 계대로부터 9일째)에 계대하면 좋다.

- ① 배지를 제거하고 세포면을 PBS로 1회 세척한다.
- ② 트립신을 이용하여 충분히 세포를 소화한다. 세포의 소화에는 37℃에서 15~30분정도의 시간을 요한다. 소화된 세포에 배지를 가하여, 잘 피펫팅하여 세포를 잘 분산시킨다.
- ③ 세포를 원심관에 회수하여, 원심(800rpm, 5분)한다. 원심후, 배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배지를 가하여 세포를 재분산시킨다.
- ④ 다시 원심(800rpm, 5분)하여, 상층액을 제거한다.
- ⑤ 적당량의 배지에 재부유시켜, 새로운 플라스틱병에 세포를 분주한다.

계대된 세포는 24시간후에는 단층의 시트를 형성한다. 이 때 세포가 전면이 퍼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대시의 세포수가 적다고 생각되므로 다음회의 계대에서는 보다 세포수를 많이 계대한다. 돔은 계대 3일째경부터 관찰되고, 그 수는 배양일수에 따라 증가한다. 계대후, 배지는 3일마다 교환한다.

세포를 동결보존은, 계대후 5~7일째의 세포를 사용한다. 트립신 소화된 CPK-NS세포는, 2회의 원심세척조작 후, 적당량의 세포보존액에 재부유시켜, 동결보존한다. 동결하는 세포수는 일반의 세포보다 많이 보존하도록 한다. 동결용 튜브에는 통상 사용하고 있는 배양용 플라스크 1개분의 세포를 보존하고, 세포배양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양용 플라스크 1개에, 용해한 세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넣을 때에 세포수가 부족하면, 이후의 세포상태가 좋지 않은 수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 4. 중화항체 검사용 지시 바이러스의 조정

항체검사의 지시 바이러스로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백신주(GPE<sup>-</sup>주)를 이용한다. 바이러스는 중화항체 검사전에 CPK-NS세포에서



증식후, 바이러스역가를 측정해둘 필요가 있다. 사용하는 바이러스는 백신주이지만, 취급에 있어서는 오염방지에 충분히 주의할 것

### (1) 바이러스액의 조정법

- ① 세포계대후 3~5일의 세포에, 희석한 바이러스액( $10^4$ TCID<sub>50</sub>/ml 이상)을 접종한다. 접종후, 배양플라스크를 상하로 기울이는 조작을 30분마다 실시해 가면서 2시간 흡착시킨다.
- ② 바이러스액을 제거한 후, 무혈청배양액에 5% 혈청을 첨가한 배지를 통상의 세포배양시와 동량 가하여, 37°C에서 배양한다. 첨가하는 혈청은 BVD바이러스 항체음성의 소 유래혈청을 이용하지만, 입수곤란한 경우에는 말 혈청으로도 대응가능하다. 혈청을 가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회수량이 1/1000정도로 감소하므로 주의할 것. 또한 무혈청배양액에 혈청을 첨가한 배지는 이작업으로만 사용하고, 기타의 모든 바이러스 검사는 무혈청으로 실시한다.
- ③ 배양후 3~4일째에 바이러스액을 회수한다. 회수전에 현미경으로 바이러스 증식에 의한 세포변성효과(CPE)를 확인할 것. 배양플라스크는 1회 초저온조를 이용하여 급속동결하고, 용해후 원심하여 배양상층액을 -80°C에 분주보존한다. 바이러스액은 동결용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소량씩 튜브에 분주할 것

### (2) 바이러스역가의 측정방법

- ① CPK-NS세포를 트립신 소화하여, 2회의 원심세척조작을 실시하고, 트립신을 제거한다. 세포는 통상 계대할때와 동량의 무혈청배지에 재부유시킨다.
- ② 측정한 바이러스액을 무혈청배지에서 10배 단계희석한다.
- ③ 96홀 마이크로플레이트에 희석한 바이러스액을 50 $\mu$ l씩 분주한다.
- ④ ①에서 조정한 세포부유액을 100 $\mu$ l씩 분주하고, CO<sub>2</sub> 인큐베이터에서 7일간 배양한다.
- ⑤ 세포 표층에 관찰되는 CPE를 지표로, 바이러스역가(TCID<sub>50</sub>)를

구한다.

## 5. 중화항체 측정방법

항체의 유무의 지표에는, CPK-NS세포에 있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GPE 주의 CPE를 이용한다.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는, 피검혈청 및 바이러스액을 양쪽 모두 가하지 않은(대신 등량의 배지를 가한다.) 세포대조군을 준비하고, 세포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것. 또, 사용한 희석바이러스액( $2000_{TCID_{50}}/25\mu l$ 로 조정)의 역가검사도 실시할 것

- ① CPK-NS세포를 트립신 소화하여, 2회의 원심세척조작을 실시하고, 트립신을 제거한다. 세포는 통상 계대할 때와 동량의 배양액에 재부유시킨다.
- ②  $25\mu l$ 의 비동화를 마친 피검혈청을 무혈청배양액으로 2배 단계희석한다. 희석은 배양용 96홀 마이크로플레이트에서 직접 실시한다.
- ③ 96홀 마이크로플레이트에  $200_{TCID_{50}}/25\mu l$ 에 희석한 바이러스액을  $25\mu l$ 씩 분주한다.
- ④ 플레이트를 각반후,  $CO_2$  인큐베이터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 ⑤ ①에서 조정한 세포부유액을  $100\mu l$ 씩 분주하여,  $CO_2$ 인큐베이터에서 7일간 배양한다
- ⑥ 세포표층에 인정되는 CPE를 지표로 중화항체가를 구한다.

## 6. 기타

### (1) 항체측정시의 혈청희석배율에 대하여

백신접종중지후, 백신 미접종돼지로부터는 야외바이러스의 감염이 없는 한, 이행항체 이외의 어떠한 항체도 검출되는 일은 없다. 결국,

항체검사는 개개의 항체가의 수치보다도, 항체의 유무를 군으로서 평가하여, 야외감염의 유무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서베일런스검사에 있어 피검혈청의 희석은, 2배에서 16배까지 4개의 희석에의 결과를 취합하는 것으로 한다.(96홀 배양용 플레이트의 배치열은 별도 그림참조). 즉, 항체가는 2배미만, • 2배 • 4배 • 8배 • 16배이상의 5단계로만 구분한다. 단, 이행항체인지 여부의 판정 등, 항체양성의 최종희석배율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대로 혈청을 희석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2) 이행항체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중지후에도, 이전에 백신의 접종력이 있는 돼지로부터는 평생 항체가 검출된다. 결국 백신을 접종한 번식모돈에서 생산된 자돈은 일정기간, 모돈 유래의 이행항체를 보유하게 된다. 자돈은 출생시에 모돈과 동등의 항체를 보유하지만, 항체가는 생후 일령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저하되어 간다. 항체가의 반감기는 약 2주간이고, 최종적으로 항체가는 검출한계 이하(2배 미만)으로 된다. 백신접종중지후의 항체검사에 있어서는, 도축장 반입전후의 백신미접종돈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상 이들 돼지는 항체음성(2배 미만)으로 된다. 단, 생후 3개월 정도까지의 돼지를 대상으로 하여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건강한 돼지에서도 이행항체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1개월후에 재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당해농장의 번식모돈의 백신접종력의 확인과 임상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별표]

### 무혈청배양액의 제작

① Eagle MEM① (日水제약)	-----	9.40 g
② Tryptose Phosphate Broth (Difco)	-----	2.95 g
③ BES [N,N-Bis(2-hydroxyethyl)-2-aminoethanesulfonic acid](和光순약)	-----	2.13 g
④ Bacto Peptone (Difco)	-----	5.00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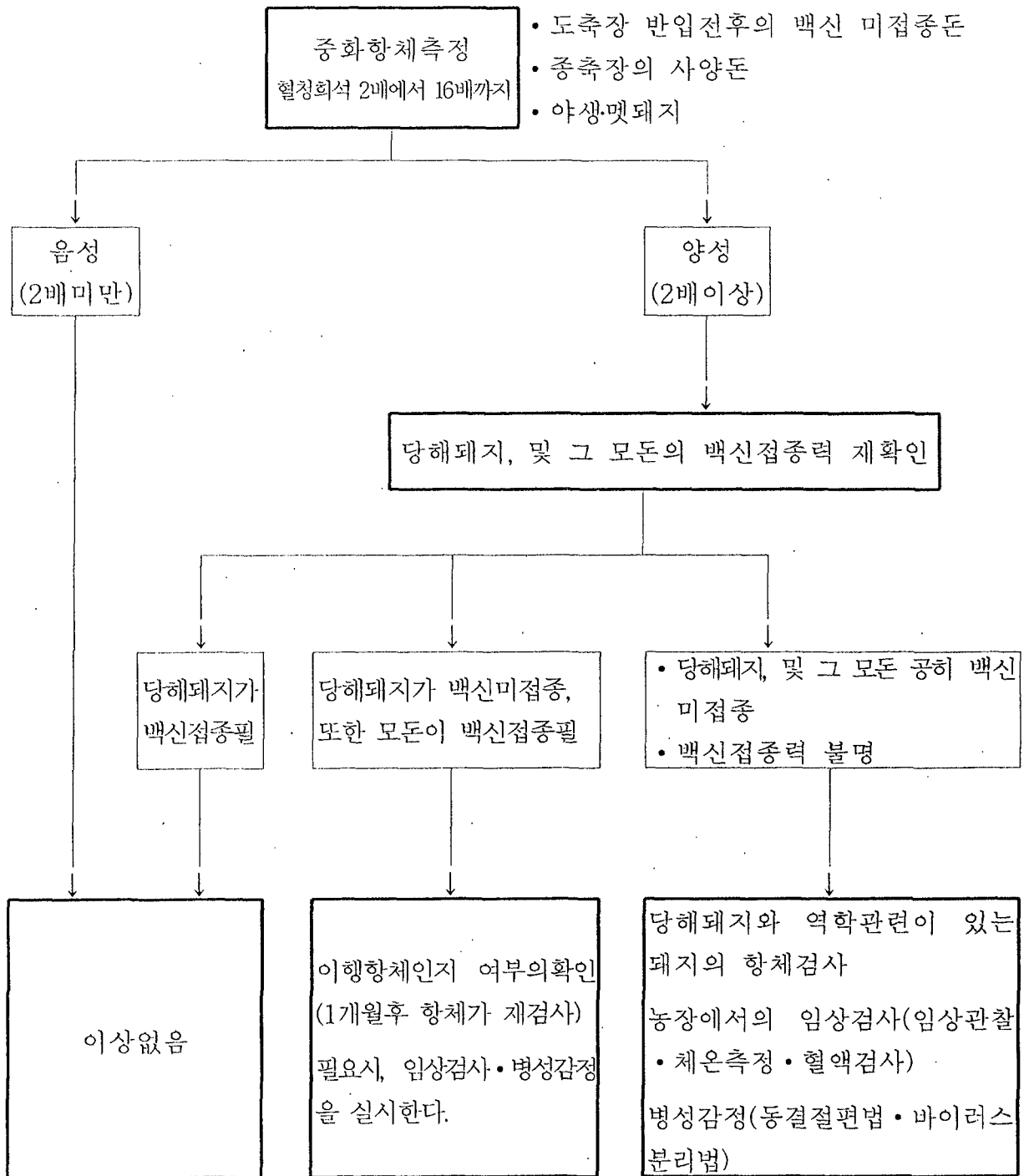
재증류수(MilliQ수)에서 1리터에 ①부터 ④의 순으로 용해하여, 30분 이상 각반하여 용해한 후, Autoclave(121℃, 15분)에서 멸균한다.

실온까지 냉각후

3% L-goutamine 수용액 (여과멸균)	-----	10 ml/리터
7.5% 탄산수소나트륨수용액(Autoclave)	-----	30 ml/리터

를 가하여 냉장보존한다.

□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항체검사에 관한 Flow Chart



\* 병성감정 실시는 병성감정 매뉴얼을 참조할 것

[별도 그림]

96홀 배양용 플레이트 배열예

1. 1매째 플레이트 (피검혈청은 16검체 : S1 ~ S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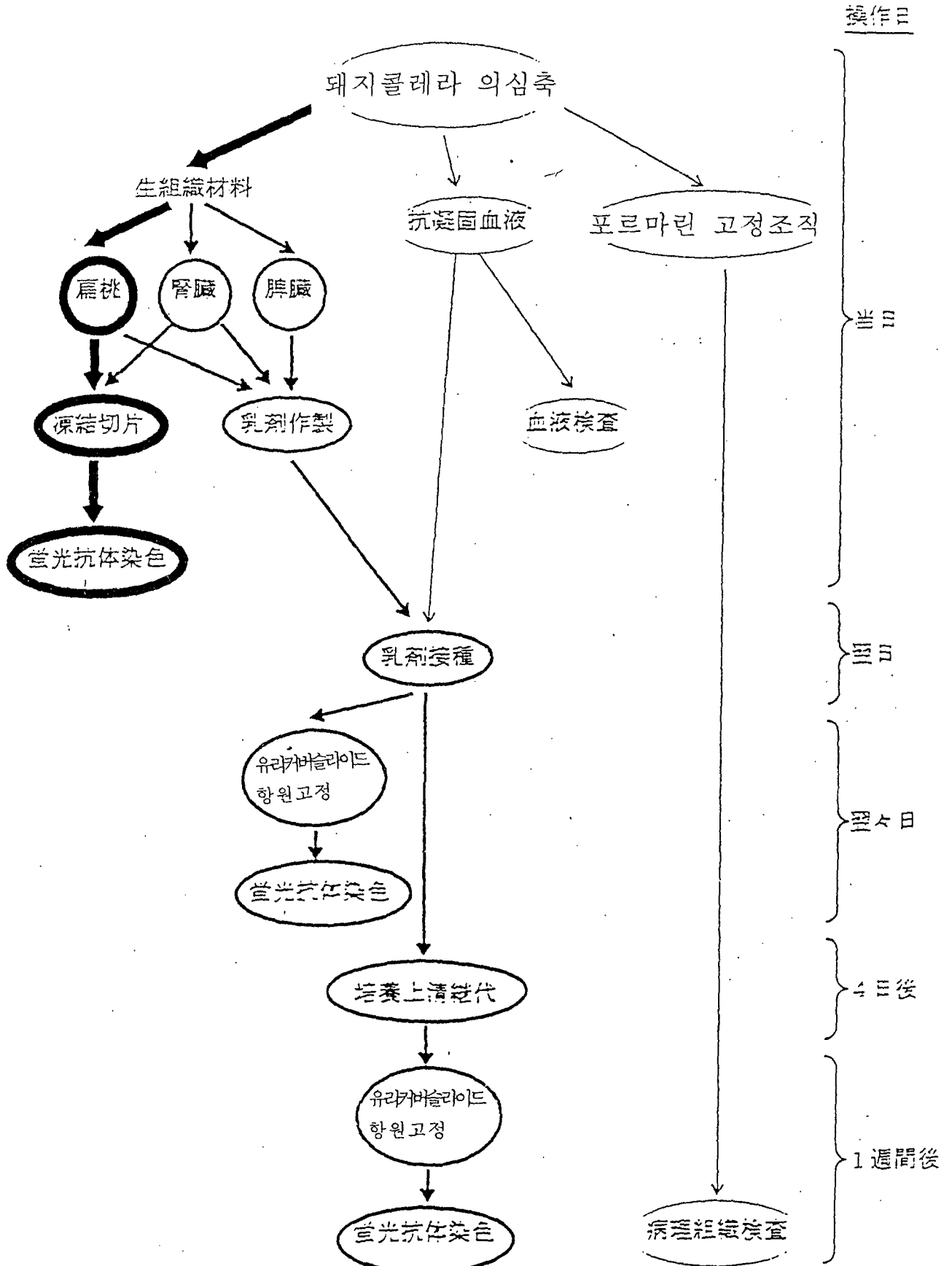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S1×2	S1×4	S1×8	S1×16	S9×2	S9×4	S9×8	S9×16				
B	S2×2	S2×4	S2×8	S2×16	S10×2	S10×4	S10×8	S10×16	세포만(지시바이러스, 혈청없음)			
C	S3×2	S3×4	S3×8	S3×16	S11×2	S11×4	S11×8	S11×16	의 컨트롤			
D	S4×2	S4×4	S4×8	S4×16	S12×2	S12×4	S12×8	S12×16				
E	S5×2	S5×4	S5×8	S5×16	S13×2	S13×4	S13×8	S13×16				
F	S6×2	S6×4	S6×8	S6×16	S14×2	S14×4	S14×8	S14×16	지시바이러스의			
G	S7×2	S7×4	S7×8	S7×16	S15×2	S15×4	S15×8	S15×16	Back 타이틀레이션			
H	S8×2	S8×4	S8×8	S8×16	S16×2	S16×4	S16×8	S16×16				

2. 2매째 이후의 플레이트 (피검혈청은 24검체 : S17 ~ S40)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S17×2	S17×4	S17×8	S17×16	S25×2	S25×4	S25×8	S25×16	S33×2	S33×4	S33×8	S33×16
B	S18×2	S18×4	S18×8	S18×16	S26×2	S26×4	S26×8	S26×16	S34×2	S34×4	S34×8	S34×16
C	S19×2	S19×4	S19×8	S19×16	S27×2	S27×4	S27×8	S27×16	S35×2	S35×4	S35×8	S35×16
D	S20×2	S20×4	S20×8	S20×16	S28×2	S28×4	S28×8	S28×16	S36×2	S36×4	S36×8	S36×16
E	S21×2	S21×4	S21×8	S21×16	S29×2	S29×4	S29×8	S29×16	S37×2	S37×4	S37×8	S37×16
F	S22×2	S22×4	S22×8	S22×16	S30×2	S30×4	S30×8	S30×16	S38×2	S38×4	S38×8	S38×16
G	S23×2	S23×4	S23×8	S23×16	S31×2	S31×4	S31×8	S31×16	S39×2	S39×4	S39×8	S39×16
H	S24×2	S24×4	S24×8	S24×16	S32×2	S32×4	S32×8	S32×16	S40×2	S40×4	S40×8	S40×16

□ 돼지콜레라 진단을 위한 검사 Flow Chart

(선이 두꺼울수록 중요도가 높으므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



##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중 양돈위생관리 지원사업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1. 돼지콜레라 방역에 대하여는, 10월1일 이후 원칙적으로 전국적인 돼지 콜레라 예방약의 접종을 중지한 점에서, 동 예방약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사용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동물용생물학적제제로서 지정위한 규칙의 일부개정을 실시한바 있다.

2. 또,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접종중지에 따라서,

- (1) 예방약의 접종 기회를 활용하여 실시해온 수의사에 의한 농장의 감시체제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
- (2) 돈단독 예방약의 접종율이 저하하여, 공중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점(돼지콜레라 예방약의 접종중 대부분이 인수공통감염증인 돈단독 예방약과의 혼합예방약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에서, 수의사의 위생관리지도수준의 향상과 돈단독 예방약의 접종에 요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성하기 위한 양돈위생관리지원사업을 2000년도 부터 실시하고 있는바다.

3. 양돈위생관리지원사업은,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접종중지에 따른 사업인 점에서, 이제까지 접종중지지역(도도부현지사가 도도부현단위로 지역을 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해온바 있지만, 10월1일 이후 반드시 지역단위에서의 중지가 아닌 농장단위에서의 중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에 의해 접종을 실시하는 농장, 실시하지 않는 농장)으로 된다.

4. 따라서,

- (1) 예방약 접종중지의 대처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점에서, 수의사의



위생관리지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한다.

- (2) 돈단독 예방약 접종에 요하는 경비에 대한 조성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의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농장에서 사양되고 있는 돼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는 내용의 사업실시요령의 일부개정을 실시한다.

- \* 기타, 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가축방역호조사업의 요건중 교부기준의 문서정리도 아울러 실시한다.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12축A제2763호 2000년10월1일

수신 : 도도부현지사

발신 :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이에 대하여,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98년7월3일자 10축A제1422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의 일부를 별지 신규대조표와 같이 개정하였으니, 양지하시고, 본사업의 적절하고 원활한 실시에 대해 배려하시기 바랍.

[별지]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 신규대조표

개 정 후	현 행
제1~제2 (생략) 제3 사업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全國衛指協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 금에 충당하기 위해 家畜防疫 互助基 金(이하 「호조기금」 이라 한다)을 조 성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략) 2. 가축방역호조사업 全國衛指協은, 돼지콜레라 互助金 교부 계약(이하 「교부계약」 이라 한다)을 縣 衛指協 등과 체결한 교부대상 돼지의 생산자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발생시 의 양돈경영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 해,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00년10 월1일자 12축A제2762호 농림수산성	제1~제2 (생략) 제3 사업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全國衛指協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 금에 충당하기 위해 家畜防疫 互助基 金(이하 「호조기금」 이라 한다)을 조 성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략) 2. 가축방역호조사업 全國衛指協은, 돼지콜레라 互助金 교부 계약(이하 「교부계약」 이라 한다)을 縣 衛指協 등과 체결한 교부대상 돼지의 생산자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발생시 의 양돈경영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 해,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96년5월 10일자 8축A제1243호 농림수산성 축

개정 후	현행
<p>축산국장 통지. 이하 「대책요령」 이라 한다)에 의해, 대책요령의 4의(4)의 '바'의 살처분 등 또는 대책요령 4의(4)의 '아'의 가축방역원 등의 지도에 의해 돼지의 도태 등을 실시한 경우, 縣衛指協 등을 통하여 당해 교부계약에 관한 互助金を 교부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造成하는 것으로 한다.</p>	<p>산국장 통지. 이하 「대책요령」 이라 한다)에 의해, 대책요령의 2의(1)의 '라'의(나)의 b 혹은 (2)의 '나'의 살처분 등 또는 대책요령 2의(1)의 '라'의(나)의 f 혹은 (2)의 '나'의(다)의 가축방역원 등의 지도에 의해 돼지의 도태 등을 실시한 경우, 縣衛指協 등을 통하여 당해 교부계약에 관한 互助金を 교부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造成하는 것으로 한다.</p>
<p>3. (생략)</p>	<p>3. (생략)</p>
<p>4. 양돈위생관리지원사업 전국위지협은, 縣위지협 등이 양돈위생관리지도체제의 정비를 위해, 연수회의 개최에 의한 수의사의 위생관리지도수준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돈단독 백신의 접종(가축전염병예방법('52년 법률 제166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돼지 콜레라 예방약 사용에 관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있는 농장에서 사양되는 돼지에 대한 돈단독 백신의 접종을 제외한다.)를 실시하는데 요하는 경비에 대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p>	<p>4. 양돈위생관리지원사업 전국위지협은, 縣위지협 등이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중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양돈위생관리지도체제의 정비를 위해, 연수회의 개최에 의한 수의사의 위생관리지도수준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돈단독 백신의 접종을 실시하는데 요하는 경비에 대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p>
<p>5. (생략)</p>	<p>5. (생략)</p>
<p>제4 (생략)</p>	<p>제4 (생략)</p>
<p>제5 사업의 실시 1·2 (생략)</p>	<p>제5 사업의 실시 1·2 (생략)</p>

개정 후	현행
<p>3. 가축방역 호조사업의 요건</p> <p>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제3의2의 가축방역 호조사업(이하 「호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全國衛指協 및 당해 縣衛指協 등의 업무 方法書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4)교부기준</p> <p>제3의2의 호조금 교부는, 대책요령의 4의(4)의 '바'의 살처분 또는 대책요령의 4의(4)의 '아'의 규정에 의해 폐지의 도태 등의 방역조치가 실시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p> <p>(5)교부 대상 폐지</p> <p>제3의2의 호조금의 교부대상 폐지는, 다음에 열거하는 폐지일 것</p> <p>가.이동제한구역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가축 등의 이동 등을 실시하는 구역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법 제18조의 신고에 관한 가축에 대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라 도살된 번식용 종돈 또는 비육돈 및 가축방역원 등의 지도에 의해 도태된 번식용 종돈 또는 비육돈(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금 교부대상으로 된 것을 제외)</p>	<p>3. 가축방역 호조사업의 요건</p> <p>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제3의2의 가축방역 호조사업(이하 「호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全國衛指協 및 당해 縣衛指協 등의 업무 方法書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4)교부기준</p> <p>제3의2의 호조금 교부는, 대책요령의 2의(1)의 '라'의(나)의b 혹은(2)의'나'의 살처분 또는 대책요령의 2의(1)의'라'의f 혹은 (2)의'나'의(다)의 규정에 의해 폐지의 도태 등의 방역조치가 실시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p> <p>(5)교부 대상 폐지</p> <p>제3의2의 호조금의 교부대상 폐지는, 다음에 열거하는 폐지일 것</p> <p>가.이동제한구역내(가축전염병예방법('51년 법률 제16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가축 등의 이동 등을 실시하는 구역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법 제18조의 신고에 관한 가축에 대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라 도살된 번식용 종돈 또는 비육돈 및 가축방역원 등의 지도에 의해 도태된 번식용 종돈 또는 비육돈(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금 교부대상으로 된 것을 제외)</p>

개정 후	현행
<p>나.이동제한구역내에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살처분된 번식용 종돈 또는 비육돈, 법 제18조의 신고에 관한 가축에 대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라 도살된 번식용종돈 또는 비육돈 및 가축방역원 등의 지도에 의해 도태된 번식용종돈 또는 비육돈을 사양하고 있는 농장에서 새로이 도입된 돼지. 단, 축산진흥종합대책사업실시요강('00년4월1일자 12축A제2388호 농림수산사무차관 依命通知)의 별표 제1의 事業種類欄의 4의 사업내용란의 1의 가축개량증식대책사업, 양돈등 체질강화 특별대책사업 실시요령('83년4월1일자 58축A제2388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의 양돈진흥체제정비종합대책사업 및 지역양돈진흥 특별대책사업실시요령('96년5월21일자 8축A제1305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의 지역 양돈진흥특별 사업대책에 의해 도입된 돼지 및 농업개량자금조성법('56년 법률 제102호)에 의해 축산진흥자금을 빌려 구입한 돼지는 제외</p> <p>(6)~(7) (생략)</p> <p>4·5 (생략)</p> <p>제6 ~ 제8 (생략)</p>	<p>나.이동제한구역내에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살처분된 번식용 종돈 또는 비육돈, 법 제18조의 신고에 관한 가축에 대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라 도살된 번식용종돈 또는 비육돈 및 가축방역원 등의 지도에 의해 도태된 번식용종돈 또는 비육돈을 사양하고 있는 농장에서 새로이 도입된 돼지. 단, 축산개발종합대책사업실시요령('95년4월1일자 7축B제371호 농림수산사무차관 依命通知)의 별표 제1의 事業種類欄의 8의 가축개량증식대책사업의 사업내용란의 3의 돼지개량증식대책사업, 양돈등 체질강화 특별대책사업 실시요령('83년4월1일자 58축A제2388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의 고품질 돈육 생산 진흥대책사업 및 지역양돈진흥 특별대책사업실시요령('96년5월21일자 8축A제1305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의 지역 양돈진흥특별 사업대책에 의해 도입된 돼지 및 농업개량자금조성법('56년 법률 제102호)에 의해 축산진흥자금을 빌려 구입한 돼지는 제외</p> <p>(6)~(7) (생략)</p> <p>4·5 (생략)</p> <p>제6 ~ 제8 (생략)</p>

## 가축방역 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

'98년 7월 3일 10畜A제1422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  
개정 '99년 5월 7일 11畜A제 789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  
개정 '99년 9월29일 11畜A제2324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

### 제1 취지

돼지콜레라 발생은, 양돈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본은 '96년부터 官民일체가 되어 돼지콜레라 박멸에 착수하여,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여, 야외바이러스의 一掃를 도모해온바 있다.

그러나, 백신접종은, 많은 자금과 노력을 필요로 함으로, 돼지고기 생산 코스트 절감을 도모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93년 이후 돼지콜레라의 발생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부터, 금후의 양돈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 대신에 새로운 돼지콜레라 박멸대책이 긴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우, 사양하는 돼지(멧돼지 포함. 이하 같다)의 도태에 따르는 손실을 생산자 등이 互助補償하는 대책을 지원하고, 가축방역대책 등의 실시 기반 강화 등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하여, 農畜産業振興事業団(이하 「사업단」이라 함)이 造成하여, 일본 축산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 제 2 사업실시 주체

이 사업의 실시주체는 사단법인 전국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회(이하 「全國衛指協」이라 한다)로 한다.

### 제3 사업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全國衛指協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家畜防疫 互助基金(이하 「호조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다.

#### 1. 家畜防疫互助推進事業

全國衛指協은, 2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1) 全國衛指協은, 中央推進會議의 개최, 사업추진을 위한 팜플렛 작성, (사)都道府縣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회(당해 협회가 아닌 都道府縣에 있어서는, 농축산진흥사업단 理事長(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하 「縣衛指協 等」 이라 한다), 관계단체 등에 대한 사업의 보급, 지도, 연락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2) 全國衛指協은 縣衛指協 등이 地方推進會議의 개최, 생산자, 관계단체 등에 대한 사업의 보급, 지도, 연락조정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造成하는 것으로 한다.

#### 2. 가축방역호조사업

全國衛指協은, 돼지콜레라 호조금 교부계약(이하 「교부계약」 이라 한다)을 縣衛指協 등과 체결한 교부대상 돼지의 생산자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발생시의 양돈경영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00년10월1일자 12축A제2762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 이하 「대책요령」 이라 한다)에 의해, 대책요령의 4의(4)의 '바'의 살처

분 등 또는 대책요령 4의(4)의‘아’의 가축방역원 등의 지도에 의해 돼지의 도태 등을 실시한 경우, 縣衛指協 등을 통하여 당해 교부계약에 관한 互助金を 교부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造成하는 것으로 한다.

### 3. 縣衛指協 등 운영기반강화 사업

全國衛指協은, 縣衛指協 등이 가축방역대책에 관한 縣衛指協 등의 관리운영 등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운영기반강화기금(이하 「縣 基金」이라 한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 4. 양돈위생관리지원사업

전국위지협은, 縣위지협 등이 양돈위생관리지도체제의 정비를 위해, 연수회의 개최에 의한 수의사의 위생관리지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돈단독 백신의 접종(가축전염병예방법('52년 법률 제16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예방약 사용에 관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있는 농장에서 사양되는 돼지에 대한 돈단독 백신의 접종을 제외한다.)를 실시하는데 요하는 경비에 대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제4 호조기금, 縣 基金의 造成 및 관리운용

1. 全國衛指協은, 사업단으로부터의 조성 및 생산자 적립금(생산자 적립금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 생산자 이외의 者로부터 조성 또는 기부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호조기금을 만드는



것으로하고, 그 운용에 의해 생긴 果實은 본 기금에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

縣衛指協은, 全國衛指協으로부터의 조성 및 기타 자금을 가지고 제3의 3의 縣 基金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그 운용에 의해 생긴 果實은 본 기금에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

2. 全國衛指協 및 縣衛指協 등은, 호조기금 및 縣 基金을 다른 勘定(예산)과 구분하여 經理하는 것으로 한다.
3. 全國衛指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호조기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1) 제3에 규정하는 사업에 요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 (2) 호조기금의 운용에 의해 생긴 果實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4. 縣衛指協 등은, 縣 基金의 운용에 의해 생긴 果實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가축방역대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縣 基金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5. 全國衛指協은, 사업실시기간 종료후, 호조기금에 잔액이 생긴 경우 및 사업실시기간 중이더라도, 호조기금에 잔액이 생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사장으로부터 반환의 지시가 있는 경우, 호조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사업단이 조성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단에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6. 全國衛指協은, 사업실시기간 종료후, 호조기금에 잔액이 생긴 경우, 호조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제5의3의(2)의 사업참가자가 납부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참가자가 제5의3의

(6)의‘가’의 규정에 의해 납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縣衛指協 등을 통하여 사업참가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7. 縣衛指協 등은, 가축방역대책에 관한 업무를 종료한 경우 및 당해 사업실시기간 중이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사장으로부터 반환의 지시가 있는 경우, 縣 基金을 조성함에 있어 全國衛指協이 조성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全國衛指協을 경유하여 사업단에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 제5 사업 실시

### 1. 사업실시계획의 작성

縣衛指協 등은,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매년도, 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都道府縣부縣衛指協지사와 협의한 후, 全國衛指協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全國衛指協은,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취합한 후, 스스로의 사업실시계획과 함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 2. 사업의 위탁

全國衛指協 및 縣衛指協 등은 이사업의 일부를 이사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3. 가축방역 호조사업의 요건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제3의2의 가축방역 호조사업(이하 「호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全國衛指協 및 당해 縣衛指協 등의 업무 方法書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 (1)업무 대상 기간

호조사업의 업무대상 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 (2)교부 계약

가. 縣衛指協 등의 회장(이하 「縣衛指協 등 회장」 이라 한다) 및 호조사업에 참가하는 돼지의 생산자(이하 「사업참가자」 라 한다)는, 업무대상기간, 계약돼지두수, 교부기준, 교부대상돼지, 생산자 적립금의 단가 및 납부방법, 호조금의 종류, 단가 및 교부한도 두수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교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나. 사단법인 전국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회회장(이하 「全國衛指協會長」 이라 한다) 및 縣衛指協 등 회장은, '가'의 교부계약과 동일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교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것일 것

#### (3)계약돼지두수

호조사업의 계약돼지두수는, 업무대상기간의 번식용 종돈(번식용에 이용되는 암·수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비육돈(비육용에 이용되는 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양 예상두수일 것

#### (4)교부기준

제3의2의 호조금 교부는, 대책요령의 4의(4)의 '바'의 살처분 또는 대책요령의 4의(4)의 '아'의 규정에 의해 돼지의 도태 등의 방역조치가 실시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5)교부 대상 돼지

제3의2의 호조금의 교부대상 돼지는, 다음에 열거하는 돼지일 것

가. 이동제한구역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가축 등의 이동 등을 실시하는 구역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법 제18조의 신고에

관한 가축에 대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라 도살된 번식용 종돈 또는 비육돈 및 가축방역원 등의 지도에 의해 도태된 번식용 종돈 또는 비육돈(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금 교부대상으로 된 것을 제외)

나. 이동제한구역내에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살처분된 번식용 종돈 또는 비육돈, 법 제18조의 신고에 관한 가축에 대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라 도살된 번식용종돈 또는 비육돈 및 가축방역원 등의 지도에 의해 도태된 번식용종돈 또는 비육돈을 사양하고 있는 농장에서 새로이 도입된 돼지. 단, 축산진흥종합 대책사업실시요강('00년4월1일자 12축A제2388호 농림수산사무차관 依命通知)의 별표 제1의 事業種類欄의 4의 사업내용난의 1의 가축개량증식대책사업, 양돈등 체질강화 특별대책사업 실시요령('83년4월1일자 58축A제2388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의 양돈진흥체제정비종합대책사업 및 지역양돈진흥 특별대책사업실시요령('96년5월21일자 8축A제1305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의 지역양돈진흥특별 사업대책에 의해 도입된 돼지 및 농업개량자금 조성법('56년 법률 제102호)에 의해 축산진흥자금을 빌려 구입한 돼지는 제외

(6) 생산자 적립금의 단가, 교부방법 등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일 것

가. 縣衛指協 등은, 업무대상기간에 있어, 사업참가자가 (2)의 교부계약에 의해 계약한 (3)의 돼지의 종류별 계약돼지두수에 '나'에 규정하는 돼지의 종류별 생산자 적립금의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縣衛指協 등 회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생산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생산자 적립금의 단가는, 1년간 번식용종돈 1두당 1,250엔, 도축장에 출하되는 비육돈은 1두당 80엔으로 한다.

다. '가'에 의해 납부된 생산자적립금에 대해서는, 縣衛指協 등은

全國衛指協회장이 따로 정하는 납부방법 등에 따라 全國衛指協에 납부하고, 全國衛指協에서 호조기금으로 관리·운용하는 것으로 한다.

#### (7) 호조금

호조금의 종류 및 교부한도·두수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이고, 호조금의 교부단가는 별표3과 같이 한다.

##### 가. 도태호조금

이 호조금은 (5)의 '가'에서 도살 및 도태된 번식용종돈 또는 비육돈에 대하여 교부되는 호조금(이하 「도태호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교부한도·두수는 다음 (가) 또는 (나)중 적은 두수로 한다.

(가) (5)의 '가'의 교부대상돼지로서 가축방역원 등이 확인한 두수

(나) 각 연도별 생산자적립금을 납부한 두수

##### 나. 도입호조금

이 호조금은, (5)의 '나'에서 도입된 돼지에 대하여 부되는 호조금(이하 「도입호조금」이라 한다.)으로서, 그 교부한도·두수는, 다음의 (가)에서 (나)중 제일 적은 두수로 한다.

(가) (5)의 '나'에서 도살, 살처분 및 도태된 번식용 종돈 및 비육돈 두수

(나) (5)의 '나'에서 도입된 돼지 두수

(다) 각 연도별 생산자적립금을 납부한 두수

##### 다. 소각·매몰 등 호조금

이 호조금은, 제3의2의 살처분 등 및 돼지의 도태 등에 따라, 당해 돼지 등의 소각, 매몰 등을 실시한 경우에 교부되는 호조금(이하 「소각·매몰 등 호조금」이라 한다.)로 한다. 그 교부한도·두수는, 돼지의 도태 등에 있어서는, '가'의 도태호조금의 교부대상 두수로 하고, 살처분 등에 있어서는, 다음의 (가) 또는 (나)중 적은 두수로 하는 것으로 한다.

(가) 화제장에서 화제된 번식용종돈 및 비육돈의 사체 두수

(나) 각 연도별 생산자 적립금을 납부한 두수

#### 4. 사업 실적 보고

縣衛指協 등은, 매년도, 지체없이 都道府縣지사 및 全國衛指協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실시한 사업 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全國衛指協은, 제출된 사업실적을 취합한 후, 자신의 사업실적과 함께, 지체없이 축산국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 5. 사업 실시기간

이 사업의 실시기간은 '98년 5월부터 2002년 까지로 한다.

#### 제6 사업의 추진지도 등

1. 全國衛指協은 농림수산성 및 사업단의 지도 아래 都道府縣, 관계단체 등과의 連携에 노력하여,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2. 都道府縣지사는, 이사업의 적정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의 취지, 내용 등의 주지철저와 縣衛指協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함과 동시에, 都道府縣현내의 돼지를 사양하는 모든 생산자가 이 사업에 참가 하도록, 필요한 지도 및 지원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3. 縣衛指協 등은, 이 사업의 취지, 내용 등의 주지철저에 노력하고, 都道府縣 및 全國衛指協의 지도하에, 관계단체 등과의 連携에 노력함에 의해, 都道府縣내의 돼지를 사양하는 모든 생산자가 이 사업에 참가하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한다.

4. 都道府縣지사, 全國衛指協 및 縣衛指協 등은, 대책요령과의 整合性 (조화)을 가지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제7 사업단의 造成

1. 사업단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1에 정하는 보조대상경비 및 보조율에 의해, 全國衛指協이 제4의 규정에 의해 호조기금의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해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2. 全國衛指協은, 별표2에 정하는 보조대상경비 및 보조율에 의해, 제3에 규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해 호조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 제8 기타

이 요령에 정하는 것 이외에, 이 사업의 실시에 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국장 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부칙

이 통지에 의한 개정전의 요령 제3의3 규정에 의해 縣衛指協 등의 기본 재산의 조성을 위해 조성한 금액은, 이 통지에 의한 개정후의 요령 제3의 3 규정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개정후의 요령 제3의 3 縣基金에 넣는 것으로 한다.

### [별표 1]

보조대상경비	보조율
全國衛指協이 제4의 규정에 의해 호조금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	정액

[별표 2]

사업의 종류	보조대상경비	보조율
1.가축방역 호조추진사업	1.全國衛指協이 中央推進會議 개최, 사업추진을 위한 팜플렛 작성, 縣衛指協 등에 대한 보급, 지도, 연락 조정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	定額
	2.縣衛指協 등이 추진회의 개최, 생산자 등에 대한 보급, 지도, 연락조정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	定額
2.가축방역 호조사업	縣衛指協 등이 돼지콜레라 발생 시 호조사업에 의해 교부하는데 필요한 경비	定額. 단, 교부대상 돼지 1두당 교부 단가는 별표3과 같이 한다.
3.縣衛指協 등 운영기반 강화사업	縣衛指協 등의 가축방역대책에 관한 관리운영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충당하기 위한 縣 基金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	定額 단, 縣衛指協 등의 기본재산(단체의 재편에 의해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재편하기 전의 縣衛指協 등의 기본재산을 말한다) 중 사업단에서의 출자액의 총액이내

[별표3]

호조금의 종류	교부 단가
1. 도태 호조금	
(1)번식용 종돈 (암)	1두당 81,000 엔
(2)번식용 종돈 (수)	1두당 140,000 엔
(3)비육돈(약 3개월령 이상의 것)	1두당 22,000 엔
(4)비육돈(약 3개월령 미만의 것)	1두당 11,000 엔
2. 도입 호조금	
(1)번식용 종돈	1두당 28,000 엔
(2)비육돈	1두당 4,000 엔
3. 소각·매몰 등 호조금	1두당 4,000 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동물용생물학적제제의 지정에 관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정보 모집결과**

'00.10.11 축산국위생과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51년 농림성령 제35호)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00.8.28~9.11일까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널리 의견·정보를 모집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당해안에 대한 의견·정보가 176건 기탁되어, 각 의견을 검토한바, 별지와 같이 취합되었으므로 공표한 개정안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9.28일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00년 농림수산성령 제87호)'가 공포되었습니다.

(별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에 관한 사고방안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백신접종을 중지하는 것에는 반대**

금회의 성령개정은, 전국적인 백신접종중지의 대처를 추진하는중, 백신접종돈과 백신미접종돈의 혼재에 의한 방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돼지콜레라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 백신접종중지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에 의한 접종을 인정하면 방역상 혼란이 생기고, 이미 접종을 중지하고 있는 생산자가 위험을 안게 된다.**

금후 도도부현지사가 실시하는 백신접종 허가요건으로서, 방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①접종상황 보고, ② 접종돈의 표식 ③

출입검사 실시 ④ 허가정보의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축산국장이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운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하여, 수입검역의 강화에 의하여 돼지콜레라 침입방지를 더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이미 접종을 중지한 생산자가 위험을 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 백신 사용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할 것

전국적인 백신접종중지의 대처를 추진하는중, 백신의 사용에 있어서는, 접종돈의 표식 등 방역상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어, 신고제로서는 이러한 조치를 조건부로 할수없기 때문에 허가제 하에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백신의 사용허가는 정해진 조건을 확실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절차 자체는 매우 간단한 것으로 할 것입니다.

###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알기쉽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금후, 도도부현지사가 실시하는 백신접종 허가요건으로서, 방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①접종상황보고 ②접종돈의 표식 ③출입검사 실시 ④허가정보의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축산국장이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용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실시하는 기한을 한정하여 주십시오.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가 및 도도부현은 생산자, 관계기관·단체의 협력하에 계속 방역체제의 더한층 정비에 노력하여, 생산자의 이해하에, 조기에 전면적인 백신접종 중지가 되어, 국내에서의 돼지콜레라 박멸이 확인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백신접종돈의 표식을 하지 않을 것

백신접종돈과 미접종돈이 식별할수없게 된 경우, 청정성 감시를 위해 실시하는 항체검사에서 항체양성의 원인이 백신접종에 의한 것인가, 감염에 의한 것인가 구별할수없어, 당해농장뿐만 아니라 주변농장에도 격리지사, 출입검사실시를 하는 등 방역상 혼란을 일으킴으로 백신접종돈의 표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신접종돈과 미접종돈의 구별에 의하여 판매가격에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백신접종돈과 미접종돈의 식별은, 돼지콜레라의 청정성감시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실시하는 것이고, 또, 백신 그 자체는 무해함으로 그러한 것에 의하여 판매가격에 영향이 생기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신접종중지에 따라 돈단독의 발생이 염려된다.

현재 돼지콜레라의 약8할은 돈단독백신과 혼합백신으로서 접종되고 있으므로, 돼지콜레라백신 접종중지에 의하여 돈단독백신의 접종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도도부현 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회를 통하여 접종하는 경우에 접종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생시의 경영제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만일의 발생시 손해를 보상하는 장치로서 '98년도에 가축방역호조기금이 창설되어 있고, 평균적 사양규모(번식돈80두, 비육돈700두)의 농가로 계산해보면, 적립금은 연간 20만엔, 한편, 만일의 경우에 지불되는 호조금은, 도태호조금 1,900만엔, 소각매몰호조금 300만엔, 도입호조금 500만엔으로 합계 2,700만엔이 되고, 1년정도로 발생전의 생산체제로 되면 자금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시의 방역대책에 대하여도, 생산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①방

역상 가능한 경우 농장의 구분도태 ②이동제한기간중의 적극적인 검사에 의한 방역상 지장이 없는 돼지의 도축장출하 허가 ③만연방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의 긴급백신접종 실시 등에 의해 경제적 손실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의 발생으로 상기의 대책으로도 또한 경영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제역 발생시에 취한 관련대책도 참고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돼지콜레라를 박멸해도 수입돈육에는 대항할수없다. 국산돈육의 안전성의 주장, 생산자의 얼굴이 보이는 양돈, HACCP대응 등의 독자성이 있어도 좋은 것은(아닌가?)**

돼지콜레라 박멸만으로 수입돈육에 대항할수있다고는 생각할수없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박멸가능한 질병을 위생관리의 향상을 도모해가면서 하나하나 박멸해가는 것은 생산코스트 삭감뿐만 아니라 국내돈육에의 소비자 신뢰를 유지해 가는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산돈육의 안전성향상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HACCP방식의 사고방안에 의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의 생산단계에의 도입
- 식육 등 안전성평가를 위한 자주검사예의 지원

**일본에의 돈육수출국은 거의가 청정국으로 백신접종중지의 메리트는 되지 않는다.**

백신접종중지에 의한 검역 강화의 최대목적은 해외로부터의 돼지콜레라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구제역 발생에 따라 돈육 등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내만, 한국은 물론, 기타의 국가에서도 일본시장을 지향하여 구제역 청정화를 위한 대처를 추진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가까운 장래에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피할수없게됨을

생각하면, 돼지콜레라의 침입방지라고하는 의미뿐만아니라, 장래적으로 수입돈육에 의한 국내시장의 경쟁격화를 피하는 의미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접종을 중지함에 의한 코스트절감은 거의 없다.**

단미백신으로 환산하여 연간38억엔 정도이고, 그 8할이 돈단독백신과 혼합백신으로 접종되고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당분간은 21억엔 정도의 경비가 삭감되게 되지만, 돈단독과 돼지위축성비염의 혼합백신의 제조도 개시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금후, 돈단독백신이 다른 백신과의 혼합화에 의해 돼지콜레라백신접종을 중지함에 의한 메리트, 착실하게 또한 장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기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주십시오.**

위기관리체제의 정비에 대하여는,

- ① 지역의 양돈장, 양돈관련시설의 장소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역 MAP의 정비
- ② 수의사에 의한 정기적인 농장의 출입검사
- ③ 만일 발생에 대비한 긴급접종용 백신 비축
- ④ 폐사돈 처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보냉차, 보냉창고 등의 정비
- ⑤ 방역체제를 점검하기 위한 방역연습 실시

등을 예의 추진해 갈것입니다.

**항체검사에 의해 감염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브유니트백신을 개발해 주십시오.**

이 정도 청정성 확인이 되어 있는 현재, 시간을 들여가며 굳이 서브유니트백신을 개발하여 청정성을 확인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긴급백신으로 이용한다해도, 면역성, 즉효성의 면에서 현재의 Live vaccine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정보 모집결과**

'00.10.11. 축산국 위생과

이번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00.8.28~9.11일까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널리 의견·정보를 모집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당해안에 대한 의견·정보가 7건 기탁되어, 당해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바, 별지와 같이 되었으므로, 공표한 개정안에 따라, 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하여, 10.11일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 12축A제2762호 축산국장 통지가 통지되었습니다.

[별지]

**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에 관한 사고방안**

돼지콜레라가 완전 박멸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백신접종을 중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정안이 요망된다.

'96년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해온 32만두의 돼지, 멧돼지 검사를 통하여, 일본에는 매우 청정성이 높은 것이 판명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이미 백신접종을 중지한 32도부현(사양두수, 사양호수 모두 전국 반수에 상당)에서도 어떤 이상을 인정할 수 없는 점에서도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또, 금회의 요령안에 대하여는, 생산자,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작성하여, 작년 10월말에 사전에 제시하였고, 방역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한, 현실적으로 대응가능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돼지콜레라의 조기발견, 조기신고는 가능한 것인가?**

사업개시 이후, 돼지콜레라의 조기발견을 촉진하기 위한 팜플렛을 배포, 잡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돼지콜레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전염병대책의 기본도 되므로, 앞으로도 모든 생산자, 양돈관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요청해 갈 것입니다.

### **돼지콜레라 발생시의 긴급백신접종의 조기 실시**

발생상황(주변의 돼지 사양상황, 폐사돈 처리의 곤란성 등)에서 긴급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의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하여 즉시 비축백신(전국 8개소에 합계 100만두분 비축)을 L용하여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할 것입니다.

###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한 돼지를 출하할 수 있을 것**

환축, 의사환축 이외의 돼지에 대하여는, 긴급백신접종 실시유무에 관계없이, 이동제한 해제후는 물론 이동제한기간중이더라도, 일정기간 경과후에 가축방역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방역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돼지에 대하여는 도축장 직행에 한해 이동이 허가됩니다.

###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한 돼지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을 때는 국가에서 매상할 것**

백신 그 자체는 무해하고, 또,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출하되는 것이므로, 소문에 의해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제공에 노력할 것입니다.

### **사체처리에 관하여는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에 적당한 것을 명기 할 것**

폐사돈 처리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농가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로부터 현, 시정촌, 관계단체 등이 협력하여 처리에 임하고 있고, 가축방역호조기금의 대상이 되는 자주도태의 경우도 포함하여 앞으로도 똑같은 대응을 취하도록 대처해갈 것입니다.

많은 것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검역을 강화해도 질병침입을 저지한다는 것은 어렵다.

국내의 무발생이 계속되는 중, 장래에 걸쳐 고율의 백신접종율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곤란하고, 백신접종중지라는 대처에 따라, 백신접종국,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여, 돼지콜레라의 침입가능성을 가능한한 낮추어 가는 것이 국가 전체로서의 발생가능성을 낮게 하기 위해서도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종돈장 등 양돈시설의 위생대책지침

양돈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집약적인 생산방식의 보급 등을 배경으로 생기고 있는 건강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여,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종돈장에 질병이 발생 또는 잠재화되어 있는 경우는, 종돈의 유통에 의해 그 질병이 일반양돈장의 비육돈군에 전파할 위험성이 극히 높으므로, 종돈장을 중심으로한 양돈시설에서는 아래에 의해 각종의 효과적인 위생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 질병의 청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1. 시설의 배치 및 출입제한 등

농장에 있어 질병의 청정화는, 농장에 병원체 침입을 방지함과 동시에 농장내에서의 병원체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시설의 배치 및 출입제한의 실시에 노력한다.

- (1) 농장의 주위에는 圍障(넛트, 헨스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출입구를 한정하여 농장내의 출입을 규제하고 개와 고양이 등의 침입을 방지한다.
- (2) 돈사는, 가능한 한 발육·사육단계로 구분하고, 도입돈을 격리하는 돈사(이하 '검역돈사'라 한다) 및 病豚을 격리하는 돈사(이하 '격리돈사'라 한다)를 설치한다. 그 때, 방역, 환경 및 작업의 관점에서, 관리작업을 한방향(One way)으로 실시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에 노력한다.

- (3) 돈사는 원칙적으로 단열구조로 하고, 환기에도 충분히 배려한다. 또한, 바닥, 천정, 벽은 수세·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또한 배수성이 풍부한 구조로 하는 등의 고안을 한다.
- (4) 外來者의 입장시에는, 의복, 신발 및 손의 소독을 권장하고, 모자, 상의, 바지, 신발 등은 가능한한 장내전용의 것으로 교체한다. 또, 검역돈사 및 병돈격리돈사에의 출입시는, 다시 의복 및 손의 소독을 실시하고, 의복, 고무장화 등은 전용의 것으로 교체한다.
- (5) 일반차량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입장시킬 경우는, 출입구에서 소독을 실시한다. 또, 자재의 반입시에는, 필요시 분무 소독을 실시한다.

## 2. 시설내의 위생관리

본병의 방제에 있어서는, 외부와의 격리, 시설의 적정배치 등에 유의하고 시설내에서의 병원체의 확산방지와 양호한 사육환경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평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장관계자는 당해 시설이 外界와 격리상태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설내가 완전하게 청정화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평소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시설내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1) 시설 등의 오염방지대책의 철저

- 가. 각각의 돈사 입구에는, 손의 소독시설, 발판소독조, 기구의 세척·소독기구 등을 설치하고, 관리동, 돈사, 사료창고 등 구내에 배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을 실시한다.

나. 돈사는 가능한한 All in All out 방식으로 운영하고, All out 후의 돈사는, 糞, 사료 등을 반출한 후, 충분히 청소, 수세 및 소독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도입직전에 다시 소독을 실시한 후 돈군을 도입한다.

또한, All in • All out 방식의 채용이 곤란한 돈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용후 필히 공사기간을 두고, 완전하게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다. 돈사, 관리사, 창고 등에 대하여는, 정기적 혹은 필요시 쥐 및 위생해충의 구제를 실시한다.

라. 작업용 의복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기자재는 돈사의 동별로 전용의 것을 갖추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원칙적으로 사용후 매회 수세 • 소독한다.

## (2) 개체의 위생관리 철저

가. 모돈을 분만돈사에 이동할 때에는, 豚體를 잘 세척 소독하고 필요시 살충제를 살포한다.

나. 돈사에 대하여는, 돈사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 특히, 어린돼지가 사양되고 있는 돈사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온설비를 갖춘다. 또, 더울때(暑熱)에는 송풍 및 One man spray, 샤워 등에 의한 물의 분무 등 防暑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농장외부로부터 종돈 등을 도입하는 경우는, 필히 검역돈사에 수용하고, 최소한 2주간은 격리관찰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돈을 확인한 경우는, 그 病性の 해명에 노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라. 검역돈사 또는 병돈격리돈사에서 일반돈사에의 돼지 이동은, 豚體가 청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필히 豚體의 세척 • 소독을

실시한다.

마. 전염성질환이 의심되는 폐사돈은, 필히 가축보건위생소에서 병성감정을 받는다.

### 3. 예방 및 치료 등

질환의 예방에 있어서는, 평소의 일반적인 위생관리 이외에, 계획적인 예방접종의 실시, 질병 청정지역으로부터의 종돈의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한번 질병이 침입한 경우,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외견상 증상이 소실된 후에도, 일부가 보균돈으로 남아, 감염원으로 되는 수가 있으므로, 특히 종돈장에 있어서는, 보균돈의 방역조치 철저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미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 건강관리의 한가지 방법으로서 예방접종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4. 위생관리체제

종돈장의 위생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사항에 유의하면서, 계획적으로 항체검사 등을 실시함에 의해 종돈집단에서 각종 질병의 침윤상황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종돈 후보 이외의 자돈을 Monitor돼지로 비육출하 하여, 도축검사시의 부검소견의 성적에서 위생상의 문제점을 해명하는 등에 의해, 자돈의 건강정도 및 종돈장의 위생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만성전염병 중에는 진단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질병도 있어, 생전에는 피해상황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년간의 분만회수, 수태율, 유사산 회수와 그 상황, 一腹당 자돈의 이유두수, 폐사·도태두수 및 육성상황 등의 번식육성에

관한 기록을 하여, 기술지표로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질병의 발견, 질병의 침윤상황의 지표로 활용한다.

- (2) 평소의 사양관리에 있어서는, 이상돈의 조기별견에 노력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미리 점검항목을 정해두고, 정기적인 체크를 실시하여 그 개선을 도모한다.

## 5. 기타

종돈장 이외의 양돈장에 대하여도, 본 대책지침에 준한 위생관리에 노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여 백

# 일본어 원문

여 백



第三編 官報 第三十二日 日刊(行政機関の休日休刊)  
第三編 官報 第三十二日 日刊(行政機関の休日休刊)  
第三編 官報 第三十二日 日刊(行政機関の休日休刊)



大蔵省印刷局発行

目次

(省 令)

○農林水産省組織規程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農林水産八六)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同八七)

○農業災害補償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同八八)

○経営安定基金に係る整理の整理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運輸三二)

○特定優良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建設三二)

○自治省内部部局組織規程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自治四六)

○地方税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同四七)

(規 則)

○人事院規則一七一〇(管理職員等の範囲)の一部を改正する人事院規則(人事院一七〇一五九)

(告 示)

○農林中央会庫法施行規則第四ノ三第三号の農林大臣及大蔵大臣ノ指定スル法人を指定する件の一部を改正する件(金融庁・農林水産一)

○商業登記法第百十三條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登記所の指定に関する件(法務三六六)

○日本国に帰化を許可する件(同三六七)

○重要文化財の管理団体を指定する件(文化庁一四)

○検疫法により検疫区域を定める件の一部を改正する件(厚生三二二)

○平成十三年産産けしの栽培区域及び栽培面積を定める件(同三三二)

○平成十三年産産あへん収納価格を定める件(同三三三)

○東京都の一部の地域における健康保険、船員保険、厚生年金保険及び児童手当に関する納期等を延長する件(社会保険庁二〇)

○地力増進法施行令の規定に基づき、泥炭等の品質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の農林水産大臣の基準を定める件の一部を改正する件(農林水産一二五)

○生糸の輸入に係る調整等に関する法律第十條第二項の規定に基づき、農林水産大臣が定める額を定めたる件(同一二五)

○粗糖の平均輸入価格を定めたる件(同一二五)

○砂糖の価格調整に関する法律第九條第一項第一号ハの農林水産大臣の定める額を定めたる件(同一二五)

○異性化糖標準価格及び適用期間を告示(同一二五)

○異性化糖平均供給価格及び適用期間を告示(同一二五)

○種苗法第十三條第二項の規定に基づき品種登録出願が取り下げられた件(同一二五)

○品種登録出願が拒絶された件(同一二五)

○石炭鉱業構造調整臨時措置法第五十八條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平成十二年度における石炭の販売価格の基準額について定めたる件(通産五八四)

○石炭鉱業構造調整臨時措置法第四條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平成十二年度石炭鉱業合理化実施計画を定めたる件(同五八五)

○信号符字を取り消した件(運輸三三三)

○信号符字を点附した件(同三三四)

○船舶国籍證書は無効となつた件(同三三五)

○船舶国籍證書を無効とした件(同三三六)

○寄附金付郵便葉書を発行する件の一部を改正する件(郵政五九九)

○郵便振替規則第五十三條の二の加入者指定金融機関預金口座振替の取扱いをする金融機関の認定に伴うこれらの取扱いに関する必要な事項を公示する件(同六〇〇)

○郵便局に関する件(同六〇一、六〇二)

○簡易郵便局に関する件(同六〇三、六〇四)

○石炭鉱業構造調整臨時措置法第四條の二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平成十二年度合理化炭鉱離職者再就職計画を定める件(労働九二)

○道路に関する件(建設一九二三、一九二九)

○高速自動車国道に関する件(同一九三〇、一九三二)

○土地区画整理事業の關係図書を総覧に供する件(同一九三二)

○都市計画に関する件(同一九三三)

(国会事項)

(人事異動)

内閣 国土庁 厚生省 最高裁判所 秋田県

(官庁報告)

官庁事項

平成十一年度国有林野の管理経営に関する基本計画の実施状況及び当該実施状況に対する林政審議会の意見の概要を公表する件(農林水産省)

労働

最低工資の改正決定に関する公示(愛知労働局最低工資公示一)

郵便法第十九條の三第二項の郵便物の料金免除に関する公示(郵政省)

(資料)

閣議決定等事項

(公 告)

諸事項

官庁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第十條第二項、証券会社に対する行政処分關係裁判所

相續、公示催告、破産、免責、和議、再生關係

地方公共団体 行旅死亡人關係

会社その他 会社決算公告

省 令

○農林水産省令第八十六号  
 農林水産省設置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五百十三号）第十九条の規定に基づき、及び同法を実施するため、農林水産省組織規程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を次のように定める。  
 平成十二年九月二十八日

農林水産大臣 谷 洋一  
 農林水産省組織規程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農林水産省組織規程（昭和六十年農林水産省令第七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三条の見出し中「金融調整官」の下に、「金融評価専門官」を、「海外連絡調整官」の下に、「地城政策企画官」を加え、同条第一項中「金融調整官」の下に、「金融評価専門官」を、「海外連絡調整官」の下に、「地城政策企画官」を加え、同条第二十四項を第二十六項とし、第十六項から第二十三項までを二項ずつ繰り下げ、第十五項を第十六項とし、同項の次に次の一項を加える。

- 17 地城政策企画官は、農林水産省の所掌に係る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に関する専門の事項についての企画、調査及び連絡調整に関する事務を行う。
- 第三条中第十四項を第十五項とし、第五項から第十三項までを一項ずつ繰り下げ、第四項の次に次の一項を加える。

5 金融評価専門官は、農林水産業及び食品産業その他の農林水産省の所掌に係る事業の振興のための金融上の措置に係る効果の測定に関する専門技術上の事項についての企画、調査及び連絡調整に関する事務を行う。

第七条の見出し中「事業評価専門官」の下に、「事業調整専門官」を加え、同条第一項中「同建設設計課に」の下に「事業調整専門官」を加え、同条第四十三項を第四十四項とし、第二十八項から第四十二項までを一項ずつ繰り下げ、第二十七項の次に次の一項を加える。

28 事業調整専門官は、設計課の所掌事務に関する調査を要する重要事項についての企画、調査及び連絡調整に関する事務を行う。

第十一条の見出し中「食肉調整官」の下に、「食肉品質環境対策官」を加え、同条第一項中「食肉調整官」の下に「及び食肉品質環境対策官」を加え、同条第十九項を第二十項とし、第十一項から第十八項までを一項ずつ繰り下げ、第十項の次に次の一項を加える。

- 11 食肉品質環境対策官は、食肉、鶏卵その他の畜産物（牛乳及び乳製品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食肉鶏卵等」という。）の流通の改善に関する専門の事項のうち食肉鶏卵等の品質の確保並びに畜場及び食鳥処理場に係る環境の保全、衛生管理及び運送に関するものについての企画、調査及び連絡調整に関する事務を行う。
- 第四百三十二条の第十項中「及び国営の土地改良事業により造成された施設の管理」を「国営の土地改良事業によつて造成された施設の管理及び国営の農圃農地整備事業」に改め、同条第二項中「四課を」を「四課のほか、農圃農地整備事業建設所」に改め、同条第九項を第十二項とし、第五項から第八項までを三項ずつ繰り下げ、第四項の次に次の三項を加える。
- 5 農圃農地整備事業建設所においては、農圃農地整備事業に係る工事に伴う土地及び工作物の買収並びにこれに伴う補償に関する工事に伴う土地及び工作物の買収並びにこれに伴う補償に関する事務をつかさどる。
  - 6 農圃農地整備事業建設所に工事を置く。
  - 7 工事に伴う土地及び工作物の買収並びにこれに伴う補償に関する事務、工事の実施に関する調査、工事の実施及び検査に関する事務並びに農業用施設機械及び電気通信設備に関する事務をつかさどる。
- 附則  
 この省令は、平成十二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 農林水産省令第八十七号  
 家畜伝染病予防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六十六号）第五十条の規定に基づき、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を次のように定める。  
 平成十二年九月二十八日  
 農林水産大臣 谷 洋一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昭和二十六年農林省令第三十五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五十七条第二号を次のように改める。  
 二 牛痘予防液、豚コレラ予防液、ツベルクリン、マレイン及びビーニン  
 第五十七条第三号を削る。

附則  
 この省令は、平成十二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農林水産省令第八十八号  
 農業災害補償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八十五号）第百十五条第一項第三号の規定に基づき、農

業災害補償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を次のように定める。  
 平成十二年九月二十八日  
 農林水産大臣 谷 洋一  
 農業災害補償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農業災害補償法施行規則（昭和二十二年農林省令第九十五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二十九条の十一第一号中「又は口蹄疫」を「口蹄疫、豚コレラ又はアフリカ豚コレラ」に改める。

附則  
 この省令は、平成十二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運輸大臣 森田 一

経営安定基金に係る経理の整理に関する省令（昭和六十二年運輸省令第二十一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経営安定基金に係る経理の整理に関する省令（昭和六十二年運輸省令第二十一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二項中

行庫証	市場価格のある有価証券で、かつ、償還期が一年以内で、かつ、流動性が高いもの（当該有価証券の発行が、当該有価証券の発行目的で、かつ、償還期が一年以内で、かつ、流動性が高いものであること）
-----	--

IVの2 経営安定基金

款	項	目	箇	要
経営安定基金				全法第百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基金

IVの2 経営安定基金

款	項	目	箇	要
経営安定基金				全法第百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基金

V 剰余金（又は支出金）

款	項	目	箇	要
経営安定基金				全法第百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基金

V 剰余金（又は支出金）

款	項	目	箇	要
経営安定基金				全法第百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基金



12畜A第2689号

平成12年9月28日

知事殿

農林水産省畜産局長

###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の公布について

平成12年9月28日付けをもって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平成12年9月28日農林水産省令第87号）が公布されたので、下記事項に留意の上、その運用に遺憾のないようお願いする。

#### 記

##### 第1 改正の趣旨及び内容について

豚コレラ予防液については、平成8年度以降計画的に実施してきた豚コレラ撲滅対策の成果を踏まえ、平成12年10月1日以降原則として全国的に接種を中止するとともに、防疫上の混乱を回避するため、同予防液を、家畜伝染病予防法（以下「法」という。）第50条の規定によりその使用につき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要する動物用生物学的製剤として指定（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第57条）することとした。

##### 第2 特に留意すべき事項について

豚コレラ予防液の使用の許可に当たっては、同予防液を使用した豚と同予防液を使用していない豚が識別できないことによって生ずる防疫上の混乱を避けるため、以下の手続を行うようお願いする。

###### 1 許可申請について

使用の許可申請書又は申請書に添付する文書（以下「申請書等」という。）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させて四半期ごとに申請させることとする。

- (1) 申請者の氏名及び住所
- (2) 予防液の種類
- (3) 予防液を使用する理由
- (4) 予防液の使用期間
- (5) 予防液を使用する農場名及び住所
- (6) 予防液の使用に係る獣医師の氏名及び住所
- (7) 常時飼養頭数
- (8) 予防液ののべ使用予定頭数
- (9) 予防液の使用方法
- (10) 予防液を使用した豚の標識の種類
- (11) 予防液を使用した豚の出荷（他の農場へ出荷する場合を含む。以下同じ。）予定先の名称、住所、豚の種類及び出荷予定頭数

## 2 使用許可の期間について

使用許可の期間の終了の日は、各四半期の末日までとする。

## 3 使用許可を与える際に付する条件について

使用許可を与え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防疫上の混乱を回避するための条件を付すこととする。

### (1) 予防液を使用した豚の標識

予防液を使用した豚については、次のいずれかの標識を行うこと。ただし、③の標識については、当該農場で飼養されるすべての豚に予防液を使用し、かつ、(2)の記録により予防液を使用した豚が識別できる農場の豚（と畜場に直接出荷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み行えることとする。

- ① 別添の耳標による標識
- ② 豚コレラ、HC等の刻印がなされた耳標による標識
- ③ カラースプレーによる標識（豚の背部に「C」と記す方法によるものとする。）

### (2) 予防液の使用報告

予防液の使用月日、使用頭数、出荷等の記録を行うとともに、予防液を使用した豚の出荷が終了するまでの間は、1の申請書等の記載事項に係る実績を記載した使用報告書を、各四半期の末日から10日以内に都道府県知事に報告すること。

### (3) 立入検査への協力

家畜防疫員が行う立入検査に際し、予防液の使用状況の聴取、異常を示

す豚の発生状況の聴取、血液の採取等に協力すること。

4 使用許可状況の公表及び報告について

市町村別の許可農場数、のべ使用予定頭数等の使用許可状況を取りまとめて公表するとともに、農林水産省畜産局長及び関係都道府県知事に報告すること。

5 報告及び使用許可の取消しについて

(1) 3の(2)の予防液の使用報告がなされない場合にあっては、法第52条の規定に基づき報告を求めるこ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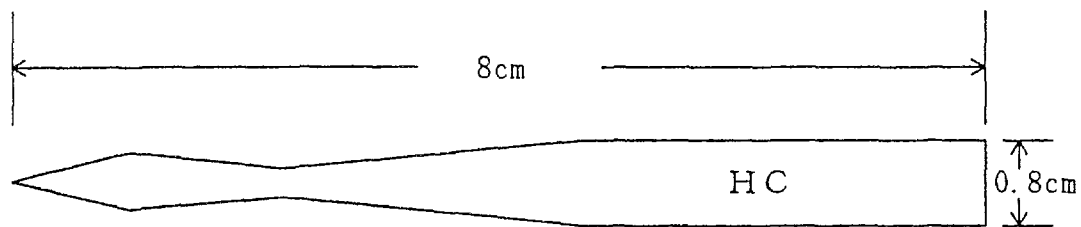
(2) 3の条件が遵守されない場合にあっては、条件を遵守するよう指導すること。なお、正当な理由がなく条件を遵守しない場合には、行政手続法（平成5年法律第88号）に規定された手続にしたがって使用許可を取消すこと。

第3 その他

- 1 使用許可を与えた農場で飼養される全ての豚に予防液が使用されるよう指導をお願いします。
- 2 獣医師及び動物用医薬品一般販売業者に対し、豚コレラ予防液の適正な使用を確保するよう指導をお願いします。

(別添)

豚コレラ予防液使用済耳標



「HC」については、「県名（県名を判別しうる番号） 番号」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12畜A第2761号  
平成12年10月1日

知事 殿

農林水産省畜産局長

家畜防疫対策要綱の一部改正について

豚コレラの防疫については、平成8年度以降計画的に実施してきた豚コレラ撲滅対策の成果を踏まえ、平成12年10月1日以降原則として全国的に豚コレラ予防液の接種を中止することに伴い、家畜防疫対策要綱（平成11年4月12日付け11畜A第467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の一部を別添のとおり改正したので、御了知願いたい。

なお、口蹄疫に係る防疫対策については、現在、今般の口蹄疫の発生に伴う防疫を踏まえた関係通知の見直し作業を行っており、追って改正することとしているので、念のため申し添える。

(別添)

家畜防疫対策要綱新旧対照表

改正後	現 行
<p>I (略)</p> <p>II 個別疾病対策 《家畜伝染病》 1～8 (略)</p> <p>9 豚コレラ 本病については、<u>原則として全国的に豚コレラ予防液の接種を中止したことから、「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平成12年10月1日付け12畜A第2762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に基づき清浄性の維持、確認のための検査及び調査並びに万一の発生に備えた防疫体制の一層の整備に努める必要がある。</u></p> <p>10～56 (略)</p> <p>III (略)</p> <p>別記1～別記8 (略)</p> <p>別記様式1～別記様式5 (略)</p>	<p>I (略)</p> <p>II 個別疾病対策 《家畜伝染病》 1～8 (略)</p> <p>9 豚コレラ 本病については、<u>自衛防疫事業を中心とした予防接種から予防液を用いない防疫に転換するため、「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平成8年5月10日付け8畜A第1243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に基づき清浄化を図るための防疫対策及び清浄化維持対策を講ずる必要がある。</u></p> <p>10～56 (略)</p> <p>III (略)</p> <p>別記1～別記8 (略)</p> <p>別記様式1～別記様式5 (略)</p>





12畜A第2762号

平成12年10月1日

知事 殿

農林水産省畜産局長

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の全部改正について

豚コレラの防疫については、平成8年度以降計画的に実施してきた豚コレラ撲滅対策の成果を踏まえ、平成12年10月1日以降原則として全国的に豚コレラ予防液の接種を中止することに伴い、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平成8年5月10日付け8畜A第1243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の全部を別添のとおり改正したので、御了知の上、引き続き豚コレラ防疫に万全を期されたい。

(別添)

## 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

### 1 基本方針

豚コレラの防疫については、近年の発生状況、平成8年度以降実施してきた豚コレラ撲滅対策の成果等を踏まえ、平成12年10月1日以降原則として全国的にワクチン接種を中止するとともに、防疫上の混乱を回避するため、同ワクチンを、家畜伝染病予防法（昭和26年法律第166号。以下「法」という。）第50条の規定によりその使用につき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要する動物用生物学的製剤として指定した。今後、国及び都道府県は、家畜衛生関係団体養豚関係団体及び養豚経営者（以下「養豚経営者等」という。）の協力の下、早期に全面的なワクチン接種の中止がなされ、国内における豚コレラの撲滅が達成されるよう次の対策を実施する。

- (1) 農場への立入検査、異常豚の摘発と当該豚の病性鑑定及び定期的な抗体保有状況調査を実施するとともに、市町村及び養豚経営者等からの異常豚の早期通報体制を確立する。
- (2) 豚コレラの発生時には、豚（いのししを含む。以下同じ。）のと殺又は殺処分（以下「殺処分等」という。）によるまん延防止を基本とし、緊急ワクチン接種は、豚コレラの潜在化の防止に十分配慮したうえ、まん延防止に有効であると判断される場合に速やかに実施する。
- (3) 撲滅へ向けた具体的な推進方策を検討するとともに、養豚経営者等への防疫対策の周知徹底を図るため、全国段階に学識経験者、養豚関係団体、家畜衛生関係団体、都道府県、国関係者等を構成員とする豚コレラ撲滅全国検討委員会（以下「全国委員会」という。）を設置し、都道府県段階に同様の構成員からなる豚コレラ撲滅都道府県検討委員会を設置する。また、円滑な防疫の推進について、技術的な観点から検討を行うため、全国委員会に学識経験者、国関係者、その他全国委員会が必要と認めた者を構成員とする技術検討会を設置する。

### 2 豚コレラ撲滅の推進方策

都道府県は、本要領に基づいて都道府県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を定めるものとし、当該要領は、以下の事項を内容とする豚コレラの発生予防措置及びまん

延防止措置を定めるものとする。

### 3 発生予防のための防疫措置等

#### (1) 清浄性維持確認調査

都道府県は、次の検査及び調査を実施することとする。

##### ア 臨床検査による異常豚の摘発と病性鑑定

原則として毎年度1回、全ての養豚農場において臨床検査による異常豚の摘発及び当該豚の病性鑑定を実施する。

##### イ 抗体保有状況調査

###### (ア) 一貫経営農場及び肥育経営農場に係る調査

毎月、任意抽出した別に定める頭数のと畜場搬入前後の豚について抗体保有状況調査を実施する。その結果、ワクチンの接種状況が不明な抗体陽性豚を確認した場合には、当該豚のワクチン接種歴を確認するとともに、必要に応じて同居豚の臨床検査、抗体検査及び病性鑑定を実施する。

###### (イ) 繁殖経営農場及び種豚農場に係る調査

少なくとも6ヶ月に1回、任意抽出した10頭の豚について抗体保有状況調査を実施する。また、家畜改良増殖法（昭和25年法律第209号）第4条第1項に基づく種畜検査が実施される豚については、検査のために採材される血液を用いた抗体保有状況調査を実施する。

###### (ウ) 野生いのししに係る調査

関係機関、関係団体等の協力も得て、可能な限り抗体保有状況調査を実施する。

#### (2) 発生予防のための指導等

都道府県は、次の指導及び確認を行うこととする。

##### ア 農場における衛生管理の徹底等

(ア) 養豚経営者に対し、家畜防疫対策要綱（平成11年4月12日付け11畜A第467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の別記4の種豚場等養豚施設における衛生対策指針に基づく衛生管理の徹底を図り、豚の出荷及び導入、農場への人及び車両の入退出等を記録した衛生管理簿を整備し、保存するよう指導する。

(イ) 法第51条に基づく立入検査、巡回指導、診療獣医師からの報告等により衛生管理状況を定期的に確認する。

## イ 関係場所での衛生管理の徹底等

### (7) 飼料関係施設

飼料供給関係者に対し、飼料製造施設、飼料中継基地等飼料関係施設での入退出時の車両等の消毒に努めるとともに、車両運行記録を整備し保存するよう指導する。

### (4) と畜場及び家畜市場

と畜場関係者及び家畜市場関係者に対し、当該施設での入退出時の車両等の消毒、出荷豚積降し場所及び係留場所の消毒に努めるとともに、出荷又は上場豚の記録を整備し、保存するよう指導する。

## ウ 厨芥残さ等の加熱処理

厨芥残さ等を給与している養豚経営者に対し、給与前に加熱処理（70℃、30分以上又は80℃、3分以上）を行うよう指導する。

## 4 まん延防止のための防疫措置

都道府県は、次のまん延防止措置を実施することとする。

### (1) 発生に備えた防疫体制の整備

発生時のまん延防止措置の実施体制の事前点検並びに緊急連絡網の整備及び本連絡網の養豚経営者等への周知徹底を図る。

### (2) 異常豚の通報

養豚経営者等に対し、飼養豚に発熱、食欲不振、下痢、異常産等の異常を認めた場合には、まず豚コレラを疑い、直ちに家畜保健衛生所（以下「家保」という。）に通報するよう指導を徹底する。

### (3) 通報を受けた場合の措置

直ちに通報のあった農場に立入り、飼養頭数の確認及び病性鑑定指針（平成10年10月22日付け10畜A第1937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に基づく検査を実施する。また、病性決定までの間、当該農場の飼養豚全頭の隔離、消毒並びに人及び車両の入退出の自粛を指導するとともに、3の(2)のアの(7)の衛生管理簿に基づく疫学調査を行い、豚コレラの発生に備えた初動防疫措置の実施について検討する。

### (4) 病性決定時のまん延防止措置

発生都道府県に豚コレラ中央対策本部（県庁）及び豚コレラ発生現地対策本部（家保）を設置し、都道府県関係機関及び市町村に連絡する。また、次に掲げるまん延防止措置の実施に当たっては、関係者及び関係機関と密に連

携を取って行うこと。

ア 患畜、疑似患畜等の範囲

(7) 患畜

法第2条第2項に規定する患畜は、次の豚とする。

- a 病性鑑定指針に基づき豚コレラにかかっていると診断された豚
- b aの豚と同居し、豚コレラの臨床症状を呈している豚

(4) 疑似患畜

法第2条第2項に規定する疑似患畜は、次の豚とする。

- a 患畜と同一農場（飼養管理形態等により、家畜防疫員が豚コレラの患畜又は疑似患畜が飼養されている豚舎と防疫上区別することが可能と判断した豚舎を除く。以下同じ。）で飼養されている豚
- b 過去（患畜が異常を呈した日を起算日とする。以下同じ。）14日間に発生農場で飼養されていた豚
- c 患畜より過去14日間に採精された精液を用いて、人工授精を行った豚

(7) 患畜となるおそれがある豚

法第14条第3項に規定する患畜となるおそれがある家畜（疑似患畜を除く。）は、次の豚とする。

- a 飼養管理形態等により、家畜防疫員が豚コレラの患畜が飼養されている豚舎と防疫上区別することが可能と判断した豚舎で飼養されている豚。
- b 疑似患畜と同一農場で飼養されている豚及び過去14日間に疑似患畜と同一農場で飼養されていた豚
- c 過去14日間に疑似患畜と同一農場で飼養されていた豚と同居している豚
- d 疑似患畜より過去14日間に採精された精液を用いて、人工授精を行った豚
- e 過去14日間に発生農場に豚を出荷した農場の豚及び過去14日間に患畜に人工授精を行った精液を採精した豚
- f その他、家畜防疫員が豚コレラのまん延を防止するため必要と認められた豚

イ 公示、報告又は通報

法第13条の規定に基づき、公示、報告及び通報を行うとともに、家畜

衛生関係団体、養豚関係団体等と連携を図りつつ、豚コレラ発生に係る情報を周知する。なお、病性の決定までに時間を要し、かつ、豚コレラの疑いが強い場合には、法第13条の規定に基づく公示及び通報に先立って国への報告を行い、その取扱いを協議する。

#### ウ 疫学関連農場等への立入検査

家畜衛生関係団体、養豚関係団体、関係都道府県等と連携を図りつつ、疫学関連農場、移動制限区域内の農場、関係場所等の立入検査を実施する。

#### エ 移動制限

法第32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豚コレラ発生農場を中心とした概ね半径3kmの区域及び10kmの区域を防疫区域及び監視区域（防疫区域に接する区域で防疫区域を除く区域。）として時期を失することなく移動制限を行い、区域の設定に当たっては地理的条件、豚の飼養状況等を考慮する。また、移動制限の期間は、最終発生例についての措置後、防疫区域については40日間、監視区域については15日間とし、当該期間中に新たな発生を認めない場合には、移動制限を解除するものとする。

なお、所要の措置を講ずる等により家畜防疫員が防疫上支障がないと認める豚は、最終発生例についての措置後、防疫区域については21日目以降、監視区域については7日目以降と畜場への出荷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し、許可の際にはと畜場出荷許可書を交付する。

#### オ 緊急ワクチン接種

防疫区域内の農場（発生農場を含む。）及び疫学関連農場を対象として、畜産局衛生課（以下「衛生課」という。）と協議の上、原則として法第30条の規定に基づき飼養豚全頭に接種し、接種した豚には耳標等で標識する。接種豚については他の農場への移動自粛を指導するとともに、接種豚から産出された豚（と畜場へ直接出荷する豚を除く。）には耳標等で標識する。

なお、所要の措置を講ずる等により家畜防疫員が防疫上支障がないと認める豚は、緊急予防接種後21日目以降と畜場への出荷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し、許可の際にはと畜場出荷許可書を交付する。

#### カ 殺処分等

患畜及び疑似患畜の殺処分等は、まん延防止の観点から、発生時の病勢、疫学的考察等に基づいて、迅速かつ効果的に実施するものとし、この際には、患畜及び疑似患畜の所有者に対して、法第18条の規定に基づくと殺

の届出を直ちに行うよう指導し、当該届出が直ちに行われない場合にあっては、法第17条の規定に基づく殺処分を実施する。

死亡豚及び殺処分等された豚については、豚の飼養されていた農場敷地内で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昭和26年農林省令第35号。以下「規則」という。）第29条の基準に従って埋却処分することとする。これが困難な場合には、密閉式車両又はこれに準ずる方法で他の場所に運搬し、同基準により焼却又は埋却するか、又は、規則第17条の基準に適合する施設及び方法により化製する。

#### キ 隔離等

移動制限区域以外で飼養されている患畜となるおそれがある豚（アのウのb及びcに限る。）は、法第14条第3項の規定に基づき10日間農場外へ移動させてはならない旨を指示する。なお、隔離の課せられた農場に飼養されている豚のうち、その飼養管理形態等により疑似患畜が飼養されている豚舎と防疫上区分することが可能と家畜防疫員が判断した豚舎で飼養されている豚及びアのウのcの豚にあっては、と畜場へ出荷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

その他の患畜となるおそれがある豚は、自主的な隔離を指導することとし、必要に応じて隔離を指示する。

#### ク 飼養豚のとう汰等の指導

家畜防疫員又は家畜防疫官（以下「家畜防疫員等」という。）は、ア、イ及びウの豚にあってはとう汰の上、焼却、埋却等するよう、また、エの物品にあっては焼却、埋却又は消毒するよう指導する。なお、その実施に当たっては、あらかじめ衛生課と協議するものとする。

ア) 防疫区域に所在し、家畜防疫員等が豚コレラのまん延を防止するためにとう汰する必要があると判断した豚

イ) 防疫区域及び監視区域内に所在し、家畜防疫員等が出荷等ができないためにとう汰する必要があると判断した豚

ウ) ア)及びイ)以外の豚で、家畜防疫員等が豚コレラ発生農場と疫学的に関連がある等豚コレラのまん延を防止するためにとう汰する必要があると判断した豚

エ) 家畜防疫員等が豚コレラのまん延を防止するために焼却等の必要があると判断した物品

#### ケ 移動制限区域内の農場、疫学関連農場、関係場所における防疫措置

- (ア) 移動制限区域内の農場、疫学関連農場に対し、農場への人及び車両の入退出の制限の徹底、入退出車両の消毒の徹底を指導する。
- (イ) 移動制限区域内の農場、疫学関連農場に飼料を配送する飼料供給関係者に対し、配送車両の消毒の徹底（車体消毒を含む。）、豚コレラのまん延を防止するための配送ルートの見直しを指導する。
- (ウ) 移動制限区域内のと畜場においては、入退出車両の消毒（車体消毒を含む。）の徹底を指導する。
- (エ) 法第33条の規定に基づき、防疫区域内での家畜市場（豚を対象とするものに限る。）の開催を中止する。また、監視区域内で家畜市場を開催する場合は、入退出車両の消毒の徹底を指導する。

## 5 その他

### (1) 豚コレラ発生農場における豚の再導入

都道府県は、移動制限解除後、豚コレラ発生農場に豚が導入された場合は、当該豚の導入後概ね40日目に抗体検査等を実施し、清浄性を確認する。

### (2) 法第50条の規定に基づく豚コレラワクチンの使用に係る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受けている農場等での清浄性の確認

ア 都道府県は、原則として許可期間中少なくとも1回、許可を受けている農場の立入検査を実施し、ワクチンの使用状況の聴取、異常を示す豚の発生状況の聴取、血液の採材等を行い、農場の清浄性を確認する。

イ 都道府県は、養豚経営者等に対し、豚の導入時には導入元農場の豚コレラワクチンの使用の有無を確認し、ワクチン接種豚を導入する場合には、ワクチンを使用した旨の耳標による標識が装着され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とともに、管轄家保に連絡するよう指導することとし、ワクチン接種豚を導入する農場については、立入検査を実施し、(1)と同様に農場の清浄性を確認する。





1 2 - 9 6

平成12年10月1日

都道府県畜産主務部長殿

農林水産省畜産局衛生課長

豚コレラ防疫対策の推進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について

このことについて、今般、「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の全部改正について」（平成12年10月1日付け12畜A第2762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が通知されたことから、その円滑な実施を図るため、別添のとおり豚コレラ防疫対策の推進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を定めたので、御了知願いたい。

(別添)

## 豚コレラ防疫対策の推進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

この通知は、都道府県が実施する豚コレラの発生予防及びまん延防止のための防疫措置の迅速かつ円滑な実施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を定めたものであり、都道府県は、地域の実態を踏まえて以下の事項に基づいて効果的、効率的な防疫措置を実施するものとする。

### I 通常時の防疫措置

通常時の防疫措置として以下に掲げる調査等を実施するとともに、養豚農場、と畜場、家畜市場、飼料関係施設、化製場等に関する情報を整備するとともに家畜保健衛生所（以下「家保」という。）管轄ごとにその所在地を地図上にプロットし、万一の発生時の円滑な防疫に資することとする。

養豚農場については、所在地、連絡先、豚の飼養頭数、豚の出荷先（と畜場、出荷農場等）、豚の導入元、診療（管理）獣医師名、飼料購入元、薬品購入元、残飯給与（購入元、生・加熱の別）等を記載した養豚農場台帳を整備し、また、その他の養豚関連施設についても養豚農場と同様に所在地、連絡先、搬入、上場、配送又は集荷地域名等に関する情報を記載した台帳を整備することとする。

#### 1 清浄性維持確認調査

##### (1) 異常豚の摘発

##### ア 養豚経営者、関係団体等との連携

家畜伝染病発生時の対応を検討するための調整会議等を開催し、養豚経営者、関係団体、民間獣医師、化製業者、公衆衛生関係者、市町村担当者等との連携を図りつつ、豚の伝染性疾病の発生状況、防疫対策等についての情報提供に努め、異常豚の早期発見について協力を依頼することとする。

##### イ 立入検査

原則として毎年度1回、家畜伝染病予防法（昭和26年法律第166号。以下「法」という。）第51条の規定に基づく立入検査、豚コレラ撲滅対策事業における技術指導等により都道府県内の全ての養豚農場に立入ることとし、その際には、養豚農場台帳の写し、記録簿、消毒液、体温計等を持参することとする。養豚農場への立入りに際しては、衣類、靴、検査器具、車両（特にタイヤ）等の消毒に留意し、当該農場に入場時の規定が定められている場合はこれを遵守することとする。検査の実施に当たっては以下の点に留意し、あわせて養豚農場台帳の記載内容を確認、更新することとする。

- (7) 臨床観察では豚個体ではなく豚群（豚房）全体の状況を観察する。
- (4) 元気、食欲、発育、同腹豚の斉一性、挙動、皮膚色、ふん便、分娩状況等で通常以上の頻度で異常が出現していないかどうかを飼養者の報告をもとに観察する。

ウ 摘発すべき臨床的異常豚

通常以上の頻度で次に掲げる臨床的な異常を示す豚が発見された場合、豚房単位に異常豚の状況と発生頭数、一豚房に限局しているのか、拡大傾向にあるのか等について詳細に観察、記録するとともに、1農場当たり少なくとも30頭以上の豚について体温測定及び白血球数測定を行う。また、最近の他農場からの豚の導入状況（導入元、導入頭数、導入豚の検査成績等）、当該導入豚と同一豚房に飼養されている豚の臨床症状を調べる。これらの結果から豚コレラが疑われる場合には、症状の種類及びその程度に偏りが生じないよう層別抽出法（月齢層別、用途層別）によって豚を選抜し、病性鑑定を実施することとする。選抜豚が多数に上る場合には、まず、症状の程度が重篤なものから優先的に病性鑑定を実施することとする。

(7) 発熱、元気消失、食欲減退

- (イ) 便秘、次いで下痢
- (ロ) 結膜炎（目ヤニ）
- (エ) 歩行困難、後躯麻痺、痙攣
- (オ) 耳翼、下腹部、四肢などの紫斑
- (カ) 削瘦、被毛粗剛（いわゆる“ひね豚”）
- (キ) 異常産の発生
- (ク) 以上のいずれかを伴う死亡

(2) 抗体保有状況調査

ア 一貫経営農場及び肥育経営農場に係る調査

毎月、都道府県内の養豚農場戸数ごとに定められる年間検査頭数（別添1）を勘案して、と畜場出荷前後の豚から採材し、豚コレラの診断マニュアル（別紙）を参考に抗体価を測定する。

ワクチン接種状況が不明な抗体陽性例を確認した場合には、ワクチン接種歴を確認することとする。ワクチン接種を行っていない場合には、直ちに当該豚の由来農場の豚に対して法第14条第3項の規定に基づく隔離を指示し、豚コレラの診断マニュアルを参考に病性鑑定（疫学調査、臨床検査、抗体検査等）を行うこととし、ワクチン接種を行っ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場合には、法第50条違反として措置することとする。

イ 繁殖経営農場及び種豚農場に係る調査

少なくとも6ヶ月に1回、無作為抽出した10頭の豚（と畜場の出荷前後の豚、ワクチン未接種繁殖雌豚から産出された豚等抗体陰性であると考えられる豚）から採材し、豚コレラの診断マニュアルを参考に抗体価を測定する。

ワクチン接種状況が不明な抗体陽性例を確認した場合には、アに準じた措置を講ずることとする。

#### ウ 野生いのししに係る調査

都道府県鳥獣行政担当主務課、猟友会等と連携を図り、狩猟捕獲時又は有害鳥獣駆除時に得られる血清を用いた抗体保有状況調査を実施し、あわせて狩猟頭数、死亡事例、推測生息頭数の増減の情報等を収集することとする。

## 2 衛生管理の指導

### (1) 養豚農場における衛生管理の徹底等

養豚経営者に対し、農場、豚舎出入時の消毒の徹底、農場への立入制限（外来者用の衣類、ゴム長靴の常備及びいのしし、犬、猫等他動物の侵入防止のための農場周囲の囲障（ネット、フェンス等）等の設置を含む。）、出荷元の明確な豚の購入を行うよう、また、次の事項について指導することとする。

また、診療（管理）獣医師に対し、概ね月1回、異常豚の有無、衛生管理簿の記録の状況、豚の飼養状況等を家保に報告するよう依頼することとする。

#### ア 消毒

踏込消毒槽及び車両のタイヤ消毒槽の消毒液には両性石炭等を、また、手指の消毒液には逆性石炭等を用い、2～3日間隔で新しく作成したものに交換する。消毒槽は、消毒液に浸る十分な深さ及び長さを有するものを設置する。いずれの場合も消毒効果を持続させるために、踏込消毒槽は直射日光の当たらない場所に設置するよう努め、埃や雨水の浸入を防ぐとともに、付着している汚泥を事前に洗い落とす等する。また、冬季の気温低下により消毒液の凍結が想定される場合には、踏込消毒槽及び車両のタイヤ消毒には粉末石灰等を利用する。

#### イ 衣類等の交換

衣類、ゴム長靴等はできる限り場内専用のもに交換することとし、豚舎毎に着替える又は消毒する等して豚舎間の疾病の伝播を防止する。また、検査豚舎及び病豚隔離豚舎への出入りの際は、消毒の徹底とともに、衣類、ゴム長靴等は専用のもに取り替える。

#### ウ 衛生管理簿の記録及び保存

立入検査等の機会を利用して、次の事項について記録し、少なくとも過去40日間保存する。

(7) 豚の導入年月日、導入元、導入頭数

- (イ) 出荷年月日、出荷先、出荷頭数
  - (ウ) 車両及び人の入退場の記録
  - (エ) 精液の購入年月日、購入先、種付け年月日、種付け豚
  - (オ) 精液の出荷年月日、出荷先
  - (カ) ひね豚、死亡豚の頭数
  - (キ) 飼料、敷料の搬入状況
  - (ク) 残飯等の搬入状況
- (2) 関係場所での衛生管理の徹底等

と畜場、家畜市場、家畜共進会、飼料関係施設等の養豚関連施設においては、車両消毒施設を設置し、入退出時の消毒を実施するとともに、少なくとも過去40日間の搬入、上場、出品又は配送農場名及び車両運行記録を保管するよう指導することとする。また、開場又は開設前後の施設の洗浄、消毒の徹底を業務規定等に明記するよう指導することとする。

## II 発生時の防疫措置

### 1 発生に備えた防疫体制の整備

豚コレラを疑う症例（以下「疑似症例」という。）が発生した場合に備えて、初動防疫体制を迅速かつ円滑に実施するため、次の事項についてその実施状況及び整備状況について定期的に確認することとする。

- (1) 臨床的異常豚の早期発見、早期通報を促すため、養豚経営者、畜産関係団体、民間獣医師、飼料販売業者、動物用医薬品販売業者、化製業者、公衆衛生関係者等への情報提供及び緊急連絡先の周知
- (2) 家保、都道府県畜産主務課、都道府県関係機関、市町村、畜産関係団体、と畜場、家畜市場、飼料関係業者、化製業者、防疫資材販売業者、国等への緊急連絡体制
- (3) 家畜死体処理施設の所在地、処理能力の確認

患畜、疑似患畜又はとう汰豚を自都道府県外へ運搬することが想定される場合には、事前に搬入を予定している焼埋却場所、化製場の所在する都道府県に対して次の発生時の防疫対策について事前に説明するとともに、畜産関係団体、化製業者、運搬業者、公衆衛生関係者等との調整会議を開催することとする。

- ア 予想される発生の状況（発生頭数、死亡頭数、移動制限区域の農場戸数、移動制限区域の飼養豚頭数等）
- イ 豚の殺処分方法（使用薬剤等）
- ウ 殺処分豚運搬のための車輛の手当方策
- エ 車両への搭載及び車両からの取り降ろし時の防疫措置

- オ 処理場への運搬経路
- カ 処理場での消毒措置
- キ 処理場への運搬時の関係都道府県および業者との連絡調整方法
- ク その他（化製品の処分方法）

(4) 疑似症例通報時の立入検査に携行すべき防疫資材の確認

〔長靴、防疫衣類、手袋、体温計、採材用器具（解剖器具、採血器具等）、保定具、筆記用具、カメラ、携帯電話、消毒液、噴霧器、バケツ、ポリバケツ、ビニール袋（大、小）、ビニールシート、アイスボックス等〕

(5) 病性鑑定材料が搬入された場合に備えた検査機器等の点検・整備（別添2）

2 疑似症例の通報

Iの1の(1)のウの(ア)～(ク)に掲げる臨床的な異常を示す豚が通常以上の頻度で出現した場合には、直ちに家保に連絡するよう養豚経営者、養豚関係者等を指導することとする。

3 通報を受けた場合の対応

養豚経営者、獣医師等に対し、疑似症例発生の通報があつて以降病性鑑定結果が得られるまでの間は、いたずらに情報が流布され無用の混乱を招くことがないよう情報管理を行うよう指導するとともに、以下の対応を実施することとする。

(1) 家保の対応

ア 疑似症例通報受領時の対応

疑似症例を飼養している農場（以下「通報農場」という。）について、家保に整備されている養豚農場台帳の記録内容と照合しつつ疑似症例の症状、発症月齢、症状の初発時期、発症頭数、飼養頭数、豚の移動状況等を聞き取り、記録することとする。

イ 通報者への指導事項

(ア) 養豚経営者が通報した場合

家畜防疫員は、法第14条第3項の規定に基づき農場内のすべての豚の隔離を指示し、直ちに家畜防疫員が農場へ出向く旨を知らせることとする。また、家畜防疫員が農場へ到着するまでの間に人及び車両の入退出を制限し、少なくとも農場出入り口及び豚舎出入り口に踏込消毒槽を設置（既に設置されている場合には、消毒液を取り替える）するとともに、衛生管理簿を整理するよう指導することとする。

(イ) 診療（管理）獣医師が通報した場合

家畜防疫員は、(ア)の指導事項を養豚経営者に伝達するよう獣医師に依頼する。また、獣医師に対しては、当該農場にとどまり、豚房ごとに豚の臨床症状を観察、記録し、症状の重篤な豚について体温測定を実施するよ

う依頼する。また、臨床的異常豚の病性鑑定が終了するまでの間は獣医師の他農場の出入りを自粛するよう要請することとするが、やむを得ない事情により他農場へ入場する場合には、衣類の着替え、手指、靴底及び車両の消毒等を確実にを行い、診療農場、経路等について確実に記録するよう依頼することとする。

ウ 都道府県畜産主務課家畜衛生主任者（以下「県主任」という。）への連絡事項

家保所長は通報農場と県主任との間の連絡員を置き、連絡員はまず、県主任に疑似症例の発生に関する情報（Ⅱの3の(1)のアで聞き取った事項等）、家畜防疫員が通報農場に向かっている旨及び通報農場周辺の農場の状況について養豚農場台帳に基づき連絡することとする。その後、通報農場から情報を入手次第随時連絡することとするが、連絡時刻及びその内容については正確に記録し、的確な防疫の実施に努めることとする。なお、自都道府県の他家保、国、畜産関係団体等への連絡、報告は、県主任が自ら行うか又は県主任の指示を受けて家保所長又は連絡員が行うこととする。

エ 初動防疫の実施に向けた準備

(7) 養豚農場台帳による周辺農場の確認（位置及び飼養頭数）

家保に整備されている養豚農場台帳に基づき、通報農場の周囲の養豚農場の位置、飼養頭数等を整理することとする。

(イ) 豚コレラ発生現地防疫対策本部の設置準備

各班の担当責任者、実施担当者等をあらかじめ選定することとする。

(2) 県主任の対応

ア 家畜防疫員の待機

疑似症例が患者と診断された場合に備えて、通報農場の管轄家保以外の家保所長に対して緊急時の連絡体制の確認を指示し、また、防疫対応の実施に支障が生ずると想定される場合には法第48条の2の規定に基づき他の都道府県知事に対して家畜防疫員の派遣の要請を検討することとする。

イ 初動防疫の実施に必要な準備

(7) 病性鑑定実施体制の始動、確認

病性鑑定の実施に備えてあらかじめ凍結切片作製機器の電源を入れるとともに、必要器具、器材の準備状況を確認するよう病性鑑定施設に連絡することとする。

(イ) 家畜衛生試験場への病性鑑定材料の搬入手順の確認

家畜衛生試験場への病性鑑定材料の搬入に備えて、搬送者、搬送手段等について確認することとする。

(ウ) 県豚コレラ防疫対策本部の設置準備

各班の担当責任者、実施担当者等をあらかじめ選定することとする。

4 通報農場到着後の対応

(1) 家畜防疫員の対応

ア 携行防疫資材

家畜防疫員は、少なくともⅡの1の(4)の防疫資材を携行し、当該資材を通報農場から持ち帰った際には、消毒等により豚コレラのまん延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こととする。

イ 通報農場への立入

家畜防疫員は、豚コレラのまん延を防止するため、農場の外又は農場からの退場時の車両消毒（特にタイヤ）を考慮した場所に車両を駐車し、農場へ立入ることとする。

ウ 飼養豚の臨床検査及び疫学情報の収集

家畜防疫員は、Ⅰの1の(1)のイ及びウに準じて臨床検査、疫学情報の収集を行い、必要があれば衛生管理簿の記録を確認することとする。臨床症状の重篤な豚及び疑似症例と同居している豚について体温測定を行うとともに必要に応じて血液を採取することとする。また、豚の品種、大きさ（月齢）別に豚の頭数を確認し、記録することとする。

エ 連絡員への連絡

家畜防疫員は、疫学情報及び豚の臨床検査から疑似症例が豚コレラの患者又は疑似患者であることが否定できない場合には、その旨を連絡員に連絡し病性鑑定材料の採取を行うこととする。また、材料採取後は病性鑑定施設へ運搬する旨（到着予定時間を含む。）を連絡することとする。

(7) 病性鑑定は任意で行うことを原則とするが、飼養者の同意が得られない場合には疑似症例を疑似患者として取扱い、法第20条の規定に基づく病性鑑定を行うこととする。法に基づく病性鑑定を行う場合には、その後の家畜の評価額を決定する際の資料とするため、豚の写真を複数撮影する。

(4) 病性鑑定のための剖検は、ウイルスの拡散を防止するため可能な限り病性鑑定施設で実施することが望ましいが、豚の搬送が困難又は多数の検体を採取する必要がある場合には、当該農場内で採材する。

(ウ) 通報農場内で病性鑑定を行う場合には、次の点に留意して行う。

a 疑似症例飼養豚舎以外の豚舎から十分離れている等万が一体液等が飛散した場合も考慮して場所を選択

b 病性鑑定前に場所の周囲に十分量の消毒液を散布

c ビニールシートの上に消毒液を浸した布等を敷き、その上に豚を置く



d 採材時には検体の取り違えを防止するために、豚ごとに調査、検査記録を記載

e 採材後、豚をビニールシートでくるみ、ポリバケツ等消毒液を散布又は浸せきできる容器に入れ、場所の周囲に十分量の消毒液を散布

なお、家畜防疫員は、疫学情報及び豚の臨床検査から疑似症例が豚コレラの患畜又は疑似患畜でないと判断した場合には、その旨を連絡員に連絡し、病原体の散逸防止に留意して、当該症例を病性鑑定施設に運搬し、通常の病性鑑定を実施することとする。

## (2) 連絡員の対応

家畜防疫員から疑似症例に関する情報を受領した場合には、家保所長及び県主任に連絡することとする。

## (3) 県主任の対応

ア 疑似症例が豚コレラの患畜又は疑似患畜であることが否定できない旨の連絡を受けた場合

県主任は、豚コレラ感染が否定されるまでの間は疑似症例が飼養されていた農場の豚については法第14条第3項の規定に基づき確実に隔離されていることを連絡員に確認する。

通報農場の管轄家保以外の家保所長に対して家畜防疫員の待機、病性鑑定施設に対して病性鑑定の実施の準備（到着予定時間を含む。）を指示する。

また、畜産局衛生課（以下「衛生課」という。）には、疑似症例が患畜又は疑似患畜であると判断され、かつ、家保から報告される養豚農場台帳に基づく情報から、緊急予防接種が豚コレラのまん延防止上必要であると判断される場合を想定し、届出農場及び周辺農場の飼養頭数、患畜・疑似患畜頭数、処理方法及びその能力、移動制限区域内の農場戸数等について報告する。衛生課は都道府県の報告内容に基づき、社団法人全国家畜畜産物衛生指導協会（以下「全国衛指協」という。）、動物検疫所に連絡を取り、直ちに緊急予防液の必要数量、受渡方法について調整することとする。

イ 疑似症例が豚コレラの患畜又は疑似患畜でない旨の連絡を受けた場合

通報農場の管轄家保以外の家畜防疫員の待機を解除するとともに、病性鑑定施設にその旨を連絡することとする。また、衛生課には、疑似症例の発生及びその対応について連絡し、その概要については取りまとめ次第報告することとする。

## 5 病性鑑定の実施と家畜衛生試験場との連携

県主任は、疫学調査、臨床症状、血液検査等から豚コレラが疑われる場合には、衛生課に報告し、衛生課は、県主任からの報告事項を家畜衛生試験場に連絡する。

病性鑑定は、必要に応じて家畜衛生試験場の技術的助言を受けつつ病性鑑定指針に基づき実施することとする。

なお、県での病性鑑定で豚コレラ感染が否定できない場合には、衛生課は、直ちに家畜衛生試験場で病性鑑定を実施する旨を同試験場に連絡し、搬入すべき材料、必要な疫学情報等について協議し、協議結果を県主任に連絡する。

## 6 豚コレラ確定診断後の措置

県主任は、通報農場での臨床検査結果、疫学調査結果、都道府県及び家畜衛生試験場の病性鑑定の結果等から疑似症例が豚コレラの患者と診断された場合には衛生課、県内関係機関に連絡し、次の措置を並行して行うこととする。

### (1) 防疫対策本部の設置

家保に豚コレラ発生現地防疫対策本部、都道府県庁（畜産主務課）に県豚コレラ防疫対策本部及び農林水産省に豚コレラ中央防疫対策本部（以下「中央本部」という。）を設置し、担当責任者、作業分担、指示系統、連絡方法等について確認することとする。各本部の主たる構成は次のとおりとする。

#### ア 豚コレラ発生現地防疫対策本部

本部長の下に次の各班をおく。

- ・連絡調整班（畜産課、関係者との連絡調整をする）
- ・追跡班（関連農場、関連場所を調査し、防疫上の指示をする）
- ・発生地班（一定の防疫措置終了までの間、発生農場に常駐する）
- ・周辺地班（移動制限区域内農場の立入検査、必要に応じてと畜場出荷許可をする）
- ・庶務班（経理、防疫資材の出納事務をする）

#### イ 県豚コレラ防疫対策本部

本部長の下に次の各班をおく。

- ・総務班（防疫方針の策定、情勢分析、関係機関等への連絡調整をする）
- ・情報班（情報の収集、広報資料の作成、広報連絡をする）
- ・防疫指導班（防疫指導、防疫資材の調達、防疫要員の動員をする）
- ・庶務班（経理、出納事務をする）

#### ウ 豚コレラ中央防疫対策本部（中央本部）

- ・総務班（防疫方針の企画・決定、情勢分析、関係機関等への連絡調整をする）
- ・情報班（情報の収集、広報資料の作成、広報連絡をする）
- ・防疫指導班（防疫指導、防疫要員の動員をする）
- ・現地調査班（発生現地の調査、指導をする）

- ・資材班（ワクチン手配、防疫資材の確保をする）
- ・庶務班（経理、出納事務をする）

#### エ 家畜衛生試験場

家畜衛生試験場は、必要に応じて病性鑑定、疫学調査、防疫措置等に関して技術的助言をする。

#### オ 動物検疫所

動物検疫所は、必要に応じて発生原因調査、輸入検疫強化、防疫措置支援等をする。

#### カ 動物医薬品検査所

動物医薬品検査所は、必要に応じて防疫資材確保、防疫措置支援等をする。

### (2) 公表・通報

ア 発表に先立って都道府県内のと畜場、家畜市場及び関係都道府県には事前に連絡し、農林水産省と都道府県の両方で同時に発表することとする。発表内容には、病名、発生頭数、発生の日時、発生の場所、発生の経緯、既に実施した防疫措置の概要、防疫対策本部の設置、関係者に対する協力要請、豚コレラは人体に対しては感染性がないこと等風評被害に対する内容を含む。

イ 法第13条第4項の規定に基づく「豚コレラ（患畜）発生」の旨を公示、通報及び報告するとともに、関係機関、関係団体等に連絡を行うこととする。

ウ 県内（管内）の生産者、関係者には市町村、関係団体の協力を得てチラシの配布（別添3）、インターネット等により迅速かつ正確な情報提供に努め、風評被害の防止に努めることとする。

エ 継続発生の場合もその都度同様の手続きを行うこととする。

### (3) 関係場所への立入検査等

ア 立入検査等に先立ち、該当農場（養豚農場台帳等により確認）、関係場所には、防疫措置の徹底、異常発見時の通報について関係団体・機関の協力も得て電話で確認することとする。

イ 次の場所の臨床検査、異常豚の血液検査を実施することとする。（(7)～(9)を優先して実施し、その後(エ)～(ケ)を実施。）

(7) 過去14日間の出荷先農場（出荷豚は疑似患畜として殺処分等を行い、病性鑑定を実施。精液販売の場合は販売先農場、家畜市場出荷の場合は当該出荷豚購入農場。）

(イ) 過去14日間の導入元農場（精液購入の場合は販売元農場、市場の場合は当該導入豚出荷農場。）

(ウ) 防疫区域内農場

(エ) 過去40日間の出荷先農場（精液販売の場合は販売先農場、家畜市場出

荷の場合は当該出荷豚購入農場。)

- (㉒) 過去14日間の家畜市場出荷があった場合の当該市場上場豚購入農場
- (㉓) 過去40日間の導入元農場（精液購入の場合は販売元農場、市場の場合は、当該導入豚出荷農場。）
- (㉔) 過去14日間の市場導入があった場合の当該市場上場豚出荷農場
- (㉕) 監視区域内農場
- (㉖) 車両等を介した疫学関連農場

#### (4) 移動制限

##### ア 移動制限区域の設定方法

移動制限区域は、概ね発生農場を中心とする半径3km以内の区域を防疫区域とし、半径10km以内の区域（防疫区域に接する区域で防疫区域を除く区域。）を監視区域として設定することとし、養豚農場の立地、農場間の豚の移動状況、関係者及び車両の運行経路、地理的境界等を考慮して、状況に応じてその範囲を拡大、縮小することとする。移動制限区域設定後は直ちに関係者、関係都道府県、国に通知し、その期間の起算日は告示日に係わらず移動制限が実質上開始された日を起算日とすることとする。

なお、豚コレラの継続発生により同一農場が異なる2つ以上の発生に関連して移動制限を受けた場合には、最も早く解除される移動制限区域の制限期間の措置を適用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が、継続発生の状況、継続発生農場との疫学的関連性がある等防疫上支障が生ずると想定される場合はその限りではない。

また、法第32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移入の制限を行う都道府県にあっては、移動の制限との整合性を図るよう留意することとする。

##### イ と畜場出荷を認める検査の実施に際しての留意事項

防疫区域、監視区域別に次の所要の検査等を実施し、豚コレラの感染が確認されない場合には、と畜場への出荷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し、許可の際にはと畜場出荷許可書（別添4）を交付することとする。

##### (7) 防疫区域

- a 疫学的関連の調査を実施（発生農場から豚の導入がある場合には、当該豚が患畜でない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こと。車両等を介した関連がある場合は、入場時の車両消毒等を実施していること。）。
- b 緊急ワクチン接種を実施しなかった場合、移動制限開始後14日目以降、抗体検査（30頭/農場）を実施。
- c 緊急ワクチン接種を実施した場合、移動制限開始後14日目以降、抗体検査（30頭/農場）を実施するとともに、体温40℃以上でかつ白

血球数  $1 \text{ 万/mm}^3$  以下に該当する豚を対象として、扁桃を用いた蛍光抗体法を実施。

d 出荷時（移動制限開始後 21 日目以降）臨床検査を実施。

#### (イ) 監視区域

a 疫学的関連の調査を実施（発生農場から豚の導入があつた場合には、当該豚が患畜でない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こと。車両等を介した関連がある場合は、入場時の車両消毒等を実施していること。）

b 出荷時（移動制限開始後 7 日目以降）、臨床的に異常がないこと。

発生農場から豚の導入があつた場合には、当該豚と同居している豚を中心に検査対象とし、車両等を介した関連がある場合には、車両の動線から最も近い豚舎を中心に検査を実施することとし、その他の場合には、検査頭数の少なくとも半数を繁殖用雌豚とするよう考慮することとする。出荷時の検査に当たっては、臨床検査を実施し、臨床的異常を認めない場合にのみと畜場出荷を許可することとする。

#### ウ と畜場出荷を認める場合の留意事項

出荷と畜場を同一とする豚については出荷する最小輸送単位ごとにと畜場出荷許可書を発行するとともに、と畜場を管轄する家保及び出荷と畜場に事前に連絡することとする。

#### エ 移動制限区域外の豚等の円滑な流通販売の確保

移動制限区域外の農場については、必要に応じて当該農場は発生農場と疫学的に関連がなく、また、臨床的にも異常のない旨を記載した証明を発行し豚及び豚肉の円滑な流通販売の確保を図ることとする。

#### (5) 発生農場での一般緊急措置

ア 農場敷地の出入り口での発生の掲示、門を閉じる、綱を張る等により立入禁止である旨を明らかとし、出入り口には踏み込み消毒槽を設けることとする。

イ 豚の隔離を確認する。

ウ 豚の処分、殺死亡豚の処理、消毒等に必要な人員、資材、薬品等の確保は生産者と連携して現地防疫対策本部が市町村、関係団体と積極的に協力して行うこととする。家畜防疫員は殺処分予定頭数、殺処分方法、死亡豚の処理方法、必要消毒量等の必要事項について同本部に連絡することとする。

エ ウイルス汚染のおそれのあるすべての物品及び場所について十分量の消毒液を散布することとする。

#### (6) 緊急予防接種

ア 協議するために必要な報告事項

発生農場及び周辺農場の飼養頭数、患畜・疑似患畜頭数、処理方法及びその能力、移動制限区域内の農場戸数、飼養頭数等について衛生課に報告する。

#### イ 緊急予防液等の受渡

アの協議の結果、緊急予防接種の実施が豚コレラのまん延防止上必要であると中央本部が判断した場合には、豚コレラ発生場所と豚コレラ予防液備蓄場所との距離、交通の便等を考慮の上、直ちに予防液等を豚コレラ発生都道府県に搬送するよう全国衛指協又は動物検疫所に連絡し、全国衛指協又は動物検疫所は予防液及び接種資材の都道府県への到着時刻等を中央本部に連絡することとする。

#### ウ 緊急予防接種の実施方法

接種については、発生農場との疫学的関連性の強弱及び地理的關係を考慮し、接種の優先順位を定めることとする。

接種に際しては少なくとも1豚房ごとに注射針を取り替えることとし、豚舎間のまん延防止措置（衣類の着替え、消毒の徹底等）に留意することとする。

実施に際しては、短時間に迅速かつ確実に接種することを心掛け、接種豚にはとりあえずスプレー等でマーキングして接種漏れがないよう注意し、その後、発生農場の豚を除く接種豚（と畜場直行豚は除く。）については耳標で確実に標識することとする。

防疫区域内では、原則として全ての農場、全ての豚を対象として実施するが、発生農場と疫学的関連がなく、豚コレラのまん延防止上支障がないと家畜防疫員が認める農場については、緊急予防接種対象農場から除外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また、防疫区域外の農場については、疫学的関連性の強弱を判断し実施する。

#### (7) と殺又は殺処分（以下「殺処分等」という。）

患畜及び疑似患畜については、短期間に殺処分等することが望ましいが、殺処分等後の豚の処理を考慮し、必要に応じ緊急予防接種も活用し、殺処分等後の死亡豚の処理に当たっては、処理施設の処理能力数を上回ることがないように留意することとする。

また、当該豚（死亡豚を含む。）の処分に当たっては、家畜共済への加入状況を家畜の所有者に確認し、加入している場合には農業共済組合又は共済事業を行う市町村と連携して円滑な処分に努めることとする。

#### ア 法第18条に基づく届出方法

疑似症例が患畜と診断され、当該患畜が豚コレラ互助金交付契約の対象豚である場合には、直ちに法第18条の規定に基づき届出を行うよう患畜の所

有者を指導することとするが、当該届出が直ちに行われなかった場合には、法第17条の規定に基づく殺処分命令を行うこととする。

#### イ 殺処分等の方法

(7) 家畜防疫員は、殺処分等の対象豚の所有者に対し殺処分命令書（別添5）、と殺指示書（別添6）を交付する。

(イ) 殺処分の場合には、処分に先立って豚の品種、大きさ（月齢）別に豚の頭数を確認し、評価の参考とするためそれぞれの代表的な豚の写真を複数撮影する。

(ウ) 殺処分の場合には、評価人の発生農場到着をまって、殺処分予定豚の評価を行うこととするが、その場合にはウイルスの散逸防止のための防疫措置に細心の注意を払う。

(ニ) 殺処分等は、畜舎内、あるいはその後の死体処理に便利な場所（車両に運搬する場合には車両付近で）で行うこととするが、なるべく公衆の目に触れず、その後の消毒措置を実施しやすい場所又は方法で行う。

(オ) 殺処分等は所有者の義務となっているが、その実施に当たっては市町村、関係団体等の協力も得て実施する。殺処分等は薬剤の接種、と殺銃の応用等の方法により、血液、体液等の散逸に留意して実施する。

#### (8) 発生農場外への豚の運搬方法

患者及び疑似患者は発生農場敷地内で処理することが望ましいが、これが困難な場合は、原則として殺処分等後に事前に選定した焼埋却場所又は化製場までコンテナ車両又は不浸透性のシートで包む等の方法により、搬入当日に処分できる頭数のみ運搬するよう指導することとし、運搬は、家畜防疫員による監視の下で行うものとする。

豚コレラのまん延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が講ぜられた処分豚については、法第32条の規定に基づく移動制限の対象から除外する。

#### ア コンテナ車両への搭載及び運搬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

(7) コンテナ車両内の洗浄、消毒液の散布

(イ) 豚の体表への消毒液の散布

(ウ) 豚舎と車両間には不浸透性のシートを敷き詰め畜舎周囲の汚染を防ぐ

(エ) 搭載後、車両全体（特にドア付近及びタイヤ）及び運転手の靴底を消毒

(オ) 搭載動線周囲への消毒液の散布

(カ) 万一の備えて運搬車両に消毒液を搭載

#### イ 不浸透性のシートで包む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

(7) 車両内の洗浄、消毒液の散布

(イ) 荷台床から荷台壁にかけて1枚のシートを敷く

- (り) シートへの消毒液の散布
- (ニ) 農場との距離が短くなるよう車両を配置
- (オ) 豚を包んで後、消毒液を散布
- (カ) アの(ニ)から(カ)を準用

#### (9) 死亡豚の焼埋却の方法

患者及び疑似患者の焼埋却は、法第21条の規定に基づき実施する。なお、法に基づく家畜死体の処理については、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の適用を受けないが、その趣旨も踏まえた措置に留意することとする。

##### ア 埋却の場合

深さ4～5mとし、死体の上は1mの覆土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参考：豚100頭（55kg/頭）で約10m×2.5m×2mを必要とする。

##### イ 焼却の場合

周囲地域の生活環境に与える影響が軽微となるように実施すること。

#### (10) 化製場での防疫措置

化製場での処分を行う場合には、事前に法第11条の規定及び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に適合した施設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た施設で行うこととする。また搬入前には化製場を管轄する家保、化製場に連絡するとともに、以下の対応を行うこととする。

- ア 施設搬入時の家畜防疫員（都道府県境を越える場合には搬出及び搬入都道府県の家畜防疫員）の立会
- イ 処理場所に到着した際の車両全体（特にドア付近及びタイヤ）及び運転手の衣類及び靴底を消毒
- ウ 豚の搬出時の消毒液の散布
- ニ 豚の搬出後の車両全体の洗浄、消毒
- オ 原料置場、レンダリング設備等の洗浄、消毒

#### (11) 汚染物品等の処理

発生農場の汚染物品については、法第23条の規定に基づき豚に準じた処分を行う他、消毒によりまん延防止に努めることとする。

汚染物品にはおよそ次のような物品が該当する。

- ア 豚の精液
- イ 豚の排泄物（ふん尿、堆肥、敷料）
- ウ 豚の飼養管理物品（飼料、管理・作業用具等）

#### (12) 隔離等

移動制限区域外の患者となるおそれがある豚は、法第14条第3項の規定に基づき10日を超えない範囲内の期間に限り隔離を指示し、隔離指示書（別添



7) を豚の所有者に交付することとする。なお、患畜となるおそれがある豚の病性鑑定、検査等によって又は農場飼養豚の臨床検査等によって豚コレラのまん延のおそれがないと確認できた場合には、隔離を解くこととする。

また、疫学関連農場由来の豚コレラを広げるおそれがある物品（精液、排泄物、飼養管理物品等）は豚の隔離が指示されている期間中の農場外への移動を行わないよう指導することとする。

#### (13) 飼養豚のとう汰等の指導

患畜となるおそれがある豚をとう汰の対象とする。

なお、とう汰豚は患畜又は疑似患畜に該当しないことから、とう汰豚の処理に当たっては、化製場等に関する法律及び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の規制を受けることから、既存施設の活用を第一に考え、当該施設の処理能力を超えるとう汰指導を行わないよう留意することとする。

#### (14) 消毒

発生豚舎及び関連施設では、豚の処分後直ちに不要な器具・器材の撤去、除糞、敷料搬出、清掃し、洗浄、消毒を行うこととする。散布した消毒液は少なくとも24時間放置後洗浄し、再度消毒液を散布し、さらに1週間後に消毒液を散布することとする。

畜舎周囲の湿潤な土地には消石灰（400 g/m<sup>2</sup>）又はさらし粉（200 g/m<sup>2</sup>）を粉剤のまま一面に散布する。乾燥している土地の場合には石灰乳（3 l/m<sup>2</sup>）を散布することとする。

貯留している尿・汚水溜はさらし粉を0.5%（w/v）濃度にして散布、攪拌することとする。

#### (15) 移動制限区域内農場、疫学関連農場、関係場所における防疫措置の指導

疫学関連農場における消毒の実施を指導することとする。

移動制限区域内の農場に飼料を運搬する場合には、当該農場のみの運搬車両とする又は当該農場への運搬を最後とする等して豚コレラのまん延を防止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とする。

また、消毒実施の利便を図るため、必要に応じて消毒ポイントを設置し、養豚関係車両の消毒を講ずることとする。

### 7 豚コレラ発生原因の検索

発生原因の検索のためには、国内における豚コレラの発生状況と関連して、臨床的異常豚が発見された日を起算日とした過去40日間の豚（精液を含む。）、車両、人の農場への移出入状況、残飯の給与状況等の状況を聞き取り、記録を保存し、分析することとする。

### 8 移動制限区域の解除

移動制限期間中に新たな発生を認めない場合には、移動制限区域内の農場への立入検査又は電話連絡によっていずれの農場も異常がないことを確認後に制限を解除することとする。移動制限措置を解除した場合には、その旨を公示するとともに国、関係都道府県、畜産関係団体等に報告、連絡することとする。

### Ⅲ 豚コレラ発生農場への豚の再導入

発生農場へ豚を再導入する場合には、移動制限解除後、豚舎の構造を考慮して多くの豚房に豚（導入時に抗体陰性を確認。）を導入後40日間飼養し、その間は豚の移動を自粛するよう指導することとする。その間は、当該農場を重点監視農場とし、臨床的に異常を示した豚は扁桃を用いた蛍光抗体法により豚コレラウイルスの検索を行う。導入後40日間経過した後、導入豚（30頭/農場）が抗体陰性であることを確認し、当該結果を国及び関係都道府県に報告するとともに、必要に応じて発生農場の清浄性が確認された旨を広く広報することとする。

### Ⅳ と畜場で発見時の防疫措置

#### 1 発見時の措置

と畜場においてと畜場法第10条の規定に基づく獣畜のと殺又は解体の検査において疑似症例と判断された場合には、直ちに家保に届け出るよう関係機関に事前に周知することとする。

届出を受けた家保は、疑似症例及び当該症例と同一農場由来の豚を法第14条第3項の規定に基づき隔離するよう指導することとする。また、当該豚を出荷した農場を通報農場に準じた防疫措置を行うこととする。

#### 2 豚の処分

病性鑑定の結果、疑似症例が豚コレラの患者と診断された場合には、患者及び患者と同一農場由来の豚について、原則として場所を移動せずに殺処分等し、豚体表面の消毒後、発生農場と同様の措置を行った上で処理施設に運搬することとする。

#### 3 と畜場及び関連施設の消毒

法第25条の規定に基づき消毒措置が完了するまでの間は法第33条の規定に基づきと畜場の開場を制限することとする。

#### 4 疫学関連農場の措置

患者診断前に、と畜場で患者と同居した後に農場に返送された豚については患者となるおそれがある豚としての防疫措置を実施することとする。

### Ⅴ 家畜市場、家畜共進会等での発生時の防疫措置

上場又は出品豚が豚コレラの患畜と診断された場合には、他の上場・出品豚は患畜となるおそれがある豚としての防疫措置を実施するとともに、患畜と診断された豚を飼養していた農場を発生農場として取扱い、そこを中心としたまん延防止のための措置を講ずることとする。

なお、発見場所（市場、会場）については、消毒措置のみを実施することとする。

#### VI 野生いのししで発生時の防疫措置

野生いのししでの豚コレラの感染が認められ、当該いのししの生息地域周辺の農場へのまん延の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飼養豚への緊急ワクチン接種を含めた防疫対応を衛生課と協議することとする。

## サンプリング方法

- 1 年間の検査頭数、サンプリング農場戸数、農場ごとのサンプリング頭数は次の表を参考とする。

県内農場戸数	検査頭数(年間)	サンプリング農場戸数	サンプリング頭数
～100戸	戸数×10頭	50戸	10頭
100戸～250戸	1,500頭	50戸	10頭
250戸～500戸	2,000頭	100戸	10頭
～500戸	2,500頭	200戸	10頭

- 2 サンプリング農場の選抜は、乱数表等によってランダムに行う。
- 3 農場で採材する場合、県内の農場を家保管轄区域毎に区分し、各家保の養豚農場割合に応じて家保ごとのサンプリング農場戸数を定め、乱数表等を用いて、10頭の豚をランダムに選定する。10頭以下の飼養規模の農場の場合は全頭を対象とする。

病性鑑定に必要な検査機器等の点検内容

1 蛍光抗体法

(1) 凍結切片作成

- ① ドライアイスの購入先はあるか
- ② ブロック作成用鋏、ピンセット、メス、シャーレ、濾紙等はあるか
- ③ アセトン（固定用及びn-ヘキサン冷却用）はあるか
- ④ n-ヘキサンはあるか
- ⑤ クリオスタットの冷却装置は正常か
- ⑥ コンパウンドはあるか
- ⑦ クリオスタットの刃は十分な枚数あるか
- ⑧ ハンドルはスムーズに可動するか
- ⑨ APSコート付きスライドガラスはあるか
- ⑩ 風乾用のドライヤーはあるか
- ⑪ 免疫染色用マニキュア（イムノペン、パップペン等）はあるか
- ⑫ 陽性コントロール（ワクチン株接種カバースリップ）及び陰性コントロールはあるか

(2) 蛍光染色

- ① 蛍光標識抗体はあるか
- ② 標識抗体の前処理に必要な器材（遠心用チューブ、非吸着性メンブランフィルター等）はあるか
- ③ リン酸緩衝食塩液はあるか
- ④ カバーガラス及びスライドガラス洗浄用ラック並びに洗浄用ドーズはあるか
- ⑤ 湿潤箱はあるか
- ⑥ 37℃インキュベーターはあるか
- ⑦ 緩衝グリセリン液はあるか
- ⑧ 封入用カバースリップ（非蛍光）及び陽性コントロール用スライドガラス（非蛍光）はあるか

(3) 蛍光観察

- ① 蛍光顕微鏡の芯出し及び駐合わせができているか
- ② 対物及び接眼レンズに異常はないか
- ③ 蛍光顕微鏡の換え水銀ランプはあるか
- ④ 干渉フィルターの波長は適切か
- ⑤ 干渉フィルターの寿命は大丈夫か
- ⑥ 写真撮影用の器材は可動するか

2 血液検査

(1) 希釈血液作成

- ① メランジュールはあるか
- ② 血球計算盤はあるか
- ③ 希釈液（チユルク液）はあるか
- ④ アルコール、ニール等の洗浄液はあるか

(2) 塗抹作成

- ① スライドガラス、カバーガラスはあるか
- ② 染色液及び染色用器具はあるか

(3) 顕微鏡観察

- ① 顕微鏡の芯出し及び軸合わせができていますか
- ② 対物及び接眼レンズに異常はないか
- ③ 顕微鏡の換え電球はあるか

3 ウイルス分離検査

(1) 乳剤作成等

- ① 乳剤作成のための器具（ハサミ、ピンセット、乳鉢等）は滅菌されているか
- ② 遠心用試験管はあるか
- ③ 接種材料前処理用のフィルターはあるか
- ④ ゲンタマイシン等の抗生物質、ファンギゾン等の抗真菌剤はあるか
- ⑤ 脱線血作成用ガラスビーズは滅菌されているか

(2) 培養用細胞

- ① ウイルス分離用細胞は継代されているか
- ② 細胞培養用の培地及び血清（BVD-NDフリー）はあるか
- ③ カバースリップはあるか
- ④ 6穴プレート又はシャーレは滅菌されているか

(3) 蛍光材料作成

- ① 細胞固定用冷アセトンはあるか
- ② PBS(+)はあるか
- ③ 風乾用のドライヤーはあるか

(4) 蛍光染色

1の(2)に準ずる

(5) 蛍光観察

1の(3)に準ずる

4 RT-PCR法

(1) RT-PCR材料作成

- ① マイクロピペット、マイクロチップ、マイクロチューブ、ゴム手袋（いずれもRNA取扱い用）はあるか
- ② RNA抽出用試薬はあるか

(2) RT-PCR

- ① RT-PCR用試薬はあるか
- ② 泳動用試薬及び泳動用バッファーはあるか
- ③ 泳動用寒天はあるか
- ④ ゲル染色液はあるか
- ⑤ 紫外線観察装置は点灯するか

5 その他

病性鑑定終了後において、使用した器具、器材等及び供試材料のウイルスの消毒滅菌措置を確実に実施できるか

県豚コレラ防疫対策本部及び豚コレラ発生現地防疫対策本部開設の通知

(文例)

豚及びいのししの伝染病の豚コレラが〇〇〇で発生し、県では下記に県豚コレラ防疫対策本部及び豚コレラ発生現地防疫対策本部を設けました。

豚房の隅にうずくまったり飼料を食べないなど元気がなく、発熱し、耳端・四肢・下腹部に紫色の斑（チアノーゼ）が現れている豚、いのししはこの病気にかかっているおそれがありますので、すぐ下記まで通報して下さい。

この病気は伝染がはげしいので、早く届けて処置をしないと広い範囲にひろがる可能性がありますので、発生地域での豚及びいのししの他豚コレラをひろげるおそれがある物品の移動は禁止されます。

不審な点があれば県豚コレラ防疫対策本部及び豚コレラ発生現地防疫対策本部に問い合わせして下さい。

なお、万一感染豚の豚肉を食べたとしても人に感染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記

1. 県豚コレラ防疫対策本部（〇〇県畜産主務課内）

電 話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携帯電話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ファックス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2. 豚コレラ発生現地防疫対策本部（〇〇家畜保健衛生所内）

電 話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携帯電話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ファックス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夜間連絡も上記で受け付けます。

(別添4)

と 畜 場 出 荷 許 可 書

番 号  
年 月 日

○ ○ ○ ○ 殿

○ ○ 家畜保健衛生所  
家畜防疫員 ○ ○ ○ ○

あなたが所有する（管理する）下記の家畜は、検査の結果、豚コレラに感染していないことが確認されたので、家畜伝染病予防法第32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く移動の制限の対象外とし、と畜場への出荷を許可する。

記

1. 家畜の種類
2. 搬入頭数
3. と畜を行う場所
4. その他



(別添5)

## 殺 処 分 命 令 書

番 年 月 日

○ ○ ○ ○ 殿

都道府県知事 ○ ○ ○ ○

あなたが所有する（管理する）下記の家畜は、豚コレラの患者（疑似患者）と決定されたので、家畜伝染病予防法第17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下記の家畜の殺処分を命ずる。

### 記

1. 家畜の所在する場所
2. 家畜の種類及び頭数

### 備 考

この指示に違反した場合は、3年以下の懲役又は10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別添6)

## と 殺 指 示 書

番 号  
年 月 日

〇 〇 〇 〇 殿

〇〇家畜保健衛生所  
家畜防疫員 〇 〇 〇 〇

あなたが所有する（管理する）次の家畜は、豚コレラの患畜（疑似患畜）と決定されたので、家畜伝染病予防法第17条第1項（第18条）の規定に基づき下記によりと殺することを同法第19条の規定に基づき指示する。

家畜の所在する場所

家畜の種類及び頭数

### 記

1. と殺を行う場所
2. と殺の方法
3. そ の 他

### 備 考

- 1) この指示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昭和37年法律第160号）による不服申し立てを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 2) この指示に違反した場合は、3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表 面)

家畜隔離の指示書

番 号  
年月日

○ ○ ○ ○ 殿

○ ○ 家畜保健衛生所  
家畜防疫員 ○ ○ ○ ○

あなたが所有（管理）する下記の家畜は、豚コレラとな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ので、家畜伝染病予防法第14条第3項の規定により、別途通知するまで隔離を行うことを指示する。

記

家畜の所在する場所  
家畜の種類及び頭数

備 考

- 1) 隔離の方法等は裏面を参照下さい。
  - 2) この指示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昭和37年法律第160号）による不服申し立てを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 3) この指示に違反した場合は、3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 (注) 指示書は正副2部作成し、それぞれに被指示者の捺印をとり、正を被指示者に、副を所轄家畜保健衛生所長に送付する。

(裏 面)

隔離に当たっての注意事項

1. 家畜の搬出入は、家畜防疫員の許可する場合を除いて、行ってはならない。
2. 飼料、敷料、家畜管理用具等病原体に汚染したおそれのある物を持ち出してはならない。
3. 家畜の管理者及び家畜防疫員以外の者は畜舎に立ち入ってはならない。
4. 畜舎の出入口は1カ所のみとし、消毒槽を設け、畜舎の出入りに際しては手足、衣類を消毒すること。

## 豚コレラの診断マニュアル

### I 抗原検出

#### 1. 検査方針

豚コレラを疑う症例の診断においては、迅速性及び検体処理可能数量を勘案すると、凍結切片の蛍光抗体染色による豚コレラウイルスの抗原検出が最良である。したがって、1個体の豚コレラを疑う豚から採材した多臓器について検査を行うよりもむしろ、豚コレラを疑う多数の豚から扁桃を採材して豚コレラウイルス抗原証明に力点をおいた検査を実施すべきである。また、蛍光抗体法によるウイルス抗原の検出と同時に、細胞培養によるウイルス分離を開始する。ウイルスが濃厚感染している場合、24～48時間程度で判定が可能となるが、ウイルス量が少ないこともあるので、最低1週間は観察を続ける必要がある。

なお、準備不足が診断を遅らせる要因となることから、日頃からの器具・機材の維持及び確認を行い、豚コレラを疑う症例の届出を受けた時点で、冷却用のドライアイスが準備されていること、クリオスタットの冷三機スイッチが入っていること、継代細胞があることなど迅速診断に必要な準備が整うよう診断体制の整備に努める必要がある。

#### 2. 臨床検査

豚コレラを疑う症例の通報があった場合、まず、臨床症状を示している豚の豚の臨床観察を十分に行う。該当豚が生存している場合は体温測定、血液検査を行う。次に、一見健康そうに見えるその他の豚についても、臨床症状を示している豚と疫学的関連のある豚を中心に臨床検査を実施する。複数頭（30頭以上）の体温測定・血液検査の結果、発熱、または白血球数が減少（ $8000$ 個/ $\text{mm}^3$ 以下）している豚については臨床症状を示している豚と同様に鑑定殺を行い、ウイルス学的検査を実施する。

#### 3. 採材

採材にあたっては、鑑定殺もしくは死亡直後の豚から速やかに行うことが望

ましい。また、剖検材料は生組織材料の採取を優先的に行い、残りの部分について病理組織検査のために組織固定用ホルマリンで保存する。生組織材料は扁桃（片側全て）、腎臓（髄皮質を含むように）、脾臓（一部）とし、ウイルス分離用乳剤作製に用いるだけでなく凍結切片作製にも用いるため、組織構造を考慮した採材が必要である。採取した材料は個体別に滅菌6穴プレートなどに入れ、ビニールテープで蓋を固定・密閉する。さらにビニール袋に入れ、冷蔵（氷冷）して検査室に持ち帰る。生組織材料や血液には多量のウイルスが含まれ、また、解剖・採材器具は高力価のウイルスで汚染されているものと考え、その取り扱いには十分注意する。

また、豚コレラを疑う症状を呈している豚が生存している場合には、抗凝固剤（ヘパリンあるいはEDTA）を用いて採血し、血液検査だけでなくウイルス分離材料として用いる。

#### 4. 凍結切片と乳剤の作製

凍結切片作成用材料は凍結融解することなく、新鮮な材料を用いるように心がける。それぞれの操作に際しては、消毒液を含ませたさらし布を敷く等、ウイルスの飛散を防止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

##### （1）生組織材料の処理

- ① 凍結切片作製用に組織は1 cm×5 mm（扁桃）あるいは1 cm角（腎臓、脾臓）程度に各3個切り出す。
- ② 残りの組織1 g程度を乳剤作製用にシャーレに取り、秤量しておく。乳剤作製まで、氷冷下で保存する。
- ③ 濾紙に豚番号・標本名を記入する。
- ④ 凍結切片作製用の組織を切断面を上にしてそれぞれ濾紙の上に載せる。この際、扁桃は陰窩の横断面が、腎臓は尿細管上皮が切断面に出現するように注意する。
- ⑤ 組織片が載った濾紙をピンセットで挟み、ドライアイス・アセトンで冷やしたn-ヘキサン（-80℃程度）に浸け、急速凍結する。浸けすぎは組織片が割れるので注意する。
- ⑥ 凍結したら素早くクリオスタット庫内に移すか、耐冷チューブに入れ、-80℃のディープフリーザーに保存する。

##### （2）凍結切片標本の作製

- ① (1) ⑥で凍結組織を耐冷チューブに入れた場合は、クリオスタット庫内で、耐冷チューブから取り出す。
- ② 組織片をコンパウンドを使って検体台につける。
- ③ 面出しをする。
- ④ 6  $\mu$ mの切片を作製する。
- ⑤ シランコート処理済みスライドグラスに切片を取る。
- ⑥ 直ちにドライヤー冷風で乾燥する。
- ⑦ 冷アセトンで10分間、固定する。
- ⑧ 風乾し、スライドグラス標本とする。

### (3) ウイルス分離のための乳剤の作製

- ① (1) ②の組織片を乳鉢に入れる。
- ② 乳鉢内で組織片をハサミで細切りする。
- ③ けい砂を適量加え、乳棒で細切片を軽く擦りつぶす。
- ④ 秤量した組織片が10%となるように培養液を入れ、よく乳化させる(例えば組織片が1gの時は9mlの培養液を加える)。
- ⑤ 乳化した組織片を遠心管に移す。
- ⑥ 3,000r.p.m., 15分間の冷却遠心を行う。
- ⑦ 上清を小試験管に移して、10%乳剤とする。

## 5. ウイルス分離

カバースリップ標本作製するため、カバースリップに細胞シートを形成させてから乳剤を接種するが、細胞の培養に用いる牛胎仔血清はBVDウイルス抗体陰性のものを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ウイルスと抗体が共在する症例では乳剤からのウイルス分離が陰性となる場合があるので、希釈した乳剤も必ずあわせて接種する。乳剤を接種後、カバースリップ上の細胞を経日的に取り出し、冷アセトンで固定し、蛍光抗体法により細胞質内の豚コレラウイルス抗原を検出する。なお、乳剤中のウイルス量が少ないこともあるので、少なくとも1週間は観察を続ける必要があり、その場合には培養開始後4日目に培養上清を継代する。

それぞれの操作に際しては、消毒液を含ませたさらし布を敷く等、ウイルスの飛散を防止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

### (1) 培養細胞の継代

- ① ウイルス分離にはCPK細胞を用いることとし、面積比で3倍に継代する。
- ② 6穴プレートの各穴にカバースリップ（6×18mm）を4枚ずつ重ならないように入れる。
- ③ 細胞浮遊液3mlを各穴に入れる。この際、カバースリップが浮遊して、重なることがあるので注意する。
- ④ 37℃で一晩培養する。
- ⑤ 翌日、細胞シートが形成されていることを確認してから使用する。

## (2) 乳剤接種とカバースリップ標本の作製

- ① 少なくとも扁桃乳剤については、0.45μmのフィルターで濾過する。この際、予めグラスフィルターを通しておくと目詰まりが防げる。
- ② 乳剤や血液の希釈液（乳剤は10倍及び100倍乳剤、血液は原液のまま使用）を作製し、(1)⑤の細胞に0.5ml接種する（接種材料は検査終了時まで保存する。）。
- ③ 吸着・ティルティング操作を1時間（2時間が理想）行い、細胞面を洗浄する。
- ④ 培養液を添加し、37℃で培養する。
- ⑤ 経日的にカバースリップを取り出し、PBSで洗浄後、冷アセトンで10分間固定する。
- ⑥ 風乾し、カバースリップ標本とする。

## 6. 蛍光抗体染色（ウイルス抗原の検出）

3の(2)の⑤のスライドグラス標本及び4の(2)の⑥のカバースリップ標本の蛍光染色には、市販の豚コレラ診断用蛍光抗体を用いる。扁桃の凍結切片においてはウイルス抗原陽性の場合、陰窩上皮細胞の細胞質内に特異蛍光が認められ、陽性細胞が帯状に連なって観察される。蛍光陽性の単個細胞が散在性に観察されることがあるが、これらは非特異反応なので、診断にあたっては陰窩の上皮細胞を集中的に観察する。カバースリップ標本においてはウイルス分離陽性の場合、細胞質内に特異蛍光が観察され、ウイルス感染細胞は培養時間の経過とともに巣状に増加し、フォーカスを形成する。検査結果の判定はこのフォーカス形成時期が一番容易であるので経日的な観察が必要となる。なお、蛍光抗体染色法の詳細については豚コレラ蛍光抗体液に添付の説明書に記載されているので参照するこ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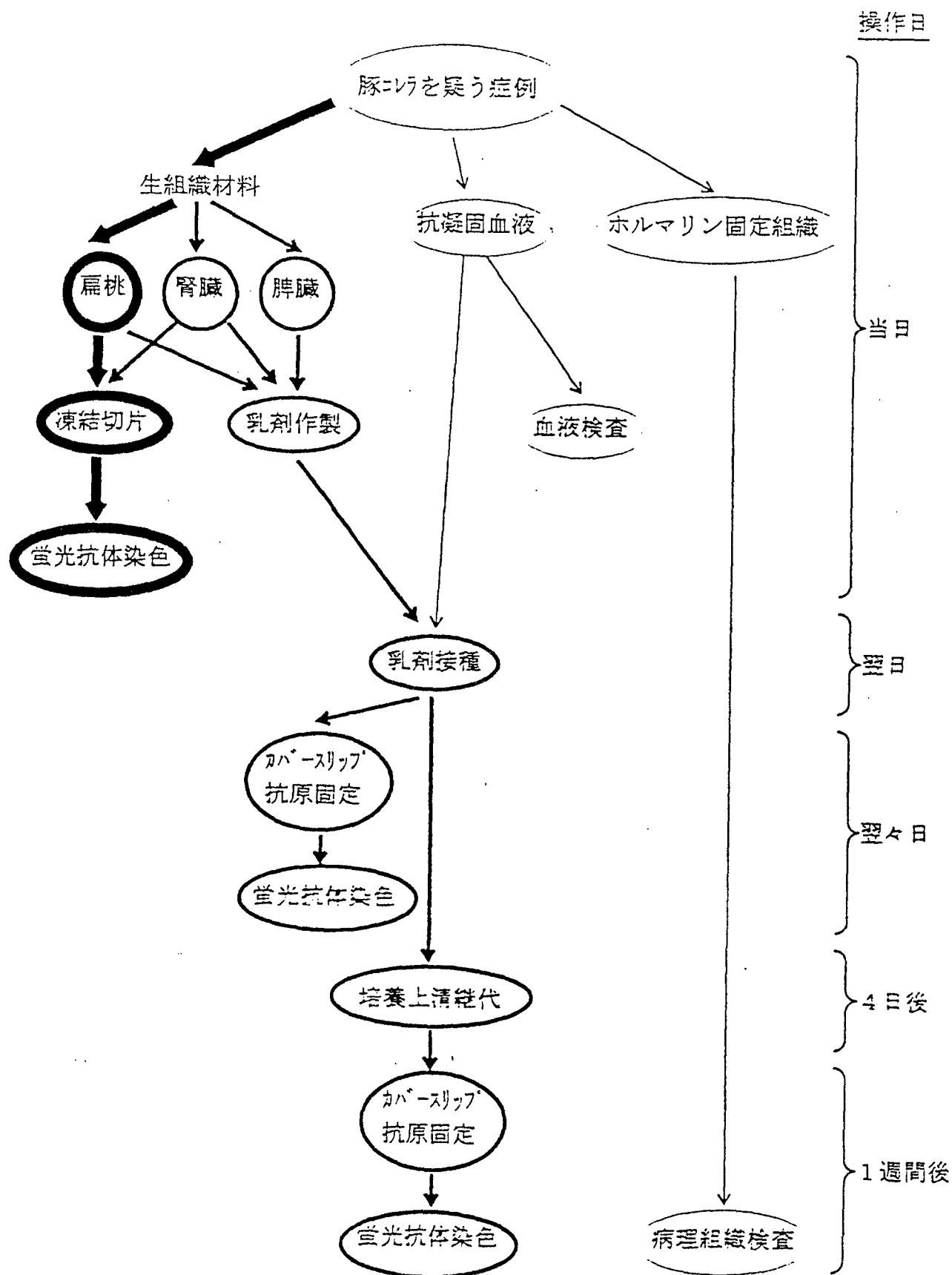
## 7. その他

生組織材料，3の(2)の⑥のスライドガラス標本，3の(3)の⑦の10%乳剤及び4の(2)の⑥のカバースリップ標本は密閉容器に入れ， $-80^{\circ}\text{C}$ で保存する。

検査に使用したすべての器具（ハサミ，ピンセット，シャーレ，ピペット，乳鉢，クリオスタット等）は豚コレラウイルスに汚染されているものと考え，オートクレーブによる滅菌を行うなど取り扱いに十分注意する。



○豚コレラ診断のための検査フローチャート



\* 矢印線が太いものほど重要度が高く、優先的に実施すること。

## II 抗体検査

### 1. 検査方針

ワクチン中止後の豚コレラウイルス野外感染の有無を監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抗体検査を行う。一般に豚コレラウイルス生ワクチンを接種された豚は、生涯抗豚コレラ抗体を持ち続ける。よって、野外においてはワクチン接種豚がすべて更新されるまで、ワクチン抗体保有豚が存在し続けることとなる。しかし、ワクチンによる抗体と野外感染による抗体の識別は困難であるため、抗体検査の結果はワクチン接種歴、導入履歴、移行抗体の存在などを十分に考慮した上で評価する必要がある。また、野外ウイルス感染の場合、水平感染によるウイルスの拡散は容易に起こるので、抗体陽性豚と疫学的関連のある豚の抗体検査を実施することにより、豚群として抗体検査を評価するように心掛ける。抗体検査の結果から野外感染が疑われる場合には、速やかに鑑定殺を行い、豚コレラの確定診断（抗原検出）を実施する。

### 2. 被検血清の調整

豚コレラ感染豚においては、一見健康そうな感染初期（潜伏期）から血液中にウイルスが多量に存在するので、採血にあたっては日頃から一頭一針を確実に守り、ウイルスの人為的な拡散を防止する。採取した血液からは速やかに血清を分離し、非働化（56℃、30分の加熱処理）を確実にを行う。血清を保存する場合は-20℃以下で凍結して行う。なお、被検血清の調整に用いたすべての器具は、日頃から適切な滅菌・消毒を励行すること。

### 3. 無血清培養細胞の培養

豚コレラの抗体検査には無血清培養液（別表）で増殖可能な豚腎臓由来変性細胞（CPK-N5細胞）を用いる。培養には未使用のプラスチック培養フラスコを使用する。本細胞は単層形成後に小さなドームを形成する。細胞の状態の良し悪しの指標としてこのドームの形成を用いることができる。細胞は7日ごとに面積比で3倍に継代可能である（まきこみ時の生細胞数；約 $5 \times 10^5$ 個/m<sup>2</sup>）。しかし、ドームが形成しない、浮遊死細胞が非常に多いなど、細胞の状態が思わしくない場合には面積比で2倍に継代するか、培地を交換し、2日後（前回の継代から9日目）に継代をするとよい。

- ① 培地をアスピレートし，細胞面をPBSで1回洗浄する。
- ② トリプシンを用いて十分に細胞を消化する。細胞の消化には37℃で15～30分ほどの時間を要する。消化された細胞に培地を加え，よくピペッティングをして細胞をよく分散させる。
- ③ 細胞を遠心管に回収し，遠心（800rpm，5分）する。遠心後，培地をアスピレートし，新しい培地を加え細胞を再び分散させる。
- ④ 再度遠心（800rpm，5分）し，上清をアスピレートする。
- ⑤ 適当量の培地に再浮遊させ，新しいプラスチックボトルに細胞を分配する。

継代された細胞は24時間後には単層のシートを形成する。このとき細胞が全面に拉がっていない場合には，継代時の細胞数が少ないと考えられるので次の継代ではより細胞数を多く継代する。ドームは継代3日目頃から観察され，その数は培養日数につれて増加する。継代後，培地は3日毎に交換する。

細胞を凍結保存するには，継代後5～7日目の細胞を使用する。トリプシン消化されたCPK-NS細胞は，2回の遠心洗浄操作の後，適当量の細胞保存液に再浮遊させ，凍結保存する。凍結する細胞数は一般の細胞より多めに保存するように心がける。凍結用チューブには通常使用している培養用フラスコ1本分の細胞を保存し，細胞培養を再開する場合には同じ培養用フラスコ1本に，融解した細胞をまき直す程度が望ましい。まきこみ時に細胞数が不足すると，以後の細胞の状態が思わしくないことが多いので注意すること。

#### 4. 中和抗体検査用指示ウイルスの調整

抗体検査の指示ウイルスとしては，豚コレラウイルスワクチン株（GPE<sup>-</sup>株）を用いる。ウイルスは中和抗体検査前にCPK-NS細胞で増殖後，ウイルス価を測定しておく必要がある。使用するウイルスはワクチン株であるが，取り扱いにあたっては汚染防止に十分注意すること。

##### (1) ウイルス液の調整法

- ① 細胞継代後3～5日の細胞に，希釈したウイルス液（ $10^4$  TCID<sub>50</sub>/m<sup>1</sup>以上）を接種する。接種後，ティルティング操作を30分毎に行いながら2時間吸着させる。
- ② ウイルス液をアスピレート後，無血清培養液に5%血清を添加した培地を通常の細胞培養時と同量加え，37℃で培養する。添加する血清はBVDウイルス抗体陰性の牛由来血清を用いるのが原則であるが，入手困難な場合には馬血清でも代用可能である。血清を加えないとウイルス回収量が1000

分の1ほどに減少するので注意すること。なお、無血清培養液に血清を添加した培地はこの作業でのみ使用し、その他のすべてのウイルスアッセイは無血清で行う。

- ③ 培養後3～4日目にウイルス液を回収する。回収前に顕微鏡でウイルス増殖による細胞変性効果（CPE）を確認すること。培養フラスコは1回超低温槽用いて急速凍結し、融解後遠心して培養上清を $-80^{\circ}\text{C}$ に分注保存する。ウイルス液は凍結融解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少量ずつチューブに分注すること。

## (2) ウイルス力価の測定方法

- ① CPK-NS細胞をトリプシン消化し、2回の遠心洗浄操作を行い、トリプシンを除去する。細胞は通常継代する時と同量の無血清培地に再浮遊させる。
- ② 測定したいウイルス液を無血清培地で10倍階段希釈する。
- ③ 96穴マイクロプレートに希釈したウイルス液を $50\mu\text{l}$ ずつ分注する。
- ④ ①で調整した細胞浮遊液を $100\mu\text{l}$ ずつ分注し、 $\text{CO}_2$ インキュベーターで7日間培養する。
- ⑤ 細胞表層に観察されるCPEを指標に、ウイルス力価（ $\text{TCID}_{50}$ ）を求める。

## 5. 中和抗体測定方法

抗体価の有無の指標には、CPK-NS細胞における豚コレラウイルスGP E-株のCPEを用いる。試験の実施にあたっては、被検血清及びウイルス液を両方とも加えない（代わりに等量の培地を加える）ウェルを準備し、細胞の健康状態を確認すること。また、使用した希釈ウイルス液（ $200\text{TCID}_{50}/25\mu\text{l}$ に調整）のバックタイトレーションを行うことも忘れないこと。

- ① CPK-NS細胞をトリプシン消化し、2回の遠心洗浄操作を行い、トリプシンを除去する。細胞は通常継代する時と同量の培養液に再浮遊させる。
- ②  $25\mu\text{l}$ の非働化済み被検血清を無血清培養液で2倍階段希釈する。希釈は培養用96穴マイクロプレートで直接行う。
- ③ 96穴マイクロプレートに $200\text{TCID}_{50}/25\mu\text{l}$ に希釈したウイルス液を $25\mu\text{l}$ ずつ分注する。
- ④ プレートを攪拌後、 $\text{CO}_2$ インキュベーターで1時間反応させる。
- ⑤ ①で調整した細胞浮遊液を $100\mu\text{l}$ ずつ分注し、 $\text{CO}_2$ インキュベーター

一で7日間培養する。

⑥ 細胞表層に認められるCPEを指標に中和抗体価を求める。

## 6. その他

### (1) 抗体測定時の血清希釈倍率について

ワクチン接種中止後、ワクチン未接種豚からは野外ウイルスの感染がない限り、移行抗体以外のいかなる抗体も検出されることはない。つまり、抗体検査は個々の抗体価の数値よりも、抗体の有無を群として評価し、野外感染の有無を監視することが目的となる。よって、一般的なサーベイランス検査における被検血清の希釈は、2倍から16倍までの4つの希釈列の結果をとりまとめることとする（96穴培養用プレートの配置例は別図参照）。すなわち、抗体価は2倍未満・2倍・4倍・8倍・16倍以上、の5段階にのみ区分する。ただし、移行抗体であるか否かの判定など、抗体陽性の最終希釈倍率が必要となる場合は通常通りに血清を希釈し検査を行う。

### (2) 移行抗体について

豚コレラワクチン接種中止後も、以前にワクチンの接種歴がある豚からは終生抗体が検出される。つまりワクチン接種済みの繁殖母豚から生まれた子豚は一定期間、母豚由来の移行抗体を保有することとなる。子豚は出生時に母豚と同等の抗体を保有するが、抗体価は生後週齢が経過するにつれて徐々に低下していく。抗体価の半減期は約2週間であり、最終的に抗体価は検出限界以下（2倍未満）となる。ワクチン接種中止後の抗体検査においては、と畜搬入前後のワクチン未接種豚を中心に行うこととされており、通常これらの豚は抗体陰性（2倍未満）となる。ただし、生後3ヶ月ぐらいまでの豚を対象として抗体検査を行う場合には上記のように健康豚であっても移行抗体を検出し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ため、1ヶ月後に再検査を行うとともに該当農場の繁殖母豚のワクチン接種歴の確認と臨床検査を行う必要がある。

(別表)

無血清培養液の作製

① Eagle MEM ① (日水製薬)	-----	9.40 g
② Tryptose Phosphate Broth (Difco)	-----	2.95 g
③ BES		
[N,N-Bis(2-hydroxyethyl)-2-aminoethanesulfonic acid] (和光純薬)	-	2.13 g
④ Bacto Peptone (Difco)	-----	5.00 g

---

再蒸留水 (MilliQ水) で1 ℓ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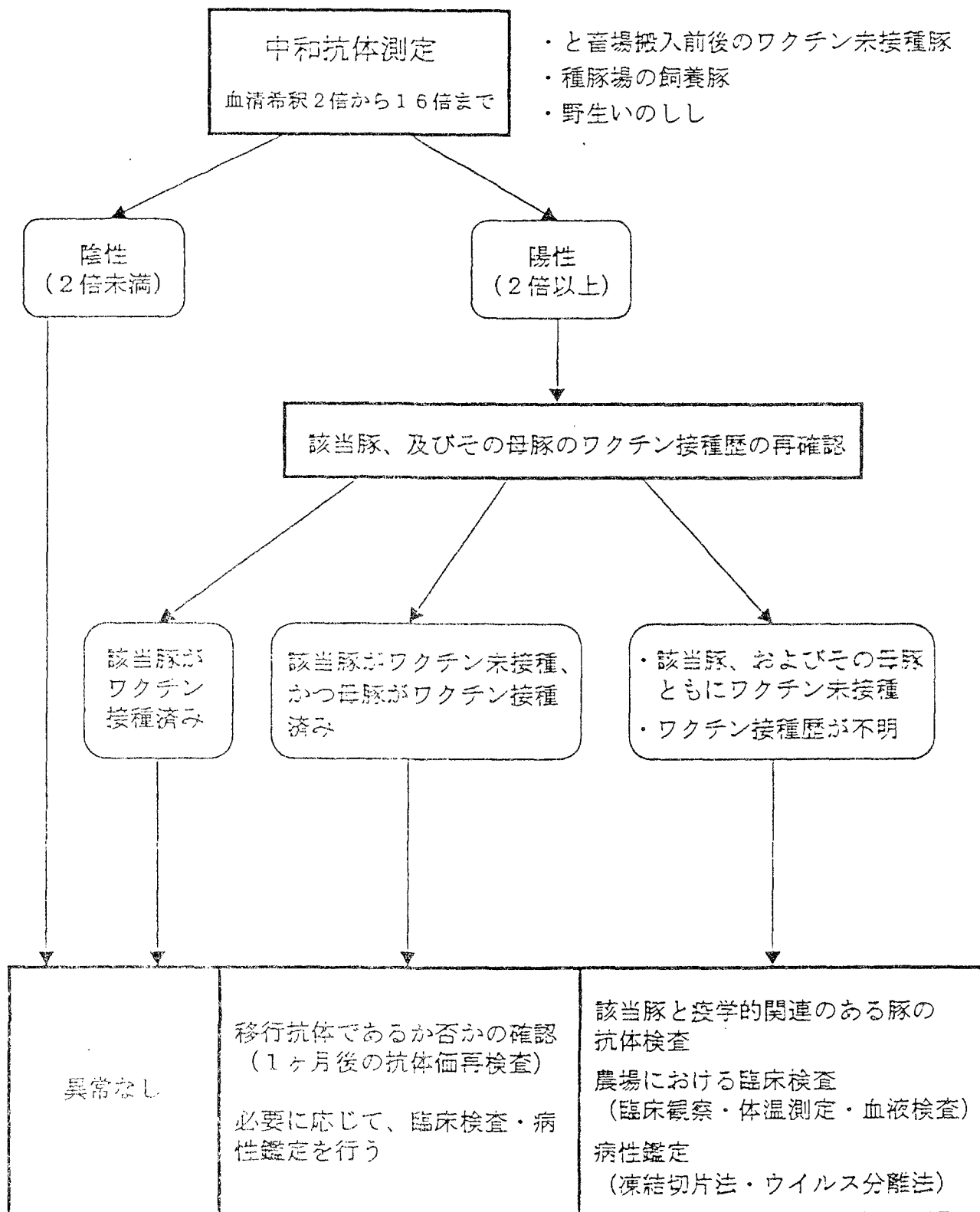
①から④の順に溶解し、30分以上よく攪拌して溶解した後、オートクレーブ  
(121℃, 15分) で滅菌する。

室温まで冷却後、

3% L-glutamine水溶液 (濾過滅菌)	-----	10ml / ℓ
7.5% 炭酸水素ナトリウム水溶液 (オートクレーブ)	-----	30ml / ℓ

を加えて冷蔵保存する。

○豚コレラウイルス抗体検査に関わるフローチャート



- ・と畜場搬入前後のワクチン未接種豚
- ・種豚場の飼養豚
- ・野生いのしし

\*病性鑑定の実施にあたっては病性鑑定マニュアルを参照のこと

(別図)

## 96穴培養用プレート配置例

1) 1枚目のプレート(被検血清は16検体; S1~S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S1 x2	S1 x4	S1 x8	S1 x16	S9 x2	S9 x4	S9 x8	S9 x16				
B	S2 x2	S2 x4	S2 x8	S2 x16	S10 x2	S10 x4	S10 x8	S10 x16	細胞のみ(指示ウイルス、血清なし)			
C	S3 x2	S3 x4	S3 x8	S3 x16	S11 x2	S11 x4	S11 x8	S11 x16	のコントロール			
D	S4 x2	S4 x4	S4 x8	S4 x16	S12 x2	S12 x4	S12 x8	S12 x16				
E	S5 x2	S5 x4	S5 x8	S5 x16	S13 x2	S13 x4	S13 x8	S13 x16				
F	S6 x2	S6 x4	S6 x8	S6 x16	S14 x2	S14 x4	S14 x8	S14 x16	指示ウイルスの			
G	S7 x2	S7 x4	S7 x8	S7 x16	S15 x2	S15 x4	S15 x8	S15 x16	バックタイトレーション			
H	S8 x2	S8 x4	S8 x8	S8 x16	S16 x2	S16 x4	S16 x8	S16 x16				

2) 2枚目以降のプレート(被検血清は24検体; S17~S40)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S17 x2	S17 x4	S17 x8	S17 x16	S25 x2	S25 x4	S25 x8	S25 x16	S33 x2	S33 x4	S33 x8	S33 x16
B	S18 x2	S18 x4	S18 x8	S18 x16	S26 x2	S26 x4	S26 x8	S26 x16	S34 x2	S34 x4	S34 x8	S34 x16
C	S19 x2	S19 x4	S19 x8	S19 x16	S27 x2	S27 x4	S27 x8	S27 x16	S35 x2	S35 x4	S35 x8	S35 x16
D	S20 x2	S20 x4	S20 x8	S20 x16	S28 x2	S28 x4	S28 x8	S28 x16	S36 x2	S36 x4	S36 x8	S36 x16
E	S21 x2	S21 x4	S21 x8	S21 x16	S29 x2	S29 x4	S29 x8	S29 x16	S37 x2	S37 x4	S37 x8	S37 x16
F	S22 x2	S22 x4	S22 x8	S22 x16	S30 x2	S30 x4	S30 x8	S30 x16	S38 x2	S38 x4	S38 x8	S38 x16
G	S23 x2	S23 x4	S23 x8	S23 x16	S31 x2	S31 x4	S31 x8	S31 x16	S39 x2	S39 x4	S39 x8	S39 x16
H	S24 x2	S24 x4	S24 x8	S24 x16	S32 x2	S32 x4	S32 x8	S32 x16	S40 x2	S40 x4	S40 x8	S40 x16



(案外説明)

家畜防疫互助基金造成等支援事業のうち養豚衛生管理支援事業の一部改正について

- 1 豚コレラの防疫については、10月1日以降原則として全国的に豚コレラ予防液の接種を中止することから、同予防液については家畜伝染病予防法（以下「法」という。）第50条の規定に基づき同法施行規則第57条の使用に際して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要する動物用生物学的製剤として指定するための規則の一部改正を行ったところである。
- 2 また、豚コレラ予防液の接種の中止に伴って、
  - (1) 予防液の接種の機会を活用して実施してきた獣医師による農場の監視体制が低下するおそれがあること
  - (2) 豚丹毒予防液の接種率が低下し、公衆衛生上の問題を引き起こすおそれがあること（豚コレラ予防液の接種の太宗が人畜共通感染症でもある豚丹毒予防液との混合予防液によって行われている）から、獣医師の衛生管理指導水準の向上と豚丹毒予防液の接種に要する費用に対して助成するための養豚衛生管理支援事業を平成12年度から実施しているところである。
- 3 養豚衛生管理支援事業は、豚コレラ予防液の接種の中止に伴う事業であることから、これまで接種中止地域（都道府県知事が都道府県単位で地域を指定）を対象に事業を実施してきたところであるが、10月1日以降は必ずしも地域単位での中止ではなく、農場単位での中止（法第50条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許可により接種を行う農場、行わない農場）となる。
- 4 したがって、
  - (1) 予防液接種中止の取組は全国的に行うことから、獣医師の衛生管理指導水準の向上を図るための事業はすべての都道府県を対象とする
  - (2) 豚丹毒予防液接種に要する経費に対する助成事業は、家畜伝染病予防法第50条の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受けていない農場で飼養される豚のみを対象とする旨の事業実施要領の一部改正を行う。

〔 その他、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の全部改正に伴い、家畜防疫互助事業の要件中の交付基準の文言の整理も併せて行う。 〕



12畜A第2763号

平成12年10月1日

知事 殿

農林水産省畜産局長

家畜防疫互助基金造成等支援事業実施要領の一部改正について

このことについて、家畜防疫互助基金造成等支援事業実施要領（平成10年7月3日付け10畜A第1422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の一部を別紙新旧対照表のとおり改正したので、御了知の上、本事業の適切かつ円滑な実施につき御配慮をお願いする。

(別紙)

家畜防疫互助基金造成等支援事業実施要領新旧対照表

改正後	現 行
<p>第1～第2 (略)</p> <p>第3 事業の内容 この事業の内容は、全国衛指協が次に掲げる事業を行うのに必要とする資金に充てるため、家畜防疫互助基金（以下「互助基金」という。）を造成する事業とする。</p> <p>1 (略)</p> <p>2 家畜防疫互助事業 全国衛指協は、豚コレラ互助金交付契約（以下「交付契約」という。）を県衛指協等と締結した交付対象豚の生産者に対し、豚コレラ発生時において養豚経営への影響を緩和するため、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平成12年10月1日付け12畜A第2762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以下「対策要領」という。）に基づき、対策要領の4の(4)の力の殺処分等又は対策要領の4の(4)のクの家畜防疫員等の指導により豚のとう汰等を行った場合、県衛指協等を通じて当該交付契約に係る互助金を交付するのに要する経費について助成するものとする。</p> <p>3 (略)</p> <p>4 養豚衛生管理支援事業 全国衛指協は、県衛指協等が養豚衛生管理指導体制の整備のため、研修会の開催による獣医師の衛生管理指導水準の向上を図るとともに、豚丹毒ワクチンの接種（家畜伝染病予防法（昭和26年法律第166号。以下「法」という。）第50条の規定に基づく豚コレラ予防液の使用に係る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受けている農場に飼養される豚に</p>	<p>第1～第2 (略)</p> <p>第3 事業の内容 この事業の内容は、全国衛指協が次に掲げる事業を行うのに必要とする資金に充てるため、家畜防疫互助基金（以下「互助基金」という。）を造成する事業とする。</p> <p>1 (略)</p> <p>2 家畜防疫互助事業 全国衛指協は、豚コレラ互助金交付契約（以下「交付契約」という。）を県衛指協等と締結した交付対象豚の生産者に対し、豚コレラ発生時において養豚経営への影響を緩和するため、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平成8年5月10日付け8畜A第1243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以下「対策要領」という。）に基づき、対策要領の2の(1)のエの(イ)のb若しくは(2)のイの殺処分等又は対策要領の2の(1)のエの(イ)のf若しくは(2)のイの(ウ)の家畜防疫員等の指導により豚のとう汰等を行った場合、県衛指協等を通じて当該交付契約に係る互助金を交付するのに要する経費について助成するものとする。</p> <p>3 (略)</p> <p>4 養豚衛生管理支援事業 全国衛指協は、県衛指協等が豚コレラワクチン接種中止地域を対象として、養豚衛生管理指導体制の整備のため、研修会の開催による獣医師の衛生管理指導水準の向上を図るとともに、豚丹毒ワクチンの接種を行うのに要する経費について助成するものとする。</p>

対する豚丹毒ワクチンの接種を除く。)を行うのに要する経費について助成するものとする。

5 (略)

第4 (略)

第5 事業の実施

1・2 (略)

3 家畜防疫互助事業の要件

この事業の対象となる第3の2の家畜防疫互助事業(以下「互助事業」という。)は、次の要件を具備し、かつ、これを全国衛指協及び当該県衛指協等の業務方法書等に規定しているものとする。

(1)～(3) (略)

(4) 交付基準

第3の2の互助金の交付は、対策要領4の(4)のカの殺処分等又は対策要領の4の(4)のクの規定に基づき豚のとう汰等の防疫措置が実施された場合に行うものとする。

(5) 交付対象豚

第3の2の互助金の交付対象豚は、次に掲げる豚であること。

ア 移動制限区域内(法第32条の規定に基づき家畜等の移動等の制限等を行う区域内をいう。以下同じ。)において、法第18条の届出に係る家畜につき、法第19条の規定に基づく指示に従いと殺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及び家畜防疫員等の指導によりとう汰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法第58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手当金の交付対象となったものを除く。)

5 (略)

第4 (略)

第5 事業の実施

1・2 (略)

3 家畜防疫互助事業の要件

この事業の対象となる第3の2の家畜防疫互助事業(以下「互助事業」という。)は、次の要件を具備し、かつ、これを全国衛指協及び当該県衛指協等の業務方法書等に規定しているものとする。

(1)～(3) (略)

(4) 交付基準

第3の2の互助金の交付は、対策要領の2の(1)のエの(イ)のb若しくは(2)のイの殺処分等又は対策要領の2の(1)のエの(イ)のf若しくは(2)のイの(ウ)の規定に基づき豚のとう汰等の防疫措置が実施された場合に行うものとする。

(5) 交付対象豚

第3の2の互助金の交付対象豚は、次に掲げる豚であること。

ア 移動制限区域内(家畜伝染病予防法(昭和26年法律第166号。以下「法」という。)第32条の規定に基づき家畜等の移動等の制限等を行う区域内をいう。以下同じ。)において、法第18条の届出に係る家畜につき、法第19条の規定に基づく指示に従いと殺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及び家畜防疫員等の指導によりとう汰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法第58条第1項の規

イ 移動制限区域内において、法第17条の規定に基づき殺処分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法第18条の届出に係る家畜につき、法第19条の規定に基づく指示に従いと殺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及び家畜防疫員等の指導によりとう汰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を飼養していた農場において新たに導入された豚。ただし、畜産振興総合対策事業実施要綱（平成12年4月1日付け12畜B第310号農林水産事務次官依命通知）の別表第1の事業種類の欄の4の事業内容の欄の1の家畜改良増殖対策事業、養豚等体質強化特別対策事業実施要領（昭和58年4月1日付け58畜A第2388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の養豚振興体制整備総合対策事業及び地域養豚振興特別対策事業実施要領（平成8年5月21日付け8畜A第1305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の地域養豚振興特別対策事業により導入した豚並びに農業改良資金助成法（昭和31年法律第102号）に基づく畜産振興資金を借り受けて購入した豚は除く。

(6) ~ (7) (略)  
4・5 (略)

第6~第8 (略)

定に基づき手当金の交付対象となったものを除く。）

イ 移動制限区域内において、法第17条の規定に基づき殺処分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法第18条の届出に係る家畜につき、法第19条の規定に基づく指示に従いと殺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及び家畜防疫員等の指導によりとう汰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を飼養していた農場において新たに導入された豚。ただし、畜産再編総合対策事業実施要領（平成7年4月1日付け7畜B第371号農林水産事務次官依命通知）の別表第1の事業種類の欄の8の家畜改良増殖対策事業の事業内容の欄の3の豚改良増殖対策事業、養豚等体質強化特別対策事業実施要領（昭和58年4月1日付け58畜A第2388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の高品質豚肉生産振興対策事業及び地域養豚振興特別対策事業実施要領（平成8年5月21日付け8畜A第1305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知）の地域養豚振興特別対策事業により導入した豚並びに農業改良資金助成法（昭和31年法律第102号）に基づく畜産振興資金を借り受けて購入した豚は除く。

(6) ~ (7) (略)  
4・5 (略)

第6~第8 (略)

## 家畜防疫互助基金造成等支援事業実施要領

平成10年7月3日10畜A第1422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達  
改正 平成11年5月7日11畜A第789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達  
改正 平成11年9月29日11畜A第2324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達

### 第1 趣旨

豚コレラの発生は、養豚経営に甚大な影響を及ぼすことから、我が国は平成8年度から官民一体となって豚コレラ撲滅対策に着手し、豚コレラワクチンの徹底的な接種を行い、野外ウイルスの一掃を図ってきたところである。

しかしながら、ワクチン接種は、多額な資金と労力を要することから、豚肉生産のコスト低減を図る上で大きな障害となっていること、また、我が国においては、平成5年以降豚コレラの発生はみられないこと等から、今後の養豚経営の安定を図るためには、豚コレラワクチン接種に代わる新たな豚コレラ撲滅対策が緊要の課題と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な状況にかんがみ、豚コレラが発生した場合、飼養する豚（いのししを含む。以下同じ。）のとう次に伴う損失を生産者等が互助補償する仕組みを支援し、家畜防疫対策等の実施基盤の強化等を図る事業に対し、農畜産業振興事業団（以下「事業団」という。）が助成し、もって我が国畜産の安定的な発展に資するものとする。

### 第2 事業実施主体

この事業の事業実施主体は、社団法人全国家畜畜産物衛生指導協会（以下「全国衛指協」という。）とする。

### 第3 事業の内容

この事業の内容は、全国衛指協が次に掲げる事業を行うのに必要とする資金に充てるため、家畜防疫互助基金（以下「互助基金」という。）を造成する事業とする。

#### 1 家畜防疫互助推進事業

全国衛指協は、2の事業の円滑な推進を図るため、次に掲げる事業を行うものとする。

- (1) 全国衛指協は、中央推進会議の開催、事業推進のためのパンフレットの作成、社団法人都道府県家畜畜産物衛生指導協会（当該協会がない都道府

県にあっては、農畜産業振興事業団理事長（以下「理事長」という。）が  
適当と認める団体。以下「県衛指協等」という。）、関係団体等に対する  
事業の普及、指導、連絡調整等を行うものとする。

- (2) 全国衛指協は、県衛指協等が地方推進会議の開催、生産者、関係団体等  
に対する事業の普及、指導、連絡調整等を実施するのに要する経費につ  
いて助成するものとする。

## 2 家畜防疫互助事業

全国衛指協は、豚コレラ互助金交付契約（以下「交付契約」という。）を  
県衛指協等と締結した交付対象豚の生産者に対し、豚コレラ発生時において  
養豚経営への影響を緩和するため、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平成8年5月1  
0日付け8畜A第1243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達。以下「対策要領」と  
いう。）に基づき、対策要領の2の（1）のエの（イ）のb若しくは（2）  
のイの殺処分等又は対策要領の2の（1）のエの（イ）のf若しくは（2）  
のイの（ウ）の家畜防疫員等の指導により豚のとう汰等を行った場合、県衛  
指協等を通じて当該交付契約に係る互助金を交付するのに要する経費につ  
いて助成するものとする。

## 3 県衛指協等運営基盤強化事業

全国衛指協は、県衛指協等が家畜防疫対策に係る県衛指協等の管理運営等  
を行うのに必要とする資金に充てるため、運営基盤強化基金（以下「県基  
金」という。）を造成するのに要する経費について助成するものとする。

## 第4 互助基金、県基金の造成及び管理運用

- 1 全国衛指協は、事業団からの助成及び生産者積立金（生産者積立金の一部  
に充てるために生産者以外の者から助成又は寄付されたものを含む。以下同  
じ。）をもって互助基金を設けることとし、その運用により生じた果実は本  
基金に繰り入れるものとする。

県衛指協等は、全国衛指協からの助成及びその他の資金をもって第3の3  
の県基金を設けることとし、その運用により生じた果実は本基金に繰り入れ  
るものとする。

- 2 全国衛指協及び県衛指協等は、互助基金及び県基金を他の勘定と区分して  
経理するものとする。
- 3 全国衛指協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互助基金を取り崩してはならない  
ものとする。

- (1) 第3に規定する事業に要する経費に充てる場合  
(2) 互助基金の運用により生じる果実に相当する額の範囲内で、理事長の承

認を受けて支出する経費に充てる場合

- 4 県衛指協等は、県基金の運用により生じる果実に相当する額の範囲内で、家畜防疫対策に要する経費に充てる場合を除き、県基金を取り崩してはならないものとする。
- 5 全国衛指協は、事業実施期間終了後、互助基金に残額が生じた場合及び事業実施期間中であっても互助基金に残額が生じることが見込まれるため理事長から返還の指示があった場合、互助基金を造成するに当たり事業団が助成した割合に相当する額を事業団に返還するものとする。
- 6 全国衛指協は、事業実施期間終了後、互助基金に残額が生じた場合、互助基金を造成するに当たり第5の3の(2)の事業参加者が納付した割合に相当する額について、それぞれの事業参加者が第5の3の(6)のアの規定に基づき納付した割合に応じて算出した額を県衛指協等を通じて事業参加者に返戻するものとする。
- 7 県衛指協等は、家畜防疫対策に係る業務を終了した場合及び当該業務実施期間中であっても業務に支障がないことが見込まれるため理事長から返還の指示があった場合、県基金を造成するに当たり全国衛指協が助成した割合に相当する額を全国衛指協を経由して事業団に返還するものとする。

## 第5 事業の実施

### 1 事業実施計画の作成

県衛指協等は、事業の実施に当たっては、毎年度、事業実施計画を作成し都道府県知事に協議の上、全国衛指協に提出するものとする。

全国衛指協は、提出された事業実施計画を取りまとめの上、自らの事業実施計画とともに、理事長に提出し、承認を受けるものとする。

### 2 事業の委託

全国衛指協及び県衛指協等は、この事業の一部を理事長が適当と認める団体に委託して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 3 家畜防疫互助事業の要件

この事業の対象となる第3の2の家畜防疫互助事業（以下「互助事業」という。）は、次の要件を具備し、かつ、これを全国衛指協及び当該県衛指協等の業務方法書等に規定しているものとする。

#### (1) 業務対象年間

互助事業の業務対象年間は、5年間であること。

#### (2) 交付契約

ア 県衛指協等の会長（以下「県衛指協等会長」という。）及び互助事業



に参加する豚の生産者（以下「事業参加者」という。）は、業務対象年間、契約豚頭数、交付基準、交付対象豚、生産者積立金の単価及び納付方法、互助金の種類、単価及び交付限度頭数等に関する事項を内容とする交付契約を書面にて締結するものであること。

イ 社団法人全国家畜畜産物衛生指導協会会長（以下「全国衛指協会長」という。）及び県衛指協等会長は、アの交付契約と同一の事項を内容とする交付契約を書面にて締結するものであること。

### （３） 契約豚頭数

互助事業の契約豚頭数は、業務対象年間における繁殖用種豚（繁殖の用に供される雌及び雄の豚をいう。以下同じ。）及び肥育豚（肥育の用に供される豚をいう。以下同じ。）の飼養見込み頭数であること。

### （４） 交付基準

第３の２の互助金の交付は、対策要領の２の（１）のエの（イ）のb若しくは（２）のイの殺処分等又は対策要領の２の（１）のエの（イ）のf若しくは（２）のイの（ウ）の規定に基づき豚のとう汰等の防疫措置が実施された場合に行うものとする。

### （５） 交付対象豚

第３の２の互助金の交付対象豚は、次に掲げる豚であること。

ア 移動制限区域内（家畜伝染病予防法（昭和２６年法律第１６６号。以下「法」という。）第３２条の規定に基づき家畜等の移動等の制限等を行う区域内をいう。以下同じ。）において、法第１８条の届出に係る家畜につき、法第１９条の規定に基づく指示に従いと殺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及び家畜防疫員等の指導によりとう汰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法第５８条第１項の規定に基づき手当金の交付対象となったものを除く。）

イ 移動制限区域内において、法第１７条の規定に基づき殺処分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法第１８条の届出に係る家畜につき、法第１９条の規定に基づく指示に従いと殺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及び家畜防疫員等の指導によりとう汰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を飼養していた農場において新たに導入された豚。ただし、畜産再編総合対策事業実施要領（平成７年４月１日付け７畜B第３７１号農林水産事務次官依命通達）の別表第１の事業種類の欄の８の家畜改良増殖対策事業の事業内容の欄の３の豚改良増殖対策事業、養豚等体質強化特別対策事業実施要領（昭和５８年４月１日付け５８畜A第２３８８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達）の高品質豚肉生産振興対策事業及び地域養豚振興特別対策事業実施

要領（平成8年5月21日付け8畜A第1305号農林水産省畜産局長通達）の地域養豚振興特別対策事業により導入した豚並びに農業改良資金助成法（昭和31年法律第102号）に基づく畜産振興資金を借り受けて購入した豚は除く。

(6) 生産者積立金

生産者積立金の単価，納付方法等は，次に掲げるものであること。

ア 県衛指協等は，業務対象年間において，事業参加者が（2）の交付契約に基づき契約した（3）の豚の種類別の契約豚頭数にイに規定する豚の種類別の生産者積立金の単価を乗じて得た額を事業参加者から納付させるものとし，生産者積立金の納付方法等については，県衛指協等会長が別に定めるものとする。

なお，生産者積立金については返戻しないものとする。

イ 生産者積立金の単価は，1年当たり繁殖用種豚にあつては1頭当たり1,250円，と畜場に出荷される肥育豚にあつては1頭当たり80円とする。

ウ アにより納付された生産者積立金については，県衛指協等は全国衛指協会会長が別に定める納付方法等に従い全国衛指協に納付し，全国衛指協において互助基金として管理運用するものとする。

(7) 互助金

互助金の種類及び交付限度頭数は，次に掲げるものであり，互助金の交付単価は，別表3のとおりとする。

ア とう汰互助金

この互助金は，（5）のアにおいてと殺及びとう汰された繁殖用種豚又は肥育豚に対して交付される互助金（以下「とう汰互助金」という。）とし，その交付限度頭数は，次の（ア）又は（イ）のいずれか小さい頭数とするものとする。

（ア）（5）のアの交付対象豚として家畜防疫員等が確認した頭数

（イ）各年度毎の生産者積立金を納付した頭数

イ 導入互助金

この互助金は，（5）のイにおいて導入された豚に対して交付される互助金（以下「導入互助金」という。）とし，その交付限度頭数は，次の（ア）から（ウ）のいずれか最も小さい頭数とするものとする。

（ア）（5）のイにおいてと殺，殺処分及びとう汰された繁殖用種豚及び肥育豚の頭数

（イ）（5）のイにおいて導入された豚の頭数

(ウ) 各年度毎の生産者積立金を納付した頭数

#### ウ 焼却・埋却等互助金

この互助金は、第3の2の殺処分等及び豚のとう汰等に伴い、当該豚等の焼却、埋却等を行った場合に交付される互助金（以下「焼却・埋却等互助金」という。）とする。その交付限度頭数は、豚のとう汰等にあつては、アのとう汰互助金の交付対象となった頭数とし、殺処分等にあつては、次の（ア）又は（イ）のいずれか小さい頭数とするものとする。

（ア）化製場において化製された繁殖用種豚及び肥育豚の死体の頭数

（イ）各年度毎の生産者積立金を納付した頭数

#### 4 事業の実績報告

県衛指協等は、毎年度、遅滞なく都道府県知事及び全国衛指協に対し当該年度に実施した事業の実績を報告するものとする。

全国衛指協は、提出された事業の実績を取りまとめの上、自らの事業の実績とともに、遅滞なく畜産局長及び理事長に報告するものとする。

#### 5 事業の実施期間

この事業の実施期間は、平成10年度から平成14年度までとする。

### 第6 事業の推進指導等

- 1 全国衛指協は、農林水産省及び事業団の指導の下、都道府県、関係団体等との連携に努め、この事業の円滑な推進を図るものとする。
- 2 都道府県知事は、この事業の適正かつ円滑な実施を図るため、この事業の趣旨、内容等の周知徹底並びに県衛指協等に対する指導及び監督を行うとともに、都道府県内の豚を飼養するすべての生産者がこの事業に参加するよう、必要な指導及び支援に努めるものとする。
- 3 県衛指協等は、この事業の趣旨、内容等の周知徹底に努めるとともに、都道府県及び全国衛指協の指導の下、関係団体等との連携に努めることにより、都道府県内の豚を飼養するすべての生産者がこの事業に参加するように指導を行うものとする。
- 4 都道府県知事、全国衛指協及び県衛指協等は、対策要領との整合性を保ちながら、この事業を実施するものとする。

### 第7 事業団の助成

- 1 事業団は、予算の範囲内において、別表1に定める補助対象経費及び補助率により、全国衛指協が第4の規定に基づき互助基金の造成を行うのに要する経費につき助成するものとする。

- 2 全国衛指協は、別表2に定める補助対象経費及び補助率により、第3に規定する事業を実施するのに要する経費につき互助基金より支出するものとする。

## 第8 その他

この要領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事業の実施につき必要な事項については、畜産局長又は理事長が別に定めるものとする。

## 附則

この通達による改正前の要領第3の3の規定に基づき県衛指協等の基本財産の造成のために助成した額は、この通達による改正後の要領第3の3の規定に基づき実施したものとみなすものとし、改正後の要領第3の3の県基金に繰り入れるものとする。

別表 1

補助対象経費	補助率
全国衛指協が第4の規定に基づき互助基金の造成を行うのに要する経費	定額

別表 2

事業の種類	補助対象経費	補助率
1 家畜防疫互助推進事業	1 全国衛指協が中央推進会議の開催、事業推進のためのパンフレットの作成、県衛指協等に対する普及、指導、連絡調整等を実施するのに要する経費	定額
	2 県衛指協等が推進会議の開催、生産者等に対する普及、指導、連絡調整等を実施するのに要する経費	定額
2 家畜防疫互助事業	県衛指協等が豚コレラの発生時における互助事業に基づく互助金を交付するのに要する経費	定額 ただし、1交付対象豚当たりの交付単価は別表3のとおりとする。
3 県衛指協等運営基盤強化事業	県衛指協等の家畜防疫対策に係る管理運営等を行うのに必要とする資金に充てるための県基金を造成するのに要する経費	定額 ただし、県衛指協等の基本財産（団体の再編により業務を移管する場合にあっては、再編する前の県衛指協等の基本財産をいう。）のうち事業団からの出資額の総額以内

別表 3

互助金の種類	交付単価
1 とう汰互助金 (1) 繁殖用種豚 (雌) (2) 繁殖用種豚 (雄) (3) 肥育豚 (概ね3か月齢以上のもの) (4) 肥育豚 (概ね3か月齢未満のもの)	1頭当たり 81,000円 1頭当たり 140,000円 1頭当たり 22,000円 1頭当たり 11,000円
2 導入互助金 (1) 繁殖用種豚 (2) 肥育豚	1頭当たり 28,000円 1頭当たり 4,000円
3 焼却・埋却等互助金	1頭当たり 4,000円

家畜伝染病予防法第50条の規定に基づく動物用生物学的製剤の指定に係る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ことについての意見・情報の募集結果について

平成12年10月11日  
畜産局衛生課

この度、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昭和26年農林省令第35号）の一部を改正することについて、平成12年8月28日から9月11日までの期間、農林水産省ホームページ等において公表し、広くご意見・情報を募集したところです。

その結果、当該案に対するご意見・情報が176件寄せられました。

これを受け、当該意見について検討したところ、別紙のとおりとなったので、公表した改正案に従い、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の一部改正を行うこととし、9月28日、「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平成12年農林水産省令第87号）」が公布されました。

問い合わせ先  
畜産局衛生課国内防疫班  
担当者：小倉、石川  
内線：4617  
直通：03-3502-8388

(別紙)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の一部改正案に対して提出された意見に関する考え方

法的拘束力をもってワクチン接種の中止をすることには反対。

今回の省令改正は、全国的なワクチン接種中止の取組を進める中、ワクチン接種豚とワクチン未接種豚の混在による防疫上の混乱を回避するため、豚コレラワクチンを接種する場合には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要するとするものであり、ワクチン接種の中止を法的に強制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許可による接種を認めれば防疫上の混乱が生じ、既に接種を中止している生産者がリスクを負うこととなる。

今後、都道府県知事が行うワクチン接種の許可要件として、防疫上の混乱を回避するために必要な、①接種状況の報告、②接種豚の標識、③立入検査の実施、④許可情報の開示に関する具体的な手続きのガイドラインを畜産局長が定め、全国統一的な運用を行うこととしています。また、これと併行して、輸入検査の強化によって豚コレラの侵入防止を一層強化することとしており、既に接種を中止している生産者がリスクを負うことのないよう措置することとしています。

ワクチンの使用を許可制ではなく、届出制とすること。

全国的なワクチン接種中止の取組を進める中、ワクチンの使用に当たっては、接種豚の標識等防疫上の混乱を招かないような措置を講ずる必要があり、届出制ではこのような措置を条件付け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から、許可制の下で使用することが必要と考えています。なお、豚コレラワクチンの使用許可は、定められた条件を確実に守って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が、手続そのものは極力簡便なものとしします。



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をわかりやすく示して欲しい。

今後、都道府県知事が行うワクチン接種の許可要件として、防疫上の混乱を回避するために必要な、①接種状況の報告、②接種豚の標識、③立入検査の実施、④許可情報の開示に関する具体的な手続きのガイドラインを畜産局長が定め、全国統一的な運用を行うこととしています。

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行う期限を限定して欲しい。

都道府県知事の許可を一方向的に打ち切らないで欲しい。

国及び都道府県は、生産者、関係機関・団体の協力の下、引き続き防疫体制の一層の整備に努め、生産者の理解の下、早期に全面的なワクチン接種の中止がなされ、国内からの豚コレラの撲滅が確認されるよう努めることとしています。

ワクチン接種豚の標識はしないこと。

ワクチン接種豚と未接種豚が識別できなかった場合、清浄性監視のために行う抗体検査で抗体陽性の原因がワクチン接種によるものなのか感染によるものなのか区別できず、当該農場のみならず周辺農場にも隔離指示、立入検査の実施を行う等防疫上の混乱を引き起こすことからワクチン接種豚の標識は必要と考えています。

ワクチン接種豚と未接種豚の区別により販売価格に影響が生じないようにして欲しい。

ワクチン接種豚と未接種豚の識別は、豚コレラの清浄性監視に支障が生ずることがないように行うものであり、また、ワクチンそのものは無害であることからそのことによって販売価格に影響が生じるとは考えておらず、特別の対策を講ずる必要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

ワクチン接種の中止に伴い豚丹毒の発生が危惧される。

現在豚コレラワクチンの約8割は豚丹毒ワクチンとの混合ワクチンとして接種されていることから、豚コレラワクチン接種の中止によって豚丹毒ワクチンの接種率が低下しないように、都道府県家畜畜産物衛生指導協会を通じて接種する場合には接種に係る費用の一部を助成することとしています。

発生時の経営再建対策に万全を期してい欲しい。

万一の発生時の損害を補償する仕組みとして平成10年度に家畜防疫互助基金を創設しており、平均的飼養規模（繁殖豚80頭、肥育豚700頭）の農家で試算してみると、積立金は年間20万円、一方、万一の場合に支払われる互助金は、とう汰互助金190万円、焼埋却頭互助金300万円、導入互助金500万円の計2.7億円となり、1年程度で発生前の生産体制となれば資金面で問題はないものと考えています。

また、発生時の防疫対策についても、生産者の意見を踏まえ、①防疫上可能な場合の農場の区分とう汰、②移動制限期間中の積極的な検査による防疫上支障のない豚のと畜場出荷の許可、③まん延防止上必要と判断された場合の緊急ワクチン接種の実施等により経済的損失が最小限となるよう措置することとしています。

なお、万一の発生で以上の対策をもってなお経営の継続に支障を来すと判断される場合には、口蹄疫発生時にとった関連対策も参考に適切に対処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豚コレラを撲滅しても輸入豚肉には対抗できない。国産豚肉の安全性の主張、生産者の顔が見える養豚、HACCP対応等の独自性があっていいのでは。

豚コレラの撲滅のみで輸入豚肉に対抗できるとは考えられませんが、技術的に撲滅可能な疾病を衛生管理の向上を図りつつ一つ一つ撲滅していくことは生産コストの削減ばかりでなく国内豚肉への消費者の信頼を維持していく上でも重要と考えています。また、国産豚肉の安全性向上等については、次のような取組も行っています。

- ・ HACCP方式の考え方に基づいた衛生管理ガイドラインの生産段階への導入
- ・ 食肉等の安全性評価のための自主検査への支援

我が国への豚肉輸出国はほとんどが清浄国でワクチン接種中止のメリットとならない。

ワクチン接種の中止による検疫の強化の最大の目的は、海外からの豚コレラの侵入を防止することです。なお、現在口蹄疫の発生に伴って豚肉等の輸入が禁止されている台湾、韓国はもとより、その他の国でも日本市場を目指した口蹄疫の清浄化の取り組みを進めており、このままでは、近いうちにこれらの国からの輸入が避けられなくなることを考えれば、豚コレラの侵入防止という意味のみでなく、将来的に輸入豚肉による国内市場の競争激化を避ける意味でもメリット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ワクチン接種を止めることによるコストダウンはほとんどない。

単味ワクチン換算では年38億円程度であり、その8割が豚丹毒ワクチンとの混合ワクチンで接種されていたことを考えれば当面は21億円程度の経費が削減に止まることとなりますが、豚丹毒と豚萎縮性鼻炎の混合ワクチンの製造も開始されていることを考えれば、今後、豚丹毒ワクチンが他のワクチンとの混合化により豚コレラワクチン接種を止めることによるメリットは着実に、かつ、将来にわたって表れるものと考えています。

危機管理体制を整え、シミュレーションをして欲しい。

危機管理体制の整備については、

- (1) 地域の養豚場、養豚関連施設の場所等を把握するための防疫マップの整備
  - (2) 獣医師による定期的な農場の立入検査
  - (3) 万一の発生に備えた緊急接種用のワクチン備蓄
  - (4) 死亡豚処理体制を構築するための保冷車、保冷库等の整備
  - (5) 防疫体制を点検するための防疫演習の実施
- 等を鋭意進めていくこととしています。

抗体検査により感染豚を識別できるサブユニットワクチンの開発をして欲しい。

これほど清浄性の確認されている現在、時間を費やしてあえてサブユニットワクチンを開発して清浄性を確認する必要性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また、緊急ワクチンとして利用するとしても、免疫性、即効性の面から現在の生ワクチンが優れているものと考えています。

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の全部を改正することについての意見・情報の募集結果について

平成12年10月11日  
畜産局衛生課

この度、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の全部を改正することについて、平成12年8月28日から9月11日までの期間、農林水産省ホームページ等において公表し、広くご意見・情報を募集したところです。

その結果、当該案に対するご意見・情報が7件寄せられました。

これを受け、当該意見について検討したところ、別紙のとおりとなったので、公表した改正案に従い、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の全部を改正することとし、10月1日、「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12畜A第2762号畜産局長通知）」が通知されました。

問い合わせ先  
畜産局衛生課国内防疫班  
担当者：小倉、石川  
内線：4617  
直通：03-3502-8388

(別紙)

豚コレラ防疫対策要領に対して提出された意見に関する考え方

豚コレラが完全に撲滅したとは思えず、ワクチン接種を中止することに納得できない。もっと現実的で具体的な改正案が望まれる。

平成8年度以降全国で行ってきた32万頭の豚、いのししの検査を通じて我が国は極めて清浄性が高いことが判明しています。このことは、既にワクチン接種を中止した32道府県（飼養頭数、飼養戸数いずれも全国の半数に相当）でも何ら異常を認めないことでも裏付けられています。また、今回の要領案については、生産者、関係団体等の意見を踏まえ作成し、昨年10月末に事前に提示しているものであり、防疫上許容できる範囲で、かつ、現実的に対応可能な内容と考えています。

豚コレラの早期発見、早期届出はできるのか。

事業開始以降、豚コレラの早期発見を促すためのパンフレットの配布、雑誌等を通じた広報活動に努めてきましたが、豚コレラに限らず全ての伝染病対策の基本でもあることから、今後とも全ての生産者、養豚関係者に対し、何らかの異常があれば直ちに届出を行うよう呼びかけを行っていくこととしています。

豚コレラ発生時の緊急ワクチン接種の早期実施。

発生状況（周辺の豚の飼養状況、死亡豚処理の困難性等）から緊急ワクチン接種が必要と判断された場合には、発生農場を中心とした半径3kmの農場及び発生農場と疫学的に関連のある農場については直ちに備蓄ワクチン（全国8カ所に合計100万頭分を備蓄）を用いた緊急ワクチン接種を実施することとしています。

緊急ワクチン接種を行った豚が出荷できること。

患畜、疑似患畜以外の豚については、緊急ワクチン接種の実施の有無に係わらず、移動制限解除後はもちろんのこと移動制限期間中であっても、一定期間経過後に家畜防疫員が検査を行い、防疫上支障がないと判断された豚についてはと畜場直行に限り移動が許可されます。

緊急ワクチン接種を行った豚が市場で売れなかった場合は国で買い上げすること。

ワクチンそのものは無害であり、また、豚コレラに感染していないことを確認して出荷されるものであることから、風評により販売に支障を来さないよう正確な情報提供に努めることとします。

死体処理に関しては国が責任を持って処理に当たることを明記すべき。

死亡豚処理については、家畜伝染病予防法上、農家の責務となっていますが、従来から県、市町村、関係団体等が協力して処理に当たっており、家畜防疫互助基金の対象となる自主とう汰の場合も含め今後とも同様の対応がとられるよう働きかけ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多くの物を輸入している我が国では検疫を強化しても疾病侵入を阻止することは難しい。

国内の無発生が続く中、将来にわたって高率のワクチン接種率を維持していくことは困難であり、ワクチン接種中止の取組に伴い、ワクチン接種国、地域からの輸入を制限し、豚コレラの侵入の可能性を可能な限り低減させていくことが国全体での発生の可能性を低くするためにも得策と考えています。

## 種豚場等養豚施設における衛生対策指針

養豚経営の安定化を図るためには、近年の集約的な生産方式の普及等を背景として生じている健康阻害要因を取り除き、疾病の発生を予防して、生産性の低下を防止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特に、種豚場に疾病が発生又は潜在化している場合は、種豚の流通によりその疾病が一般養豚場の肥育豚群へ伝播する危険性が極めて高くなることから、種豚場を中心とした養豚施設では、以下により各種の効果的な衛生対策を講じるよう指導を徹底し、疾病の清浄化を図る必要がある。

### 1 施設の配置及び立入制限等

農場における疾病の清浄化に当たっては、農場への病原体の侵入を防止するとともに農場内における病原体の拡散防止のため、以下の点に留意して、施設の配置及び立ち入り制限の実施に努めるものとする。

- (1) 農場の周囲には囲障（ネット、フェンス等）を設け、外部との区分を明確にし、出入口を限定して農場への立入りを規制するとともに、犬や猫の侵入を防止する。
- (2) 豚舎は、できる限り発育・飼育段階で区分するとともに、導入豚を隔離する豚舎（以下「検疫豚舎」という。）及び病豚を隔離する豚舎（以下「隔離豚舎」という。）を設置する。その際、防疫、環境及び作業の観点から、管理作業を一方向（ワンウェイ）で行うこと等を考慮し、合理的な配置に努める。
- (3) 豚舎は原則として断熱構造とし、換気にも十分配慮する。更に、床、天井、壁は水洗・消毒が容易にでき、かつ耐水性に富む構造にする等の工夫をする。
- (4) 外来者の入場に際しては、衣服、履物及び手指の消毒を励行するとともに、帽子、上衣、ズボン、履物等はできる限り場内専用のものに取り替える。また、検疫豚舎及び病豚隔離豚舎への出入の際は、再度衣服及び手指の消毒を行うとともに、衣服、ゴム長靴等は専用のものに取り替える。
- (5) 一般車両の乗入れは、原則として禁止するが、入場させる場合は、出入口で消毒を行う。また、資材の搬入に際しては、必要に応じて噴霧消毒を行う。



## 2 施設内における衛生管理

疾病の防除に当たっては、外部との隔離、施設の適正配置等に留意するとともに施設内における病原体の飛散防止と良好な飼育環境の維持を図るための日常の衛生管理を徹底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したがって、農場関係者は、当該施設が外界と隔離状態におかれた場合にあっても施設内が完全に清浄化されたわけではないことを念頭において、日常から以下のような事項に留意の上、施設内における衛生管理に万全を期す必要がある。

### (1) 施設等の汚染防止対策の徹底

ア 各々の豚舎の入口には、手指の消毒施設、踏込消毒槽、器具の洗浄・消毒器具等を設置するとともに、管理棟、豚舎、飼料庫等構内に配置されている施設については定期的に清掃、消毒を行う。

イ 豚舎はできる限りオールイン・オールアウト方式で運営することとし、オールアウト後の豚舎は、ふん、飼料等を搬出した後、十分清掃、水洗及び消毒し、一定の間隔において、導入直前に再度消毒を実施した上で次の豚群を導入する。

なお、オールイン・オールアウト方式の採用が困難な豚舎については、一定期間使用後必ず空舎期間を設け、完全に清掃及び消毒を行う。

ウ 豚舎、管理舎、倉庫等については、定期的あるいは必要に応じてネズミ及び衛生害虫の駆除を実施する。

エ 作業用の衣服は清潔に保つほか、管理器材は豚舎の棟ごとに専用のものを備え、常に清潔に保ち、原則として使用後毎回水洗・消毒する。

### (2) 個体の衛生管理の徹底

ア 母豚を分娩豚舎へ移動する際には、豚体をよく洗浄消毒し、必要に応じて殺虫剤の散布を実施する。

イ 豚舎については、舎内温度を適正に維持する。特に、幼齢豚が飼養されている豚舎については、十分な保温設備を備える。また、暑熱時には、送風及びワンマンズプレー、シャワー等による水の噴霧を行う等防暑対策を実施することが望ましい。

ウ 農場外から種豚等を導入する場合は、必ず検疫豚舎に収容し、少なくとも2週間は隔離観察して、異常のないことを確認し、異常豚を確認した場合は、その病性の解明に努め、必要な処置を実施する。

エ 検疫豚舎又は病豚隔離豚舎から一般豚舎への豚の移動は、畜体が清浄であることを

確認するとともに、必ず畜体の洗浄・消毒を行う。

オ 伝染性疾病の疑われる死亡豚は、必ず家畜保健衛生所において病性鑑定を受ける。

### 3 予防及び治療等

疾病の予防に当たっては、日常の一般的な衛生管理のほか、計画的な予防接種の実施  
疾病の清浄地域からの種豚の導入等所要の措置を講ずる必要がある。また、ひとたび疾  
病が侵入した場合、疾病の種類によっては、外見上症状が消失した後も、一部の豚が保  
菌豚として残り、感染源となることがあるので、特に種豚場においては、保菌豚の防疫  
措置の徹底に努めるべきである。

なお、既に予防液が開発されている疾病については、健康管理の一方法として予防接  
種の効果的な活用を図る必要がある。

### 4 衛生管理体制

種豚場の衛生状況を把握するためには、以下の点に留意しつつ、計画的に抗体検査等  
を実施することによって種豚集団における各種疾病の浸潤状況を明らかにしておく必要  
がある。このため、種豚候補以外の子豚をモニター豚として肥育出荷し、と畜検査にお  
ける剖検所見の成績から衛生上の問題点を解明する等により、子豚の健康度及び種豚場  
の衛生状態の把握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 (1) 慢性伝染病等の中には診断方法が開発されていない疾病もあり、生前においては被  
害状況との因果関係が明確にできない場合も多いことから、年間の分娩回数、受胎率  
死流産回数やその状況、一腹当たりの子豚の離乳頭数、へい死・とう汰頭数及び育成  
状況等の繁殖育成に関する記録をとり、技術指標として役立てるのみならず、疾病の  
発見、疾病の浸潤状況の指標として活用する。
- (2) 日常の飼養管理においては、異常豚の早期発見に努めるとともに、自らの衛生管理  
についてあらかじめ点検項目を定めておき、定期的なチェックを行いその改善を図る。

### 5 その他

種豚場以外の養豚場に対しても、本対策指針に準じた衛生管理に努めるよう指導すべ  
きである。